

본 자료집은 '91.12.13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이후 '97. 4. 30 까지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문제와 관련하여 남북 쌍방간에 제의·발표된 각종 자료들을 종합·정리한 것으로서 회담대책개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문제 관련 자료집

1997. 5

전소현



통 일 원
(남북회담사무국)

목 차

| | |
|-----------------------------------------------------|----|
| I. 남북기본합의서 의의 및 성격 | 3 |
| 1.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 의의 | 3 |
| 2.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 | 7 |
| II.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채택과정 | 10 |
| 1.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과정 | 10 |
| 2. 분야별 부속합의서 채택 과정 | 15 |
| 3. 남북 핵회담 | 22 |
| 4. 이후 경과 | 24 |
| III. 남북기본합의서 주요 내용 | 27 |
| IV.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북한측 태도와 우리 측의 이행노력 | 29 |
| 1. 북한측 태도 | 29 |
| 2. 우리측의 이행노력 | 31 |
| V. 향후 이행 전망 및 실천 방향 | 33 |
| 1. 향후 이행 전망 | 33 |
| 2. 4자회담과의 관계 | 34 |
| 3. 향후 실천 방향 | 35 |
| 【부록 I】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문제 관련 쌍방 주요 제의·주장 일지(요약) | 37 |
| 【부록 II】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문제 관련 주요 합의·주장 전문 | 93 |

I. 남북기본합의서 의의 및 성격

1.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 의의

가. 통일추진의 「기본틀」 마련

- 남북기본합의서는 통일을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과정으로 전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틀」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무엇보다 큰 의의가 있음.
 - 그동안 북한이 결과로서의 통일을 명분으로하여 공세를 취한 반면, 우리는 통일정책의 일차적 목표를 남북화해·협력과 평화체제 구축에 두고 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옴.
- 쌍방은 이 합의서에서 상대방 체제의 인정·존중, 비방·중상의 중지, 현 정전상태의 남북간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정전협정의 성실한 준수를 통해 남북간 화해를 실현하고
 -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의 설정, 무력충돌 방지조치 마련, 상호 군비감축의 추진 등을 통해 긴장완화와 상호 불가침 및 평화를 보장키로 하였으며,
 -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통한 민족공동 이익과 번영의 도모는 물론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성의를 다하기로 합의하였음.
-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된다면 남북한은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밝히고 있는 「남북연합」을 이룩하기 위한 준비단계인 「화해·협력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임.

나. 남북간의 자주적 합의

- 남북기본합의서는 온 겨레가 지켜보는 가운데 제3자의 개입 없이 남북간의 공개적 협의를 거쳐 채택·발효된 최초의 공식 합의라는 점에 그 의의가 큼.
 - 남북 쌍방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책임있는 당국간의 회담을 통해 현분단상황을 우리민족 스스로 해결해 나아간다는 의지와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 아울러 그 형식과 절차, 내용면에서 「7.4 남북공동성명」과는 달리 공개적인 협의를 거쳤고, 남북한의 정식 국호와 서명자의 직책을 명시하였으며, 실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담고 있음.
- 특히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규정(제10조)하고 있는 바,
 - 이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을 천명한 것으로서 이제 남북한이 주변환경 변화를 보다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한반도 통일에 장애가 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음.

다. 북한의 혁명전략 수정 및 개방 촉진

- 남북기본합의서는 서문에서 남북관계를 민족내부 특수관계라고 인정하고 제1조에서 상호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명란에서는 남북한의 정식 국호를 사용하고 있음.
 - 이와같이 남북한이 상호 체제인정·존중을 약속했다는 사실은 상대방을 국제법상 완전한 「국가」로 인정함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남북한이 각기 상대방의 「실체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남북기본합의서가 성실하게 이행·실천될 경우 북한의 기존 대남적화전전략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고, 우리의 평화통일 정책기조에 입각한 통일과정이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음.
 - 북한이 직면한 대내외 정책상의 전술적 변화필요성에 따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호 체제의 인정·존중, 내부문제 불간섭, 비방·중상 중지 및 파괴·전복 행위 금지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기존의 대남혁명노선을 부분적으로나마 수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 이와 함께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이 강조됨으로써 정치·군사문제 해결 우선론을 고집하여 온 북한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민족내부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북한사회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되었음.

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의지 구체화

-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협의·추진토록 규정(제12조)하고 있는 바,
 - 「대량살상무기」에는 핵무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는 남북간의 합의에 따라 최근 세계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 또한 「비핵화공동선언」은 남북한이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금지하고,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며,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내외에 천명함으로써 한반도를 핵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음.
 - 나아가 이를 확인하기 위한 남북 상호사찰을 실시하며 동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함.
-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의 이와같은 합의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무력침략 반대」(제9조)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제10조)의 규정과 함께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2.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

가. 남북간의 특수한 합의

- 남북기본합의서는 서문에서 남북관계를 「국가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함으로써 합의서의 성격이 일반 국가간의 「조약」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문, 조문배열, 정부대표의 서명, 발효 절차 등 국제법상 조약에 준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음.
 - 결국 남북기본합의서는 국제법상 상호 승인한 국가간의 조약은 아니나, 분단국을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정치실체 즉, 국제법 주체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당국간 합의임.
-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가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한 서문의 규정과 그 성질상 「국가간」 조약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국가간 조약 체결절차인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았음.
 - 이것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일반적인 「국제조약」으로 취급할 경우, 쌍방이 잠정적인 「특수관계」를 두개 국가간의 「일반관계」로 기정사실화 함으로써 남북관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임.
-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되었다고 해서 남북한이 상호 묵시적인 「국가승인」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특수관계 규정은 분단의 고착화, 영구화를 피하고 민족의 재통일을 추구하는 강력한 통일 의지와 열망을 반영한 것임.

나. 「화해·협력단계」의 기본규범

-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이 통일의 개념을 하나의 실천과정으로 파악, 통일의 방법은 단계적 접근방법이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인식하고 통일방법의 틀을 설정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음.
- 「화해·협력단계」는 남북한이 정치적·군사적 대결상태에서의 상호 불신과 반목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며, 다각적인 제분야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쌍방의 체제와 이념의 격차를 줄여나가면서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해 나가는 과정임.
 - 이런 점에서 남북기본합의서는 장차 「민족공동체헌장」이 마련될 때까지 남북간의 화해·군축·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기본규범이라 할 수 있음.

다. 한시적 잠정성

- 남북기본합의서는 서문에서 현 남북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어 분단실체로서의 남북간에 적용되는 특수한 합의문서임을 밝히고 있

음.

-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는 내용상 효력기간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일종의 「잠정협정」(modus vivendi)의 성격을 갖고 있음.
- 「화해·협력단계」를 거쳐 「남북연합」이 형성되게 되면 남북기본합의서는 효력을 상실하고 「남북연합」의 기본규범인 「민족공동체헌장」에 의해 대체될 것임.

II.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채택 과정

1.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과정

가.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 '88.12.28 강영훈 국무총리는 연형묵 북한 정무원 총리에게 보내는 대북서한을 통해 남북한간 제분야에서의 상호 신뢰 구축과 긴장완화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해결하기 위한 「남북총리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음.
- 이에 대해 '89.1.16 연형묵 북한 정무원 총리는 대남서한을 통해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 개최에 동의하면서 이를 위한 예비회담을 2.8에 갖자고 제의함.
- 남북한 쌍방은 '89.2.8부터 '90.7.26까지 8차례의 예비회담과 2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을 가졌음.
- 제1차~제4차 예비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측이 팀스피리트훈련 중지와 문익환, 임수경 석방문제, 민족통일협상 회의 소집 등 회담 외적인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본회담의 절차문제와 의제에 있어서는 성과가 없었음.
- 제5차 예비회담에서 비로소 본회담 명칭문제에 있어서 우리측의 「남북고위급정치군사회담」 또는 「남북총리회담」 주장과 북한측의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 주장이 「남북고위급회담」으로 절충·합의가 이루어졌음.

- 제7차 예비회담에서는 그동안 이견을 보여왔던 본회담 의 제문제에 있어서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문제」로 합의함으로써 고위급회담 절차문제 전반에 타결을 보게 되었음.

나.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90.9.4~9.7)

- 우리측은 상호 체제인정 및 존중을 포함한 8개항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안)」을 제시하는 한편,
 -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교류·협력 실시문제를 병행 토의하자는 입장에서 실천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 구성된 「다각적인 교류·협력실시방안」 10개항과 「정치·군사적 신뢰구축방안」 8개항을 제안함.
 - 또한 「남북간의 군비감축 추진방향」 5개항도 함께 제시함.
- 북한측은 회담의 전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3개원칙」과 유엔 가입문제, 팀스피리트훈련문제, 방북구속자 석방문제 등 「3개 긴급문제」를 제1차회담에서 협의·해결하자고 주장하면서
 - 미군철수, 핵무기철폐, 군축 등 정치·군사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면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다. 제2차('90.10.16~10.19)~제3차(12.11~12.14) 남북고위급 회담

- 우리측은 북한측 주장들을 포괄한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수정안과 통행, 통신, 통상 등 3통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선 기본합의서 채택을 강조함.
- 북한측은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조·미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남조선에서 핵무기와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 10개항으로 된 「북남불가침과 화해협력에 관한 선언(초안)」을 제시하고 우선적으로 합의·서명할 것을 요구하여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함.

라. 제4차 남북고위급 회담('91.10.22~10.25)

- 제4차 회담에서 비로소 쌍방은 합의서를 단일문건으로 채택할 것과 합의서의 명칭과 내용, 체계 등에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공동발표문을 채택함.
 - ① 남과 북은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교류협력 실현을 위해 단일문건으로 된 합의서를 채택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합의서의 명칭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로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합의서의 내용구성을 서문,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수정 및 발효조항 순으로 중간 제목을 설정하여 해당 내용을 정리 구성하기로 하였다.

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91.12.10~12.13)

- 남북 양측은 합의서 내용에 대한 이견을 해결하고 문안정리까지 완료하여, 쌍방 총리간에 전문과 25개 조항으로 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서명함.
- 아울러 현안으로 떠오른 한반도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대표접촉을 12월 안에 개최기로 하는 등 3개항의 「공동발표문」을 채택함.

마. 발효절차

- 우리정부는 헌법 제88조 1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92.2.17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 최종 재가를 마쳤고, 동 재가문서에는 국무총리와 전 국무위원이 부서함.
- 이에 앞서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가 국가와 국가간에 체결된 일반적인 「국제조약」은 아니지만, 향후 남북관계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특

별보고하는 등 제반 절차를 거쳤음.

- 북한은 '91.12.24 당중앙위원회 제6기 19차 전원회의에서 연형묵 정무원 총리가 보고를 하였고,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는 대신에 12.27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약식 승인하였으며, 발효직전에 김일성(주석)이 이를 최종적으로 비준한 것으로 발표함.
- 남북기본합의서는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92.2.18~2.21)에서 각기 필요한 절차를 거친 문본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정식 발효됨.

2. 분야별 부속합의서 채택 과정

가. 화해분야 부속합의서

- 남북 쌍방은 남북기본합의서 협상과정에서 동합의서의 구체적 이행대책을 협의·마련하기 위한 도구로 남북고위급회담 테두리내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합의하고,
 - 3차례의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을 통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마련,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채택·발효시켰음.
- 남북기본합의서 남북화해 분야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게 될 남북정치분과위원회의 위원명단은 '92.3.6 서로 통보되었으며,
 - 3.9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1차회의를 개최한 후 본회의 7회, 위원장접촉 3회, 위원접촉 5회 등 총 15차례 회의 및 접촉을 진행하였음.
- 「화해분야 부속합의서」 타결과정에서의 쟁점은
 - ① 합의서 형식(수)에 있어서 우리측은 비방·중상 중지에 관한 합의서 등 5건의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자고 하였으나, 북측은 단일 부속합의서의 채택을 고집하였으며,
 - ② 총칙문제에 있어 우리측은 기본합의서 전문의 '특수관계'를 '내부적으로 상호 실체를 인정·존중하고 대외적으로 국

제연합회원국간에 형성되는 2중의 관계'로 총칙에 규정할 것을 제시하였으나, 북측이 반통일적이라고 철회를 요구하였고,

- ③ 체제인정·존중, 내부분제 불간섭, 비방·중상 중지, 파괴전복행위 금지,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서 많은 견해차를 보였음.

○ 결국 제8차 고위급회담 기간중 열린 위원장접촉('92.9.15-16)에서 쌍방은 그동안의 쟁점조항들을

- 상대방 당국의 권한과 권능 존중, 법률적·제도적 장치의 개정 또는 폐기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해결, 언론·뼈라 및 그 밖의 수단·방법을 통한 상대방 비방·중상 중지,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 등으로 절충·타결하는 한편,

- 북한이 제기하는 국제기구에 단일의식 가입 문제, 상대방 이익을 침해하는 제3국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는 문제, 다른 국가와 맺은 조약과 협정의 개정·폐기 문제 등에 대해서는 추후 분과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해결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미합의 사항으로 부속합의서에 부기하여 「화해분야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였음.

○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관련하여

- 우리측에서는 시한('92.5.19)이 정해져 있는 문제이므로 우선 토의 타결을 요구하였으나,

- 북측은 기존 적십자 연락사무소를 대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 토의를 미루려 했음.
- 결국 제7차 고위급회담 기간중 열린 위원장접촉(5.6-5.7)에서 합의서를 타결함.
-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관련하여
 - 우리측은 법률공동위, 비방중상공동위 구성을, 북측은 정치공동위 구성을 주장하였으며,
 - 제8차 고위급회담 기간중 열린 위원장접촉에서 「법률실무협의회」와 「비방중상 중지 실무협의회」를 「공동위」내에 두기로 하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로 절충됨.

나.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

- 남북기본합의서의 남북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게 될 남북군사위원회는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의 합의·발표에 따라 '92.3.6 위원명단을 서로 통보하였으며,
- 3.13 판문점 '통일각'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후 본회의 8회, 위원장접촉 3회, 위원접촉 3회 등 총 14차례의 회의 및 접촉을 진행하였음.

- 제1차 회의에서 우리측은 남북불가침 분야의 구체적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과 우발적 무력충돌을 막기 위한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우선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음.
 - 이에 대한 북한측은 「북남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안)」과 「북남군사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하였음.
- 제3차 회의(4.30)에서 우리측은 부속합의서(안)인 「남북사이의 불가침 이행과 준수를 위한 무력불사용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했음.
 - 그리고 이 회의에서 남북한 쌍방은 공동위원회 문제와 부속합의서 문제를 함께 토의하는데 합의하였으나
 - 군사공동위원회의 기능을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의 협의·실천’으로 하자는 우리측 입장과 ‘불가침분야의 전반적 이행’으로 하자는 북측 입장이 대립되기도 하였음.
 - 쌍방은 수차례의 회의와 접촉을 통해 절충을 계속한 결과 군사직통전화 문제를 부속합의서 조항으로 흡수하기로 합의하는 등 명칭, 장제목 및 대부분의 조항에 의견접근을 이루었음.
 - 다만 제8차 회의(9.5)까지도 쌍방은 군사분야의 분쟁문제 해결창구 문제, 경찰활동 문제, 영해·영공 봉쇄 문제, 불가

침경계선 대책마련 창구문제 등에 대해서는 입장이 맞서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 절충기로 했음.

○ 제8차 고위급회담 기간중 열린 위원장접촉(9.15-9.16)에서 남북 쌍방은

-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 행위 금지 및 일체 무력도발 행위 금지, 상대방 관할구역을 침입·공격·점령하는 행위 금지, 분쟁문제는 쌍방 군사당국자가 합의하는 기구를 통해 해결, 합의서 위반시 공동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등에 추가적으로 합의하고,
- 군사분계선 일대 무력증강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 문제, 상대방의 영해·영공 봉쇄문제, 서울과 평양지역의 안전보장 문제 등은 기본합의서에 나와 있는 신뢰구축 및 군축관련 사항이므로 “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여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를 타결지었음.

다. 교류·협력분야 부속합의서

○ 남북간에는 상호 교류·협력과 관련한 구체적 실천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92.3.18)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본회의 7회, 위원장 접촉 3회, 위원 접촉 6회 등 총16차례의 회의 및 접촉을 진행하였음.

- 제1차 회의(3.18)에서 우리측은 남북기본합의서의 교류·협력 분야의 이행과 준수를 위해 「이산가족」, 「통행·통신」, 「경제」, 「사회문화」 분야의 4개 「부속합의서(안)」과 「부문별 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안)」을 제시하고,
 - 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에 맞게 「인도」, 「통행·통신」, 「경제」, 「사회문화 교류·협력」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설치·운영할 것을 제의하였음.
 - 아울러 우리측은 시범사업으로 「남북 고령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을 교환하자고 제시했음.
- 이에 대해 북한측은 「북남 협력, 교류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초안)」라는 포괄적인 단일부속합의서를 제시하고,
 - 부속합의서를 우선 협의·해결한 후 공동위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함.
 - 이산가족 문제는 적십자 소관사항이라고 주장함.
- 제7차 회의(9.3)에서 쌍방은 교류협력분야 부속합의서의 미합의 조항에 대해 집중 토의하여 5개조 30개항에 추가로 합의, 문안정리를 하였음.
 - 그러나 교류·협력 당사자의 당국 승인문제,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문제, 이산가족들의 우편·전기통신 우선 보장문제,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문제, 적십자 본회담 재개문제 등에

서는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음.

- 위원장접촉(9.7)에서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조항들은 우편·전기통신 교류에서 공적사업과 인도적 사업의 우선 보장, 이산가족의 범위 규정 및 상봉 면회소 설치문제의 적십자간 협의·해결, 적십자회담의 빠른 시일내 재개,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할 데 대해 자기측의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물자 교류와 경제·협력 실시 등으로 절충하였음.
- 제8차 고위급회담 기간중 열린 위원장접촉(9.16)에서 남북 쌍방은 교류·협력분야 부속합의서내에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문제를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토의·해결”한다는 부기조항을 두기로 하고 부속합의서 타결을 완전 마무리함.

3. 남북 핵회담

-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 합의에 따라 한반도의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대표접촉이 '91.12.26-12.31까지 3차례에 걸쳐 판문점에서 진행되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가서명하였음.
- 「비핵화공동선언」에 따라 그 이행기구인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제1차 대표접촉이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기간중인 1992.2.19에 진행되었고,
 - 이후 남북 쌍방은 3.14까지 판문점에서 7차례의 대표 접촉을 갖고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사찰규정과 채택시한 등을 공동발표문에 담아 발표하였음.
- 이후 3.18 남북 쌍방은 핵통제공동위원회 위원명단을 서로 통보하였고,
 - 3.19 제1차 핵통제공동위원회가 판문점에서 개최된 이후 12.17까지 제13차 회의를 갖고(별도 위원장접촉 2회, 위원접촉 8회) 남북상호핵사찰 규정마련과 상호사찰문제를 논의하였으나,
 - 쌍방이 합의한 사찰규정 채택시한을 넘긴채 뚜렷한 성과없이 중단됨.
- 남북 쌍방은 1992.12.19부터 1993.1.21까지 총 15차례의 전화

통지문을 교환한 끝에 제1차 위원장접촉(1993.1.25)을 개최 하였으나,

우리측은 남북상호 핵사찰을 실현하기 위해서 위원접촉을 조속히 진행하여 사찰규정에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북한측은 T/S 훈련실시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 한 사찰규정 토의는 물론 핵통제공동위원회 자체도 무의미하다고 주장함으로써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의 협상은 중단 되었음.

4. 이후 경과

-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92.9.15) 이후 「이인모 문제」,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북한 핵문제」 등이 남북간 주요현안으로 부각되면서 「이산가족 문제」, 「남북경제협력」,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진행되어 오던 쌍방 접촉이 모두 중단되었음.
- 북한측은 우리측의 군사훈련의 중지를 요구하는 등의 조건을 내세워 노부모방문단 교환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 「남북교류·협력분야 부속합의서」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자는 우리측의 제의를 거부하였으며,
- '92.11.6까지 군사직통전화를 개통하기로 한 합의사항도 이행하지 않았음.
- 한편 북한측은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준수를 위하여 남북사이에 상호사찰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진행과정에서 상호 사찰규정 마련에 장애를 조성함으로써 「비핵화공동선언」의 합의정신을 외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개발 의혹을 증폭시켰음.
- '92.10.8 한·미 양국이 제24차 연례 안보협의회에서 남북관계

특히 상호핵사찰 등에 있어 의미있는 진전이 없을 경우 '93 팀스피리트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자,

- 북한측은 10.27 정부·정당·사회단체 연합회의 결정서를 통해 팀스피리트 군사연습을 강행하는 조건에서는 앞으로 남북고위급회담은 물론 각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비롯하여 남한 당국과의 모든 대화와 접촉을 동결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이어 11.13 화해·군사·경제·사회문화공동위원회 북측위원장 명의의 연합성명을 발표하여, '93 팀스피리트훈련 재개 결정 등을 구실로 11.5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개최기로 한 분야별 공동위원회 제1차회의에 불참한다고 선언하였으며,
- 12.21 서울에서 개최기로 합의한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마저 무산시켰음.
- 북한측은 '93.1.29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 명의의 성명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당국사이의 대화를 굳이 재개할 의사가 없다고 선언하면서, '93.1.25까지 진행되어 오던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마저 거부함으로써 모든 남북대화를 중단시켰음.
- 우리측은 남북 합의사항은 언제 어떠한 경우라도 지켜져야 하며, 팀스피리트훈련 재개가 결코 남북대화의 장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북한측에게 남북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 북한측이 남북 상호사찰을 수용하여 핵무기개발 의혹을 해소한다면 '93 팀스피리트훈련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다시 제시하였으나, 북한측은 이를 거부하였음.
- 따라서 남북관계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본격적 실천단계로 들어가지 못한 채 상당기간 대화마저 열리지 못하는 경색 국면을 맞게 되었음.

Ⅲ. 남북기본합의서 주요내용

- 남북기본합의서는 서문과 함께 제1장 남북화해, 제2장 남북 불가침,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4장 수정 및 발효 등 4장 25개조로 구성되어 있음.
- 서문에서는 남북한이 서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함으로써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 제1장에서는 ① 상대방 체제의 인정·존중(1조), ② 내부분쟁 불간섭(2조), ③ 비방·중상 중지(3조), ④ 파괴·전복행위 금지(4조), ⑤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5조), ⑥ 국제무대에서의 대결과 경쟁 중지(6조) 등 분단 47년 동안 남북사이에 쌓여진 불신과 대결의 장벽을 헐고 민족성원 상호간에 화해와 신뢰를 쌓아 나아가기 위한 실천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음.
- 제2장에서는 불가침에 대한 쌍방의 확고한 약속을 내외에 선언하면서 그 이행을 보장해 나갈 구체적인 실천조치로서 ① 무력불사용과 무력침략 포기(9조), ② 의견대립과 분쟁문제의 평화적 해결(10조), ③ 불가침의 경계선과 구역의 명시

(11조), ④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동 위원회에서 협의·추진할 사항의 명시(12조), ⑤ 쌍방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의 설치(13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3장에서는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전체의 복리향상과 민족공동체의 회복·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로서 ① 경제교류·협력, 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등 여러분야에서의 교류·협력(16조), ③ 자유로운 인적왕래 및 접촉(17조), ④ 서신거래,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대책 강구(18조), ⑤ 철도·도로 연결 및 해로·항로 개설(19조), ⑥ 우편·전기통신 교류(20조), ⑦ 국제무대에서의 다각적인 협력과 대외 공동진출(21조)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이밖에도 남북기본합의서는 합의내용의 이행을 보장하고 실행해 나갈 협의·실천기구인 분과위원회, 공동위원회 및 남북연락사무소에 관한 조항들을 각 장마다 설정하고 있음.

IV.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북한측 태도와 우리측의 이행노력

1. 북한측 태도

-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북한은 대외 명분상으로는 이를 「획기적 사변」, 「역사적 문건」이라고 선전하면서도
 - 실천상에 있어서는 갖가지 구실과 전제조건을 내세워 그 이행을 지연·거부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지속하고 있음.
- 북한측은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우리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 당국간의 공식적인 대화를 거부하면서,
 - 각종 선전매체를 총동원하여 우리 국가원수와 정부 당국에 대한 비방·중상을 거듭하고 있음.
- 또한 그들은 군사정전위원회 북한측 대표단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고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94.4.28)하는 등 정전체제를 일방적으로 무실화시키면서
 - 「평화문제의 남북당사자간 해결」(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 정면 배치되는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고집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몰두하는 한편,
 - 잠수함을 이용한 무장공비를 남파('96.9.18)하는 등 공공연

한 무력도발을 자행함으로써 남북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기도 하였음.

-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남북기본합의서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남북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조치('96.11.19)를 취함으로써 남북 당국이 함께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정면으로 유린하는 행위까지 감행하였음.

2. 우리측의 이행노력

- 우리측은 북한측이 각 공동위원회 제1차회의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이후 통일부총리 성명 등을 통해 여러차례 북한측의 태도변화를 촉구하였으며,
 - 특히 문민정부 출범 후 「이인모 방북 허용」 등 일방적 대북 유화조치와 함께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 재개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고위급 대표접촉을 제의하였음.
 - 이에 대해 북한측이 특사교환을 제의해 옴에 따라 우리측은 특사교환을 통해 핵문제 해결 및 기본합의서 이행의 돌파구를 마련코자 적극 응하였으나, 결국 「서울 불바다」 발언 등 북한측의 반대화적인 자세로 인해 중단되고 말았으며,
 - 이후 카터 전 미대통령의 주선으로 다시 정상회담 개최에 쌍방이 합의함으로써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의 돌파구 마련이 기대되었으나, 김일성의 사망으로 무산되었음.
- 김영삼 대통령은 제50주년 광복절 경축사('95.8.15)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기본원칙중의 하나로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비롯한 모든 남북간의 합의사항이 존중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고,
 - 제51주년 광복절 경축사('96.8.15)에서도 남북한이 이미 기본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서로 교류·협력해 나가기로 세계와 민족 앞에 약속한 사실을 상기시

키면서 더 이상 이 약속의 이행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해 왔음.

- 심각한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동포들에게 순수동포애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대북 쌀지원('95.6.25-10.10)은 「인공기 강제계양사건」과 「칭진항 촬영사건」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 결국 대북 추가지원에 관한 제3차 북경회담('95.9.26-10.1)에서 쌀 추가지원 문제의 우선 협의를 주장하는 북한측 입장과 우성호 송환, 비방·증상증지, 회담장소 변경문제 등에 대한 북한측의 태도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이 서로 대치되어 성과없이 종료되었음.
-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우리측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의 거부로 인해 남북기본합의서는 현재까지 이행·실천되지 못하고 있음.

V. 향후 이행 전망 및 실천 방향

1. 향후 이행 전망

-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문제는 민족전체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며, 북한으로서도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계속 지연·거부하고 있지만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를 부정하거나 이를 백지화시킬 명분이 없음.
- 그러나 북한이 지금과 같이 대남 '적대노선'에 입각하여 우리를 배제한 채 미국과의 직접대화과 관계개선을 통한 체제유지에만 계속 집착하는 한 단시일내에 남북기본합의서가 이행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임.
 -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
- 북한이 체제유지의 방편으로 선택한 남북관계의 긴장은 체제유지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북한이 직면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역작용을 하고 있음.
 - 북한은 남북관계를 외면하고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미 관계 개선이나 경제난 해결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함.
- 북한이 지금이라도 남북대화에 호응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남북한은 평화를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통해 통일의 길을 활짝 열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임.

2. 4자회담과의 관계

- 4자회담 제의('96.4.16)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우리정부와 미국의 일관된 입장에서 비롯된 것임.
 - 즉 한·미 양국은 공동발표를 통해 확고한 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일방적인 정전협정 파기 행위 및 대미 직접 평화협상 기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4자회담 제의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당사자 해결원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주변국들의 협력하에 보완하기 위한 것임.
 - 한반도 문제와 관련 미국은 북한과 직접 별도 협상을 하지 않으며,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어 한국민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으며, 금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공식 재확인하였음.
- 또한 남북한은 이미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서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합의하고 다짐한 바 있음.

3. 향후 실천 방향

- 현시점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의 노력이 필요함.
- 첫째, 북한은 무조건적으로 남북대화와 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에 호응해 나와야 함.
 - 북한이 대남 적대정책을 버리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입각해서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에 성실한 자세로 호응해 나오는 것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과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요건임.
- 둘째,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에 대한 우리내부의 확고한 신념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실천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
 -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그 의의와 효용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져서는 안되며, 이의 이행·실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인내와 끈기로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
- 셋째,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민족 내부적인 노력과 함께 주변국들은 한반도 문제가 당사자간에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어야 함.

- 현재 단기적으로 북한측은 우리측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대화에 몰두하고 있으나 평화체제 문제의 실질적 당사자인 우리측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며 경제난 해결을 위해서도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측과의 대화에 호응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만큼
- 우리측은 유관국과의 협조를 통해 북한측이 남북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유도함은 물론,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무엇보다도 먼저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

[부 록 I]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문제 관련 쌍방

주요 제의·주장 일지(요약)

- 1991.12.13 남북,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서명
 - *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서울)

- 1991.12.15 노동신문 기본합의서 채택 관련 사설, 「평화와 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은 획기적 사변」
 -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음.
 - 합의서에는 7.4 공동성명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재확인한데 기초하여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무력에 의한 침략·충돌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며 다방면적인 협력·교류를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경주할데 대한 확고한 의지가 표명되어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도들이 지적되어 있음.
 - 합의서는 그 내용과 의의로 보아 7.4공동성명과 맞먹는 것으로서 그것이 채택된 것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문제 해결에 밝은 전망을 열어놓은 획기적 사변으로 됨.
 - 우리는 북과 남이 기본합의서를 채택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열렬히 지지환영함.
 - 북과 남사이에 합의서와 관련한 실천적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모든 합의사항들이 신의있게, 성실하게 리행되어야 함.

□ 1991.12.16 기본합의서 채택 관련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 박성철 담화

-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채택한 북남합의서는 그 내용과 의의에 있어서 나라의 평화보장과 통일문제 해결의 전제를 마련하는데서 밝은 전망을 열어놓은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고 확신하면서 이를 열렬히 지지환영함.

□ 1991.12.18 기본합의서 채택 관련 당 중앙위 비서 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윤기복 담화

- 북남고위급회담에서 북남합의서를 채택하고 북남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문제를 해결키로 합의한 것은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전망을 안겨주는 획기적인 사변으로 지지환영함.

□ 1991.12.2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 전원회의, 기본합의서 채택 평가

-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다방면적인 협력·교류 실현을 위한 포괄적 합의문건으로 북남합의서를 채택발표하였으며,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쌍방 대표들의 접촉을 가지기로 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함.
- 북남합의서가 채택발표됨으로써 북과 남사이에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에서 협의를 심화시켜나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호상신뢰와 민족적 단합을 도모하며 통일에 유리

한 국면을 열어나갈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조성되었음.

-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는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의 해소와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의 해소를 떠난 「교류우선론」이란 허용될 수 없음.

□ 1992. 1. 1 노태우 대통령 신년사, 기본합의서 실천 강조

- 남북한은 지난달 남북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대결과 분단의 어두운 시대를 마무리 짓고 화해와 협력의 밝은 시대를 열었음.
- 이제 남과 북은 남북합의서 내용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실천에 옮겨야 하며 끊어진 길을 다시 잇고 멈춰선 열차는 다시 달리도록 해야 함.

□ 1992. 1. 1 김일성 신년사, 기본합의서 이행 위한 노력 다짐

- 북남합의서는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우리 민족의 일치한 요구와 자주, 평화에로 나아가는 현시대의 추세를 옹계 반영한 가장 정당한 조국통일강령임.
- 자주적 입장은 북남합의서를 이행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 입장임.
- 통일문제는 역사적으로 국제관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인만큼 북남합의서를 이행하는데서 유관국들의 협조가 필요함.

- 당국자들은 북남합의서가 빈종이장으로 되지 않고 원만히 이행 되도록 성의와 노력을 다하여 통일을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함.

□ 1992. 1. 6 부시 미 대통령, 기본합의서 지지 표명
* 한·미 정상회담(서울)

- 미국은 한반도문제의 남북한 당사자 직접해결 원칙과 최근 채택된 남북합의서를 전폭적으로 지지

□ 1992. 1.21 노동신문 논평, 「'교류우선' 제창은 합의서이행 회피를 위한 것이다」

- 남조선당국자가 진정으로 북남합의서를 이행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교류문제에 말하기에 앞서 북과 남사이에 군축을 실현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등 불가침화약을 이행할데 대한 것부터 말했어야 함.

□ 1992. 2.10 노동신문 논평, 「자주적 입장에서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민족자주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채택된 북남합의서가 조국통일을 여는데 생활력을 발휘하는 것은 전적으로 북과 남이 민족자주의 원칙을 어떻게 견지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음.

□ 1992. 2.18 노동신문 논평, 「겨레는 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한다」

- 북과 남이 합의서를 통해 서로 화해하고 단결하여 나라의 평화와 통일문제를 해결할 것을 확약한 이상 남측은 북과 남사이의 화해와 단결을 가로막기 위해 쌓은 온갖 장벽을 제거해야 함.
- 합의서를 이행하자면 북과 남이 단결하여 민족주체의 힘으로 평화와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확고한 자주적 입장을 가져야 함.

□ 1992. 2.19 남북, 「남북기본합의서」 및 「비핵화 공동선언」 발효
*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평양 인민문화궁전)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발효문건 교환
-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서명·발효

□ 1992. 2.19 노태우 대통령,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발효 관련 특별담화

-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 발효된 「남북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을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여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 엄숙히 선언함.

- 북한의 최고책임자도 이를 성실하게 실천하겠다는 뜻을 국내외에 선언하기를 기대함.
- 이제부터 남과 북은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실천에 옮겨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약속은 오히려 새로운 불화의 씨앗이 될 것임.

□ 1992. 2.19 노동신문 논설,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기위한 강령적 지침」

- 합의서 문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 나가야 함.
- 정치·군사문제 해결을 뒷전에 미루고 장사나 하면서 꺾렁꺾렁 살자고 하는 교류우선론은 철회되어야 함.

□ 1992. 2.20 중국 외교부 대변인, 남북합의서 및 비핵선언 발효관련 환영 성명

□ 1992. 3. 1 노태우 대통령, 기본합의서 준수·실천 재천명
* 3.1절 기념사

- 우리 정부는 「남북합의서」와 「비핵화선언」을 성실히 준수하고 실천해나갈 것임을 재천명하며 북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를 실천하는데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함.

- 1992. 3. 2 북한 외교부 대변인, 핵안전협정 체결 관련 기자회견
 - 최근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남합의사항을 위반하고 우리를 비방 중상하고 일방적인 압력을 가하는데 이를 절대로 용허하지 않을 것임.

- 1992. 3. 3 노동신문 논평, 「북남화해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 남조선당국자들이 북과 남이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여 나라의 평화와 통일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확약한 북남합의서를 서명·선포한 이상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함.

- 1992. 3. 6 노동신문 논평, 「북남합의사항을 짓밟는 용납못할 배신행위」
 - 남조선의 최고당국자가 직접 북의 「핵문제」를 구실로 공공연히 합의서를 실천할 수 없다고 하고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 제재」 조치까지 운운해 나온 것은 용허묵과할 수 없는 대단히 엄중한 사태가 아닐 수 없음.
 - 온 민족앞에 서약한 북남합의서와 공동선언은 그 어떤 전제조건 없이 무조건 철저히 이행되어야 함.

- 1992. 3. 9 노동신문 논평,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자

면 사상, 제도의 장벽을 허물어버려야 한다」

- 북남합의서가 채택발효되어 상대방 제도를 인정·존중하며 자유로운 내왕과 접촉을 실현하자고 한 조건에서 남조선당국자들은 화해와 단합에 저촉되는 사상·제도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애국애족적이며 통일지향적인 정치를 실시해야 할 것임.

□ 1992. 3.11 노동신문 논평, 「방북통일인사들을 석방하여야 한다」

- 남조선의 「국가가보안법」은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대결을 추구하기 위한 악법이며 민족단합과 통일을 가로막기 위한 악법으로서 북남합의서 이행을 가로막는 주된 장애임.
- 반통일악법인 「국가가보안법」을 철폐하느냐 안하느냐, 방북 애국인사들을 석방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남조선당국자들에게 북남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된 초보적인 문제임.

□ 1992. 3.19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교환·발효

*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쌍방 총리가 서명한 문본 교환

□ 1992. 3.19 노동신문 논평, 「북남합의서 발효이후의 남조선사태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 북남합의문건들의 이행을 책임져야 할 남조선당국자들이 합의서와 공동선언의 발효초기단계부터 아무런 명분도 없는 「핵사찰」 문제를 합의문건 이행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역사적인 북남합의사항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고 우리에게 대한 노골적인 배신행위로서 용허묵과할 수 없는 사태임.
- 북남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남쌍방이 합의, 채택하고 해당한 비준절차를 밟아 발효시킨 존엄있는 문건이며 민족과 세계 앞에 그 이행을 확약한 민족공동의 서약으로 북남쌍방은 그 누구도 이 합의서와 공동선언을 어길 권리가 없음.

□ 1992. 3.20 남북한,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유엔에 공동 제출(제네바)

- 박수길 주제네바 대사와 북한의 이철 주제네바 대표부 대표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영문 번역본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불문 번역본을 유엔 군축회의에 공동제출

□ 1992. 3.30 북한 문익환목사구원대책위, 문목사 입북 3돌 즈음 성명

- 북남합의서 17조에는 북과 남이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내왕과 접촉을 실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만일 문목사 등을 계속 박해한다면 북남합의서 이행에 제동을

건 책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으며 반공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즉시 철폐되어야 함.

□ 1992. 5. 7 남북, 「남북연락사무소」·「군사공동위」·「남북교류·협력공동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발효
*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서울)

□ 1992. 5.12 최호중 통일부총리, 「평통」 제5차 서울지역회의 보고

- 향후 남북간 현안문제들은 분과위, 공동위 등 제도화된 틀을 바탕으로 단계적, 순차적으로 협의 해결
- 기본합의서 정신에 위반되는 8.15 범민족대회 추진 중단과 상호핵사찰 즉각 수용 대북촉구

□ 1992. 5.18 남북연락사무소 개설(판문점)

□ 1992. 5.19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변인 안병수, 대남전통문

- 남한 대학생들의 인공기 게양 관련 남측 당국자들이 북한을 반국가단체, 인공기는 동족상잔의 징표라고 하는 것은 남북합의서에 대한 도전으로서 금후 고위급회담의 존재가 깊이 우려됨.

□ 1992. 5.20 남북고위급회담 이동북대변인, 대북전통문

- 북한의 5.19일자 전통문은 기본합의서 1,2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기본합의서 정신을 난폭하게 유린한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시함.
- 북한은 기본합의서를 훼손시키거나 온겨레에게 실망을 주는 행동을 되풀이하지 말기를 강력 촉구하며 기본합의서 자체가 손상될 경우 그 책임은 북한측에게 있음을 경고함.

□ 1992. 5.25 통일원 대변인, 「5.22 북한 무장군인 침투」 관련 논평

- 북한 무장병력의 DMZ 남측지역 침투는 정전협정 및 남북합의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

□ 1992. 6. 1 최창윤 정부대변인, 북한의 합의서 위반 불용 언급

* 한·미 학술세미나

- 북한은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평화적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도 무장도발 획책 등 2중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북한의 DMZ 무장병 침투, 군정위 불참 등 기본합의서 위반행위를 결코 용인치 않을 것임.

□ 1992. 6.20 북한 정무원 총리 연형묵, 과거사 관련 대남서한

- 일제가 조선과 체결했다는 「을사5조약」, 「정미7조약」 등은 철저히 위조된 문서임이 남과 북의 사료들에서 입증되었음.
- 남북 책임당국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대처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분과위에 긴급의제로 상정, 공동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제의함.

□ 1992. 6.25 정원식 국무총리, 과거사 관련 대북서한

- 남과 북이 한·일간의 불행했던 과거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민족사를 전개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 구현을 위해 바람직함.
- 남북 당국은 향후 발족될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가 관련 학술교류를 주선·지원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 부속합의서」 작성을 더욱 서둘러야 할 것임.

□ 1992. 7. 7 정원식 국무총리, 이산가족 문제 관련 대북서한

- 남북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한 남북화해·협력시대를 열기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는 인도적 고통을 해소시켜주는 일임.
- 이산가족 및 특정인들의 생사확인·상봉, 귀환·정착문제 실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분과위나 별도의 집축을 통해서 실무협의 하기를 희망함.

□ 1992. 9.17 남북, 「화해」·「불가침」·「교류협력」부속합의서 및 「화해공동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발효

□ 1992. 9.19 노동신문 논평,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성실한 노력이 중요하다」

○ 북남합의서를 신사협정처럼 대하면서 아전인수격으로 왜곡하고 제멋대로 위반하면서 정략적 목적에 이용하거나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그 이행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한다면 그것은 아무 가치도 없는 빈 종이장이 되고 말 것임.

○ 북남쌍방은 대국적 입장에 서서 북남합의서 정신에 충실하게 부속합의서들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평화와 통일에로의 길을 과감히 열어나가야 하며 실천을 통하여 서로의 신뢰를 두터이 쌓고 그것을 통일로까지 승화시켜나가야 할 것임.

□ 1992.10. 4 노동신문 논설, 「미국은 북남합의서 이행을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 미국은 핵문제를 코에 걸고 북남합의서의 이행을 가로막음으로써 북남관계 개선에 훼방을 놓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불신과 대결에로 몰아가려는 구태의연한 대결노선을 추구하고 있음.

○ 미국은 조선문제에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응당 침략적인 대조선 정책을 수정하고 북남합의서 정신을 존중해야 하며 우리민족이 통일문제를 자주적,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도와나섬으로

써 긍정적 사태발전을 추동하는 입장에 서야 할 것임.

□ 1992.10. 7 최영철 통일부총리, 남한조선노동당 간첩단사건 관련 대북성명

- 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계개선을 논하면서 체제전복 목적의 간첩남파 및 포섭 등 공작활동을 계속한 것은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근본적으로 유린한 것임.
- 북한은 정치분과위와 화해공동위를 통하여 이에 대한 시인과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함.

□ 1992.10. 7 노동신문 논평, 「자주적 입장은 합의서 이행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입장」

- 남조선당국자들은 통일문제를 민족주체의 힘으로 해결할데 대하여 합의하고서도 그와 배치되게 외세의 힘에 의존하고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는 행동을 계속함으로써 합의서 이행에 인위적인 난관과 장애를 조성하여 왔음.
- 남조선당국자들은 합의서 정신에 맞게 남조선에서 미군과 미국의 군사기지를 철수, 철폐시킬 용단을 내려야 하며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도 완전히 전면적으로 중단해야 함.

□ 1992.10. 9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이동복 위원장, 대북전통문

- 남북기본합의서 등의 채택·발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간첩남파 및 공작활동을 계속해 왔음.
- 북측은 이에 대한 시인,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야하며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정치분과위를 긴급 소집할 것을 제의함.

□ 1992.10.12 남북정치분과위 북측 위원장 백남준, 대남전통문

- 최근 남측은 그무슨 남조선노동당사건을 조작하고 이를 북한과 관련시키면서 정치분과위 소집을 요청하였음.
- 남측이 꾸며낸 동사건은 정치분과위는 물론 앞으로 구성될 화해공동위에서도 논의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해두는 바임.

□ 1992.10.12 북한 외교부대변인, 한·미 T/S 재개합의 관련 비난성명

- 한·미는 제24차 연례안보협의회에서북한의 핵개발 의혹 운운하며 93 T/S 재개를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음.
- 이것은 남북합의서 이행에 난관을 조성, 남북대화를 위기에 몰아넣으려는 범죄행위이며 조미관계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는 무모한 행위임.

□ 1992.10.13 북한 조평통대변인, 한·미 T/S 재개계획 비난성명

- 한·미는 북한의 핵문제를 걸고 내년부터 T/S를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북남합의서에 대한 공공연한 유린행위임.
-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또다시 T/S를 재개한다면 북남고위급회담 등 모든 대화들이 파탄되고 북남합의서 이행이 중단될 것임.

□ 1992.10.13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단장 연형묵총리, 남한조선노동당사건 관련 대남편지

- 핵문제를 구실로 T/S 재개를 하려는 것은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포기하는 행위이며 전면 대결선언임.
- 남측은 반북모략극에 대하여 솔직히 시인, 사죄하고 T/S 재개결정을 철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임.

□ 1992.10.19 남북군사공동위 북측위원장 김광진, T/S 재개관련 담화

- 최근 한·미의 북한 공격을 위한 T/S 재개 등 전쟁모의는 합의서 이행을 후퇴시키려는 계획적 도발행위임.
- 만약 남조선당국자들이 T/S를 재개한다면 남북대화 파탄과 합

의서 이행중단 책임을 저야할 것임을 경고함.

□ 1992.10.21 현승중 국무총리, 남한조선노동당사건에 대한 북측의 시인·사과 및 재발방지조치 촉구 대북서한

- 남북관계가 기본합의서의 실천·이행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지금까지 북측의 불법적인 파괴·전복활동이 계속되어 온 점에서 엄청난 충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음.
- 이 사건은 기본합의서 제4조의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행위 금지」규정과 화해분야 부속합의서 제15조, 제17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을 엄중히 지적하고자 함.
-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남북정치분과위를 긴급 소집하자는 우리 측 제의를 거부한데 유감을 표명하며, 북측의 시인·사과와 재발방지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그 책임을 추궁할 것임.
- 또한 북측이 핵문제와 이산가족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한편 일체의 비방·중상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함.

□ 1992.10.22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 북측위원장 김정우, T/S 재개 규탄 담화

- 북남은 교류협력 부속합의서에 따라 물자교류 등 실천적 조치를 추진하게 되어 있으나 열핵전쟁연습이 벌어지면 실현될 수 없음.

- 남측이 끝끝내 T/S 재개를 벌인다면 남북대화를 파탄시키고 남북관계를 대결의 원점으로 돌려세운 책임을 져야함.
- 1992.10.25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 북측위원장 김철식, T/S 재개 규탄 담화
- 남측은 T/S 재개결정을 시급히 철회, 다가오는 공동위들이 순조롭게 가동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1992.10.26 조평통대변인, 콘크리트장벽 철거촉구 담화
- 남조선당국자들이 오늘에까지 분열의 장벽을 허물지 않는 것은 북남합의서 이행의사가 없다는 것임.
 - 남조선당국자들은 남북간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나라의 통일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장벽철거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함.
- 1992.10.26 노동신문 논평, 「남측은 북남관계를 어데로 끌고가려 하는가」
- 지금 남조선은 미국과 함께 군사적으로 위협하는가 하면 대결의식을 고취하고 있으며 「좌익세력척결」이라는 구호밑에 모든 사회정치세력을 감시탄압하는 폭압선풍을 일으키고 있음.

- 그것은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한 난폭한 위반행위로서 북남사이의 화해와 대화 자체를 파괴하고 정세를 대결의 원점으로 돌려세우는 용납못할 배신행위임.
-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또다시 T/S 연습을 벌이면서 대결과 긴장격화의 길로 나간다면 북남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모든 대화들이 위태롭게 되고 북남합의서의 이행에 엄청난 난관이 가로놓이게 될 것임.

□ 1992.10.28 한적 강영훈 총재, 적십자회담 제의 대북전통문

- 남북은 이산가족문제 관련 기본합의서 18조, 교류·협력 부속합의서 제3장에 대한 실천·이행단계로 진입하고 있음.
- 특히 부속합의서 16조에서는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빠른 시일내 재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을 11월중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며 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문제를 협의하고 구체적 실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 1992.10.29 주러 북한대사 손성필, T/S 재개 관련 기자회견

- 미국과 남한당국이 T/S 합동군사연습을 끝끝내 재개한다면 우리는 고위급회담을 비롯하여 남한당국과의 모든 대화·접촉을 동결시킬 것임.

□ 1992.10.31 북한 정무원총리 연행목, 「'92독수리훈련」 관련 대남
전통문

- 북남공동위들이 열리는 시점에와서 또다시 새로운 대규모 군사 연습소동을 벌이려는데 대해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음.
- 공동위 회의들이 예정대로 진행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측에 달려있음.

□ 1992.11. 1 조평통 서기국, 화랑·독수리훈련 관련 보도

- 북남합의서를 정면으로 유린하는 행위이며 북남공동위들을 비롯한 모든 북남대화들을 완전히 부정하는 범죄행위임.

□ 1992.11. 2 현승중 국무총리, 공동위원회 1차회의 개최 촉구 대
북전통문

- 통상적으로 실시되어 온 군사훈련들을 새삼스럽게 회담과 연계시키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
- 대결시대의 의식과 행태에서 벗어나 대화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준수해 나가야 함.
- 사리에 맞지않는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공동위 회의들이 예정된 일자에 무조건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함.

□ 1992.11. 2 북한 외교부대변인, T/S 관련 성명

- T/S 연습이 영원히 중지되고 그 어떤 핵위협이나 압력도 없어야 IAEA의 사찰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고 북남합의서도 성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음.

□ 1992.11. 2 북한 외교부대변인, '92독수리훈련 규탄 담화

- 독수리훈련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북남관계를 격화시키고 가동직전에 있는 여러갈래의 공동위들을 파탄시키는 반대화, 반평화, 반통일적 범죄행위임.

□ 1992.11. 3 남북화해, 군사, 경제, 사회문화공동위 북측위원장들의 연합성명

- 화랑·독수리같은 대규모 군사연습을 벌인다는 것은 사실상 북남공동위들에 대한 파괴행위이고 북남합의문건들의 이행포기 선언임.
- 우리측은 오는 11.5부터 진행되게 되어있는 공동위 1차회의들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명백히 천명함.

□ 1992.11. 4 최영철 통일부총리, 북한의 공동위 1차회의 불참선언 관련 대북성명

- 북한이 군사훈련계획을 철회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남북회담과 연계시켜 회담을 무산시킨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태도임.
- 북한은 모든 분야별 공동위들이 합의한대로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상호 핵사찰과 노부모방문단 교환을 조속히 실현시켜야 함.

□ 1992.11.13 노동신문 논설, 「대화의 운명은 남측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 남조선에서 북한을 반대하는 화랑이니, 독수리니 하는 도발적인 전쟁연습으로하여 남북공동위 제1차회의들이 유산되었으며 앞으로의 남북고위급회담도 위태롭게 되었음.
- 남조선당국자들은 이제라도 T/S 훈련 재개조치를 철회하여야 하며 대화분위기를 파괴하는 군사소동을 중지해야 함.

□ 1992.12. 4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변인 안병수, T/S 재개 결정 철회 요구 대남전통문

- 제9차 고위급회담이 제날짜에 개최되며 각 공동위들도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해당한 대책을 취하는 것이 필요함.
- 남측이 이제라도 민족내부문제를 쌍방의 노력으로 풀어나갈 생각이 있다면 반민족적이고 반대화적인 T/S 재개결정을 철회해야 할 것임.

- 그렇게 되면 남북대화는 구원되어 연내에 각공동위들이 가동되고 제9차 고위급회담도 열리게 될 것임.

□ 1992.12.10 남북고위급회담 공노명 대변인,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촉구 대북전통문

- 북측이 T/S 훈련문제를 제9차 고위급회담 개최와 연계시키면서 이의 철회를 요구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함.
- 북측은 지금이라도 우리측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철회하고 예정된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에 무조건 응해나와야 할 것임.

□ 1992.12.12 남북화해, 군사, 경제, 사회문화공동위 북측위원장들 공동명의 대남전통문

- 우리측은 각공동위들과 제9차 고위급회담의 개최를 위하여 12.15까지 T/S 재개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 이에 대하여 남측은 남북상호사찰이 진행되지 않으면 T/S 재개를 강행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고위급회담 자체를 유산시키려는 계획적인 술책임.
- 우리측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T/S를 강행한다면 그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임.

□ 1992.12.12 범민련 북측본부 대변인, 남북합의서 채택1주년 즈음
담화

-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T/S 재개결정을 무조건 철회해야 하며 남북대화를 가로막는 온갖 책동을 당장 중지해야 함.

□ 1992.12.15 남북합의서 채택1돐 즈음 노동신문 논평, 「역사적인
북남합의서는 존중이행되어야 한다」

- 북남기본합의서는 조국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현시대의 추세를 반영한 조국통일촉진 강령임.
-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합의서정신에서 벗어나 미국과 함께 T/S 재개를 결정하는 등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남조선당국자들이 끝끝내 T/S를 재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화 포기 선언이고 합의서 이행 정지선언이며 우리에게 대한 전면대결 선언임.
- 합의서가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화해와 단결의 입장에 서야 하며 대결전쟁소동으로 북남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함.

□ 1992.12.19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제9차 고위급회담 관련
성명

- 남측은 계획적으로 T/S 합동군사연습 재개결정을 강행하여 제 9차 북남고위급회담을 예정대로 개최할 수 없게한데 대하여 민족앞에 책임을 지고 사죄하여야 함.
- 남조선에서 T/S 합동군사연습을 비롯, 모든 회담장애들이 제거된다면 남북사이의 대화와 접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될 것임.

□ 1992.12.21 남북고위급회담 현승중 수석대표, 제9차 남북고위급 회담 및 각 공동위 정상화 촉구 대북전통문

- 제9차 고위급회담이 북측의 부당한 자세로 남북 쌍방이 합의한 날짜에 열리지 못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함.
- 북측의 핵무기개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합의사항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상황하에서 우리측은 안보태세 유지에 긴요한 T/S 훈련을 계속할 수밖에 없음.
- 북측은 대결시대의 구태와 사고의 틀 속에서 억지주장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남북대화에 임해나올 것을 촉구함.
- 북측의 일방적 조치로 인해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각 분야별 공동위원회와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해야 할 것임.

□ 1992.12.22 노동신문 논평, 「대화 동결의 책임은 남측에 있다」

- 남조선 집권자들이 우리와 마주앉아 화해와 불가침을 약속한 합의서를 채택 발표시키고 돌아앉아 외세와 함께 대화 상대방이며 동족인 우리를 해치기 위한 불장난을 벌이기로 한 것은 우리에게 대한 배신이며 북남 합의서에 대한 노골적인 유린임.
- 이러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인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은 이행의 문귀에서 커다란 장애에 부딪쳤으며 그것이 백지화될 위험도 없지 않음.

□ 1993. 1. 1 북한 김일성 신년사

- 북남대화가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여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발효시키는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할 수 있었음.
- 통일을 가까이 내다볼 수 있게 된 오늘에 와서 남조선당국자들이 부당한 구실을 붙여 북남합의서의 이행을 방해하고 도발적인 T/S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는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민족자주의 통일원칙을 부정하고 외세의 힘에 의거하여 불순한 목적을 실현해보려고 하는 반민족적 행위임.

□ 1993. 1. 3 노동신문 논평, 「남북합의서 이행과 핵전쟁연습은 양립될 수 없다」

- 대화와 대결, 북남합의서의 이행과 북침핵전쟁연습은 결코 양

립될 수 없음.

- 대화일방이 타방을 공격하기 위한 핵전쟁연습을 강행하는 조건에서는 북남합의서가 이행될 수 없음.

□ 1993. 1. 5 노동신문 논평, 「긴장격화책동은 대화와 합의서이행을 파탄시키기 위한 반민족적 배신행위」

- 남조선 당국자들은 우리와 북남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그 발효를 민족앞에 선포하고도 돌아앉아서는 그에 배치되는 긴장격화책동을 일삼으며 대화에 장애를 조성하였음.
- 북남합의서 이행을 위한 사업이 실천단계에 들어서게 된 때에 남조선통치배들이 북의 「핵개발」을 떠들며 미국과 함께 북침핵전쟁연습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미국의 압력과 지시에 추종하여 북남대화를 파괴하고 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을 포기하는 고의적인 반역행위이며 계획적인 긴장격화책동임.

□ 1993. 1.20 노동신문 논평,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의 채택발효는 온 민족이 염원하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을 실현하는 길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은 역사적인 사변이었음.
-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북남대화의 진전

과 북남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근본담보임.

□ 1993. 1.28 북한 정부 비망록,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노력」

- 북남합의문건들의 발효이후 사태발전은 북남사이에 아무리 좋은 합의를 이룩해도 대화자가 외세에 추종, 동족과 대결하는 길로 나간다면 그것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음을 보여줌.
- 더욱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T/S 군사연습을 재개하고 부당한 핵사찰압력을 강화해나옴으로써 좋게 진전되던 대화는 전면동결되고 합의문건들의 이행이 차단되었으며 조선반도 정세는 극도로 첨예화되고 있음.
-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통일과정을 계속 추진시켜나가려면 현조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함.
 - 첫째로,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T/S 합동군사연습을 걸어치워야 함.
 - 둘째로, 남조선당국은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의 길에 나서야 함.
 - 셋째로, 미국이 냉전시대의 낡은 대조선정책을 버려야 함.

□ 1993. 1.30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T/S 재개결정 관련 성명

- 우리측은 좋게 진행되어온 북남대화가 결렬되는 것을 막고 모처럼 채택, 발효된 북남합의문건들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세를 계속 완화와 평화의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가려는 일념에서 진지하게 노력해왔음.
- 우리측은 지난해 초에 핵담보협정에 서명하고 그후 IAEA의 비정기사찰을 성실하게 받아왔으며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안들을 내놓고 거듭 양보도 하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기에 모든 성의를 다하여왔음.
- 남조선당국자들이 외세와 야합하여 계획적으로 대화를 파탄에로 몰아가고있는 조건에서 구태여 대화를 구걸할 생각이 없으며 동결상태에 빠진 모든 북남당국사이의 대화를 굳이 재개할 의사가 없음을 천명함.
- 남조선당국자들은 핵전쟁소동으로 북남대화를 중단시키고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이행을 지연시킨 자기의 엄중한 죄과에 대하여 솔직히 시인하고 민족앞에 사죄하여야 함.

□ 1993. 2. 2 남북고위급회담 공노명 대변인, 북한측의 당국간 대화재개 거부 관련 성명

- 남북한 합의사항을 자의로 파괴하고 대화마저 거부하는 북한측의 태도는 참으로 유감스러움.
- 우리는 북한측이 대화의 마당으로 돌아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을 바라는 민족사의 요구와 은겨레의 여망에 부응하게

되기를 기대함.

□ 1993. 2.19 현승종 국무총리, 기본합의서·비핵화공동선언 발효 1주년 즈음 담화

- 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발효후 1년 사이, 남과 북은 모든 문제를 대화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기본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나, 남북간의 긴급한 현안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남북관계가 답보상태에 빠졌음.
- 남과 북은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지속적 관계발전을 이룩하여 어렵게 마련한 민족문제 해결의 자주적 장을 잘 활용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야 함.
- 우리는 현재 남북간의 교착상태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며, 하루빨리 기본합의서를 비롯한 쌍방간 합의사항들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

□ 1993. 2.23 기본합의서 발효 1주년 관련 노동신문 논평, 「남북합의문건 발효후 사태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이 발효되어 북과 남사이에 불신과 대결의 장벽을 허물고 화해의 새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전쟁의 위협을 가시고 평화와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밝은 전망을 내다보게 되었음.

- 우리는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해왔음.
- 우리의 시종일관한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남대화는 동결 상태에 빠지고 합의문건들의 이행이 정지되고 말았으며 정세는 합의문건 발효 이전의 침예한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음.
-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내외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합의문건을 채택, 발효시키는데까지 나오기는 했으나 처음부터 그것을 달가와하지 않았으며 그 실천단계에서 합의서 이행을 지연, 파탄시키는데로 줄달음쳤음.
- 사실들은 남조선당국자들이 북남합의서의 정신에 따라 우리와 화해하고 힘을 합쳐 평화통일을 이룩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힘으로 누르고 승공통일 야망을 실현할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줌.
- 남조선통치배들은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북남공동기구들의 사업을 파탄시키고 평화와 통일로 좋게 흐르던 조선반도 정세를 위협천만한 핵전쟁 접경으로 몰아간 데 대해 마땅히 책임져야 함.
- 남조선당국자들은 사태를 똑바로 보고 우리를 반대하는 핵 소동과 T/S 핵시험전쟁을 중지하고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는대로 나와야 함.

□ 1993. 2.25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공동위 북측위원장들, T/S 재

개 및 대북한 특별사찰 문제 관련 공동기자회견

- 남조선당국자들이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을 바란다면 우리의 경고에 심사숙고하고 T/S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어야 했음.
- 남조선당국자들이 T/S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는 것은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책동의 일환임.
- 북과 남이 온 민족과 세계 앞에 공약한 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

□ 1993. 3.12 북한, NPT 탈퇴성명 발표

□ 1993. 3.12 정부, 북한의 NPT 탈퇴선언 관련 성명

- 북한이 핵무기 비확산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한 3.12 성명은 이미 남북간에 채택된 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그리고 부속합의서 등 모든 남북합의사항의 신뢰성을 상실시키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함.

□ 1993. 4.23 김영삼 대통령, 남북대화 재개 예상

* 미 CNN-TV 회견

- 양측이 이미 북남합의서를 채택했고 앞으로 대화 진행가능성이 있는 이상, 일시 중단된 대화의 재개는 시간문제임.

□ 1993. 7. 9 한완상 통일부총리, 새정부의 통일방안 해설
* 방송기자클럽 정책토론회

- 새정부의 통일정책구도인 「3단계론」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골격을 살리며 남북간에 채택된 기본합의서에서 합의된 화해·협력의 약속을 수용한 것임.

□ 1993. 8. 4 남북고위급회담 황인성 수석대표, 남북회담 조속재개 촉구 대북전통문

- 최근 북측이 대미접촉에서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남북회담 조속재개를 표명한 것은 다행임.
- 이제 남북핵통제공동위를 조속 정상화시켜 사찰규정을 마련하고 상호핵사찰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 1993. 8. 9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변인, 핵통제공동위 회의 재개 제의 관련 담화

- 남측이 진실로 우리와 핵문제를 협의할 의사가 있다면 북남대화에 제동을 걸고 조선반도 비핵화를 회피해 온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을데 대한 초보적인 의사를

표시라도 있어야 할 것임.

- 남북대화의 새출발을 위해 핵문제 해결을 할 것처럼 대화를 제기하면서도 국제공조체제 운운하며 대화상대방을 자극·모해하는 이중적 행동도 그만두어야 함.

□ 1993. 8.14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 대변인, 남북회담 재개촉구 대북 성명

- 북측이 8.9 담화를 통해 핵통제공동위 재개 제의를 거부한 것은, 핵문제 해결노력을 또다시 외면한 처사로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 우리측은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실천하는데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8.4 우리측 제의에 대한 성실한 회담을 계속 기다릴 것임.

□ 1993. 8.15 김영삼대통령, 기본합의서 실천 강조
* 48주년 광복절 경축사

- 남북기본합의서는 당장 실천에 옮겨져야 하며, 먼저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어주는 일에 적극 호응 바람.

□ 1993. 8.31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변인, 특사교환문제 관련 담화

- 우리는 남측이 어떤 형태로든 성의있는 대화자세를 표시한다면

구태여 특사의 급에 구애되지 않겠음.

- 특사교환에서는 비핵화문제와 함께 긴장완화와 북남합의서 이행을 위한 공동대책을 시급히 취할데 대한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해결하게 될 것임.

□ 1993. 9.17 남북고위급회담 대변인, 부속합의서 발효 1주년 관련 성명

- 우리는 남북이 합의·구성한 분야별 공동위원회들을 조속히 가동시키고 부속합의서에서 약속한대로 화해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실천에 옮겨나가게 되기를 바랍.
- 우리는 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이 남북대화를 위한 살아있는 규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바임.

□ 1993. 9.18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남한 어선 나포 관련 성명

- 남조선 당국은 9.16 간첩선을 침입시켜 우리측 해안선 지역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음.
-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은 군사도발로 대화재개의 앞길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한 남조선당국자들의 범죄행위를 규탄함.

□ 1994. 1.10 이영덕 통일부총리, 핵문제 해결시 기본합의서 실천
천명

* 국회 외무통일위

- 북한의 핵투명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 남북기본
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약속해 놓은 여러 시행사업들을 실천해
나가겠음.

□ 1994. 1.17 한승주 외무부장관, 미국의 비핵화공동선언 국제조약
화 제의 부인

- 비핵화공동선언은 남북이 선언의 당사자이므로 남북한이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제적 의정서를 체결할 사안이 아님.

□ 1994. 3.23 국회 외무통일위,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회 외무통
일위원회의 입장」 결의문 채택

-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간 모
든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할 것

□ 1994. 4.29 외무부 당국자 논평 - 북한의 한반도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대미 협상 제의 관련

- 남북한은 이미 기본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

다”고 합의하였음.

□ 1994. 5. 3 통일원 대변인 성명 - 북한의 군정위 기능 중지 관련

- 북한이 군정위 기능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정전협정을 대미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정전협정 및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 위배되는 것임.
- 정전협정의 대체를 포함한 현 정전체제의 전환문제는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일 뿐만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부합되는 것임.

□ 1994. 5. 3 이홍구 통일부총리, 남북당사자 합의에 의한 정전협정문제 해결 촉구

* 방송3사 인터뷰

- 남북기본합의서의 5조에 따라 정전협정문제는 남북한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되어야 함.

□ 1994. 5. 3 북한 조평통 대변인, 민족대회 소집제의 거부 관련 규탄 담화

- 북남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제4조 1항에는 “북남연락사무소는 북남사이에서 제기되는 제반 연락업무를 수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남측으로서는 용당 우리측 편지를 접수하여 당사자들에게 전달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

- 남조선당국자들이 당사자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측의 편지접수를 거부한 것은 북남합의서를 무시하고 꺾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1994. 5. 6 북한 외교부 대변인,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 제의 관련 기자회견

- 북남 사이에 불가침을 기본으로 하는 합의서가 채택되고 그에 따라 북남군사공동위원회가 조직된 조건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가 수립되면 그 이행을 보완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 문제도 완전히 풀릴 수 있게 될 것임.

□ 1994. 5.23 이홍구 통일부총리, 북한의 핵개발 관련 국회 외무통일위 발언

- 북한이 핵재처리시설로 알려진 방사화학실험실을 계속 유지한다면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을 새로운 각도에서 논의하지 않을 수 없음.
-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은 사실상 무효화된 것이 현실임.

□ 1994. 5.27 통일원대변인, 민족대회 소집촉구 대남전통문 관련

논평

- 북한이 핵문제 해결의 토대위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천기구를 하루속히 정상가동하는데 호응해 나올 것을 요구함.

□ 1994. 5.28 북한 조평통 대변인, 비핵화공동선언 관련 성명

- 우리는 비핵화공동선언에 서명한 당사자로서 남조선의 고위당국자가 직접 한 이 공식발언("남북비핵화공동선언은 이미 현실적으로 무효화 되었다")을 극히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음.
- 남조선의 비핵화공동선언 무효화발언은 북과 남이 채택, 발효시킨 비핵화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하고 그 파기를 선언한 것임.
- 남조선당국은 비핵화공동선언을 무효화시킨 것으로하여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임.

□ 1994. 6. 8 김영삼 대통령, 북한의 핵개발 추진 경고

* 한국일보 특별회전

- 북한이 끝내 핵개발 추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준수 노력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1994. 6.23 조평통 비망록, 남한 핵무기 개발 주장

- 남조선당국은 비핵화공동선언을 파기하기 위한 책동을 계획적으로 자행해 왔으며 나중에는 현실적 무효화론을 선언하는 것으로 마침내 그것을 휴지화해 버렸음.

□ 1994. 8.12 미·북 제네바 합의성명, 북한의 비핵화공동선언 이행 용의 표명

-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및 안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미국은 조선에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담보를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으며 조선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북남공동선언을 이행할 일관한 용의를 표명하였음.

□ 1994. 8.15 제5차 범민족대회 공동결의문, 기본합의서 이행 촉구

- 북남 당국이 북남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모든 양심수의 석방을 위해 노력할 것임.

□ 1994. 9. 2 외무부 대변인 논평 - 중국의 군정위 철수 결정 관련

-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한 쌍방 합의에 의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준수되어야 할 것임.

□ 1994. 9. 3 통일원 대변인 브리핑 -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
관련

-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남북 당사자원칙에 따라 해결해 나감.

□ 1994. 9. 9 북한 외교부 대변인 담화 - 미·북회담에서 평화협정
토의 제의

- 오래전에 북남사이에 불가침을 공약한 합의서가 채택된 조건에서 우리와 미국사이에 평화보장체제까지 수립된다면 그것은 조선반도에서 가장 공고하고 철저한 평화보장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될 것임.

□ 1994. 9.28 외무부, 기본합의서에 따라 평화체제 전환 방침 천명
* 국정감사 서면보고

-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한간 직접대화를 통해 현행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함.

□ 1994.10.18 한승주 외무장관, 미·북 합의 관련 기자회견

- 금번 미·북간 합의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에 옮겨,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룩하는 계기가 될 것임.

□ 1994.10.21 미·북 「기본합의문」 서명·발표(제네바)
* 북한측 발표문

- 조선은 시종일관하게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북남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함.
- 조선은 이 기본합의문에 의하여 대화를 도모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따라 북남대화를 진행할 것임.

□ 1994.11. 1 이홍구 통일부총리, 기본합의서에 바탕한 남북대화 추진 언급
* 국회 본회의 답변

- 남북 대화는 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한 핵통제공동위, 경제공동위, 화해공동위를 가동하는 것이 중요함.

□ 1994.11. 4 한승주 외무장관, 남북 평화협정 체결후 관련국 보장 방안 언급

- 남북한이 기본합의서에 따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관련국들이 이를 추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1994.11.15 이홍구 통일부총리, 경제공동위를 통한 경험 논의 바람직 언급
* 방송기자클럽 초청 연설

- 대화기구중 경제공동위는 회담날짜까지 합의된 상태에서 연기됐으므로 이 공동위의 가동이 가장 바람직함.
- 1994.11.18 북한 외교부 대변인, 핵동결 조치로 비핵화공동선언 의무 완전 이행 주장(기자회견)
- 폐연료봉 처리 관련 조·미 합의에 따라 북남 비핵화선언에 따르는 우리의 의무를 사실상 완전히 이행한 것으로 됨.
 - 이제 북남 비핵화선언을 위해 할 일은 미국과 남조선측에 더 많이 남아있으며 앞으로 조·미합의문에 따라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임.
- 1995. 1. 9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기본합의서 성실 이행 재확인
- 남북화해·협력을 실현하는 길은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데 있다는 점을 재확인
 -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평화체제로의 전환시까지 현 정전협정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 견지
- 1995. 1.25 송영대 통일원 차관 성명 - 북한의 8.15공동경축 및 대민족회의 개최 제의 관련
- 광복절 공동경축행사를 포함한 남북간의 현안문제들을 협의하

기 위해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책임있는 당국간 대화를 개최할 것을 제의함.

□ 1995. 2.16 민주평통, 당국간 회담 호응촉구 대북성명

-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철저 준수
- 통일전선전략 지양, 남북 고위급회담 등 당국자간 대화에 즉각 호응

□ 1995. 2.17 김덕 통일부총리,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3주년 기념 세미나 기념사

- 남북한은 기본합의서를 비롯한 기존 합의를 성실히 지켜나감으로써 상호 신뢰를 쌓고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할 것임.

□ 1995. 2.17 정원식 전총리,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3주년 기념 세미나 기조연설

- 기본합의서 내용들이 하나하나 실행됐더라면 지금쯤 남북관계는 획기적으로 진전됐을 것임.
- 북한이 대화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타개의 길은 남북합의서를 이행하는데 있음.

□ 1995. 2.24 북한 외교부 대변인 담화 -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문제 관련

- 우리와 북남합의서를 통하여 불가침을 확약하고 그 이행을 위한 군사공동위원회까지 구성해 놓은 남조선 당국이 분수없이 평화보장체계 수립에 간참하는 것은 북남합의서를 백지화하려는 시도의 아무 것도 아님.

□ 1995. 2.24 외무부 대변인 논평 - 폴란드 중감위 철수문제 관련

- 북한측의 행위는 정전협정 자체는 물론 평화상태로 전환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의 준수를 명시한 남북기본합의서 기본정신에 정면위배되는 것임.
- 우리는 북한측의 이와같은 정전체제 와해책동에도 불구하고,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대로 평화체제로 전환될 때까지는 현 정전협정체제를 확고히 준수해 나갈 것임.

□ 1995. 3.15 북한 「조평통」 서기국장 백남준, 굴업도 핵폐기물 처리장 확정 발표관련 기자회견

- 남조선 당국이 비핵화공동선언과 북남합의서는 안중에 없이 굴업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모든 북남합의서를 부정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로 될 것임.
- 만일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모든 북남합

의서들이 전면 백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단호히 경고함.

□ 1995. 3.20 통일원 대변인, 굴엽도 핵폐기물 처분장 관련 모략
중지 및 당국간 대화 호응 촉구 성명

- 북한이 「남북합의서의 전면 백지화」운운하는 것은 남북당국간 대화를 계속 회피하고 기존의 남북합의사항을 파기하기 위한 구실을 찾으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임.
-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은 평화와 통일의 장전이며, 쌍방 최고책임자가 비준한 엄숙한 민족적 약속으로 이를 파기하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

□ 1995. 5. 4 통일원 대변인, 북한의 중감위 사무실 폐쇄 성명 관련 논평

- 남북한간에는 이미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하기로 합의하였음.
- 따라서 남북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평화체제로 전환될 때까지 정전협정 위배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음.

□ 1995. 8.11 북한 정부 비망록 - 고려연방제 발표 15돌 관련

- 북과 남은 1991년 북남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평화보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음.

- 앞으로 조건이 성숙되는데 따라 북남대화가 재개되면 이미 세워진 제도적 장치가 가동될 수 있음.

□ 1995. 8.14 북한 외교부 대변인, 대북 평화협정 제의설 관련 기자회견

- 남조선당국자들이 「2+2」를 들고 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침을 약속한 북남합의서를 집어던지는 것으로 됨.
- 우리와 미국사이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가 수립되면 조선반도 정세는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이며 북남합의서의 이행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임.

□ 1995. 8.15 김영삼 대통령, 한반도 평화정착 기본원칙 제시
* 제50주년 광복절 경축사

-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비롯한 모든 남북간의 합의사항은 존중되어야 함.

□ 1995. 8.23 노동신문, 광복절 경축사 비난 논평

- 북남합의서 존중과 신뢰구축이니 하는 소리는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체계적으로 위반하고 북남관계를 최악의 국면

에로 몰아간 저들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꾀변임.

□ 1995. 9. 7 북한 외교부 대변인, 미군의 남한 “점령” 50주년 즈음
비난 담화

- 우리와 미국사이에 평화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게 되면 북남합의서의 이행도 추동하게 될 것임.

□ 1995. 9.11 노동신문 논설 - 기본합의서 관련

- 북과 남이 채택, 발효시킨 북남합의서에는 민족적 화해를 이룩
하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데 대한 쌍방의 확
고한 의지와 이를 위한 구체적 방도들이 지적되어 있음.
- 북남합의서는 북남쌍방이 합의 채택하고 해당한 비준절차를 밟
아 발효시킨 존엄있는 문건이며 민족과 세계 앞에 그 이행을
확약한 공동의 서약임.
- 남조선당국자들이 해야 할 일은 북남합의서 정신에 맞게 군축
을 실현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조선반도를 비핵, 평화지대
로 만들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노력하는 것임.
- 남조선당국자들이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체계 수립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북남대화를 파탄시키고 북남합의서를 휴지화해
버린데 대하여 민족앞에 사죄하며 대화를 재개하고 북남합의서

를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여야 함.

□ 1995.10.11 북한 외교부 최수현 부부장, 제50차 유엔총회 연설

- 북남 사이의 평화보장체계는 1991년 12월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됨으로써 사실상 문건상으로는 마련된 것이나 다름이 없음.
- 북남 사이에는 다만 불가침을 약속하는 이 평화보장장치를 가동하기만 하면 될 것임.

□ 1995.11.04 북한 평양방송 시사논평 - 제2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의 관련

- 북과 남 사이에는 이미 북남합의서가 채택되어 있고, 여기에는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 방지, 군축 등 평화보장을 위한 제반문제들이 다 지적되어 있음.
- 문제는 이 기본합의서를 정확히 가동시켜서 이행만 하면 됨.

□ 1996. 2. 1 통일원 대변인 논평 - 북한의 정당·단체 연합회의의 관련

- 북한이 진정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책임있는 남북한 당국이 마주앉아 남북간의 현안문제와

통일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임.

□ 1996. 2.23 통일원 대변인 논평 - 북한의 잠정협정체결 대미 제의 관련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남북 당사자가 주체가 되고 남북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등 기존합의를 존중하며 관련국 협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함.
-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 따라 현 정전상태가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군사정전위원회에 하루속히 복귀해야 할 것임.

□ 1996. 4.18 북한 외교부 대변인, 4자회담 관련 기자회견

- 문제는 기본합의서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 원인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남조선당국자들 때문에 북남대화가 중단된데 있음.

□ 1996. 7.24 통일원 대변인 브리핑 - 남북기본합의서 등의 이행에 대한 정부 입장

- 국민회의 김대중총재가 “정부가 남북합의서를 무시하고 실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는 지적은 정부정책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봄.

- 정부는 남북사이의 모든 약속과 합의가 당연히 지켜져야 하며, 특히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틀로서 반드시 이행·준수되어야 함.
- 이같은 입장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 연설을 비롯, 통일부총리 성명 등을 통해 기회있을 때마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분야별 부속합의서의 이행과 그 실천기구인 4개 공동위원회 개최를 북한측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음.
-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사이에 이룬 모든 약속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북한측이 이에 호응해 나오도록 계속 촉구할 것임.

□ 1996. 8.15 김영삼 대통령, 기본합의서 이행 촉구
* 제51주년 광복절 경축사

- 남북한은 이미 기본합의서를 통해, 남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서로 교류·협력해 나가기로 세계와 민족 앞에 약속한 바 있음.
- 이제 더 이상 이 약속의 이행이 지연되어서는 안됨.

□ 1996.10.21 김영삼 대통령, 북한에 정전 관리기구 복귀 촉구
* 제181회 정기국회 시정연설

- 정부는 북한 당국이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가 새로 마련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을 완전 준수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약속을 지켜 군사정전위원회 등 정전협정 관리기구에 조속히 복귀하는 동시에, 4자회담에 하루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함.

□ 1996.11.19 조선중앙통신, 판문점 연락사무소 철수 및 업무중지 보도

- 남조선당국자가 대화를 전면 부정해 나가고 있는 조건에서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위한 기관연락과 실무적 협의를 맡아보는 판문점 연락사무소도 그 존재 의미가 없게 되었음.
- '96.11.20부터 잠정적으로 연락사무소 대표들을 철수하고 그 업무를 중지할 것임.

□ 1996.11.19 통일원 대변인, 북한의 판문점 연락사무소 철수 관련 성명

- 남북연락사무소는 기본합의서 제7조에 따라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 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임.
- 이번 북한의 조치는 남북대화의 중단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고, 남북당국이 함께 합의한 기본합의서를 정면으로 유린하려는 행위임.
- 정부는 북한이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북측 연락사무소

를 원상 회복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함.

□ 1996.11.21 노동신문 논평, 「반통일분자의 뻔뻔스러운 도발」

-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휴지장처럼 짓밟아 버린 자들이 대화중단책임이요, 남북합의서 유린이요 하며 도발하는 것은 첩편피한 것임.

□ 1996.12.13 통일원 대변인, 기본합의서 채택 5주년 즈음 대북성명

- 진정으로 민족을 위하고 통일을 원한다면 합의된 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회피하는 구실로도 정당화 될 수 없음.
- 북한은 기본합의서 실천기구인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일방적으로 무산시켰으며 핵위협과 정전협정 무실화 책동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였음.
- 우리는 잠수함 침투사건 관련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고 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화해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함.

□ 1996.12.13 노동신문, 기본합의서 채택 5주년 즈음 논평
* 「북남합의서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 김○○일당은 북남합의서 정신을 난폭하게 짓밟고 반민족, 반평화, 반통일 대결전쟁책동에 미쳐 날뛰며 그 무슨 간첩사건이라는 반공화국 모략사건을 조작하였음.
- 현실은 남조선 괴뢰들의 반공화국 대결전쟁책동이 중지되고 조·미간 평화보장체계가 수립되어야 북남합의서 이행을 위한 분위기도 마련될 수 있음.

□ 1997. 2.20 노동신문, 김일성 주석의 남북고위급회담 쌍방대표들에 대한 담화 발표 5돐 기념 논설

-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지난 5년동안 북남합의문건들을 성실히 이행하며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으나, 남조선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책동으로 말미암아 용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음.
- 반통일적인 김○○일당의 집권으로 북남관계는 북남합의서 채택 이전의 침예한 대결국면으로 되돌아가고 평화통일의 앞길에 더 큰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이게 되었음.

[부 록 Ⅱ]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문제 관련

주요 합의 · 주장 전문

부 록 목 차

1. 합의서

| | |
|-------------------------------------------------------------------------------------|-----|
| [1]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 12. 13) | 101 |
| [2]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2. 2. 19) | 104 |
| [3]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1992. 2. 19) | 105 |
| [4]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1992. 3. 19) | 107 |
| [5]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운영에 관한 합의서(1992. 5. 7) | 109 |
| [6]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1992. 5. 7) | 110 |
| [7]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1992. 5. 7) | 112 |
| [8]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1992. 9. 17) | 114 |
| [9]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 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 9. 17) | 116 |
| [10]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 9. 17) | 120 |
| [11]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 9. 17) | 123 |

2. 주요 주장

| | |
|--------------------------------------------------------------------|-----|
| [1] 노동신문 사설 - 「평화와 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 놓은 획기적 사변」 (1991. 12. 15) | 133 |
| [2] 김일성 신년사(1992. 1. 1) | 137 |
| [3] 노태우 대통령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특별담화(1992. 2. 19) | 141 |
| [4] 북한 정무원 총리, 남한조선노동당사건 관련 남측의 정치모략극 시인·사죄 촉구 대남 편지(1992. 10. 13) | 143 |

| | |
|-------------------------------------------------------------------------------|-----|
| [5] 현승종 국무총리, 남한조선노동당사건에 대한 북측의 시인·사과 및 재발방지조치 촉구 대북 서한(1992. 10. 21) | 147 |
| [6] 북한 정무원 총리, 군사연습 중지 요구 대남 전통문(1992. 10. 31) | 152 |
| [7] 현승종 국무총리, 4개공동위원회 1차회의 개최 촉구 대북 전통문(1992. 11. 2) | 154 |
| [8] 남북화해, 군사, 경제, 사회문화공동위 북측위원장들의 연합성명(1992. 11. 3) | 155 |
| [9]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변인, T/S 훈련 재개결정 철회요구 대남 전통문(1992. 12. 4) | 159 |
| [10] 남북고위급회담 공노명 대변인,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촉구 대북 전통문(1992. 12. 10) | 161 |
| [11] 남북화해, 군사, 경제, 사회문화공동위 북측위원장들 공동명의 대남 전통문(1992. 12. 12) | 163 |
| [12] 기본합의서 채택 1돛 즈음 노동신문 논평 - 「역사적인 북남합의서는 존중이 행되어야 한다」 (1992. 12. 15) | 166 |
| [13] 현승종 국무총리,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 및 각 공동위 정상화 촉구 대북 전통문(1992. 12. 21) | 169 |
| [14] 노동신문 논평 - 「대화동결의 책임은 남측에 있다」 (1992. 12.22) | 174 |
| [15] 김일성 신년사(1993. 1. 1) | 179 |
| [16] 북한정부비망록 - 「민족자주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노력」 (1993. 1. 28) | 180 |
| [17] 남북고위급 회담 북측대표단, T/S 재개결정 관련 성명(1993. 1. 30) | 192 |
| [18] 기본합의서 발효 1주년 국무총리 담화(1993. 2. 19) | 196 |
| [19] 기본합의서 발효 1주년 관련 노동신문 논평 - 「남북합의문건 발효후 사태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1993. 2. 23) | 199 |
| [20] 부속합의서 발효 1주년 관련 남북고위급회담 대변인 성명(1993. 9. 17) | 202 |

| | |
|------------------------------------------------------------------------------|-----|
| [21] 통일원 대변인 브리핑 - 「남북기본합의서 등의 이행에 대한 정부입장」 (1996. 7. 24) | 204 |
| [22] 제51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1996. 8. 15) | 204 |
| [23] 판문점 연락사무소 철수 관련 조선중앙통신 보도(1996. 11. 19) | 206 |
| [24] 북한의 판문점 연락사무소 철수 관련 통일원 대변인 성명(1996. 11. 19) | 207 |
| [25] 기본합의서 채택 5주년 즈음 통일원 대변인 대북 성명(1996. 12. 13) | 208 |
| [26] 기본합의서 채택 5주년 즈음 노동신문 논평 - 「북남합의서는 반드시 이행되 어야 한다」(1996. 12. 13) | 208 |
| [27] 노동신문, 김일성 주석의 남북고위급회담 쌍방대표들에 대한 담화발표 5돐 기념 논설(1997. 2. 20) | 211 |

1. 합 의 서

(1)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1. 12. 13 채택, 1992. 2. 19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통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북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를 간섭하지 않는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상·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서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표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태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2장 남북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 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계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대표단 단장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정원식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2]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992. 1. 20 서명, 1992. 2. 19 발효)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 1월 20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목

[3]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 2. 19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고위급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정치분과위원회, 남북군사분과위원회,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각 분과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로 한다.
- ② 쌍방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 ③ 수행원은 6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해당부문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
- ②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해당 부문의 구체적인 이행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각각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
- ③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부문의 남북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다.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정치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다.

제3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번갈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 ③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④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 ⑤ 각 분과위원회 회의를 위해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⑥ 각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의 협의결과를 남북고위급회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각 분과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총리가 서명하고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또한 쌍방이 합의하여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을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도 발효할수 있으며, 이 경우 남북고위급회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7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2월 19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목

[4]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 3.19 발효)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이하 “핵통제공동위원회”라 함)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핵통제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그중 1~2명은 현역군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차관(부부장)급으로 한다.
- ② 쌍방은 핵통제공동위원회의 구성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 ③ 핵통제공동위원회 수행원 6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추진한다.

- ①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문제를 토의한데 따라 부속문건들을 채택·처리하는 문제와 기타 관련 사항
- ②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정보(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협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와 핵기지 포함) 교환에 관한 사항
- ③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④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대상(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협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와 핵기지 포함)의 선정, 사찰절차·방법에 관한 사항
- ⑤ 핵사찰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에 관한 사항
- ⑥ 핵사찰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 ⑦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행과 사찰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제3조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2개월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번갈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 ③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해 상대측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 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⑤ 핵통제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핵통제공동위원회의 합의사항은 쌍방총리가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총리가 서명하고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3월 18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목

[5]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 5. 7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7조에 따라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남북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연락사무소 명칭은 남측은 「남측연락사무소」라고 하고 북측은 「북측연락사무소」라고 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연락사무소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설치한다.

제3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연락사무소는 남과 북에서 각각 소장 1명, 부소장 1명과 필요한 수의 관료관들로 구성한다.
- ② 연락사무소 소장은 국장급으로 한다.
- ③ 연락사무소 소장, 부소장, 연락관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④ 앞으로 쌍방이 합의하여 연락사무소안에 필요한 부서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 위임에 따라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제반연락업무를 수행한다. 의뢰에 따르는 연락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 ② 위임에 따라 남북사이의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 ③ 남북사이의 각종 왕래와 접촉에 따르는 안내와 편의를 제공한다.
- ④ 쌍방 연락사무소 사이에 필요한 수의 전화선을 가설하고 운용한다.

제5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쌍방은 필요에 따라 연락관 접촉을 가진다. 연락사무소 구성원들 사이의 연락은 접촉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진행한다.
- ② 연락사무소 소장회의는 수시로 진행한다.

③ 자기측 지역을 왕래하는 상대측의 연락사무소 구성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과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④ 연락사무소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로 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운영 날짜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일요일은 휴무일로하며 명절을 비롯하여 각기 제정한 공휴일은 일방의 통지에 따라 휴무일로 한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7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목

[6]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 5. 7 발효)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북 사이의 불가침을 이행·보장하고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이하 “군사공동위원회”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군사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 ② 군사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차관급(부부장급)이상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은 급은 각기 편리하게 한다.
- ③ 쌍방은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④ 수행원은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⑤ 쌍방은 군사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을 협의한다.
- ②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필요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실천한다.
- ③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사항을 실천한다.
- ④ 위에서 합의한 사항의 실천을 확인·감독한다.

제3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과 서울·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③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④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도 있다.
- ⑤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 안전 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⑥ 군사공동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4조 군사공동위원회 회의에서의 합의사항은 쌍방 공동위원장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

은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무협의회에서의 합의문건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키는 경우 그것을 군사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목

(7)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 5. 7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2조에 따라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남과 북은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쌍방이 합의하여 장관(부장) 또는 차관

(부부장)급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 ④ 쌍방은 공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 ⑤ 수행원은 각기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⑥ 쌍방은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를 이행한다.
-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기타 세부사항을 협의·실천한다.
- 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실무협의회들이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서울, 평양, 그리고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 ⑤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교류·협력 당사자, 해당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 ⑥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⑦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 공동위원장들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중요한 문건은 쌍방이 합의하여 총리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무협의체들의 회의 합의사항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당 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

[8]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 9. 17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 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장관(부장) 또는 차관(부부장)급으로 하며, 부위원장,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 ③ 쌍방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④ 수행원은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⑤ 쌍방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률실무협의회, 비방·중상중지실무협의회를 두며, 그밖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에서 따로 작성한다.

제2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이하 부속합의서라 함)를 이행한다.
- 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록 또는 세부적인 합의문건을 작성할 수 있다.
- ③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각 실무협의회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과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의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③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④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 있다.
- ⑤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는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 ⑥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⑦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남북화해공동위

원회 회의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 위원장이 각기 합의 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합의문건은 쌍방 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도 발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요한 합의문건은 쌍방 위원장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목

[9]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 9. 17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체제(제도)인정·존중

제1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제(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제(제도)를 소개하는 자유를 보장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의 권한과 권능을 인정·존중한다.

제4조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지속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개정 또는 폐기 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해결한다.

제2장 내부분제 불간섭

제5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법질서와 당국의 시책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6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대외관계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7조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지속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상대방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비방·중상 중지

제8조 남과 북은 언문·뼈라 및 그 밖의 다른 수단·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특징인에 대한 지명공격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 보도를 비방·중상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지역에서 방송과 시각매개물(게시물)을 비롯한 그밖의 모든 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군중집회와 군중행사에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4장 파괴·전복 행위금지

- 제15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테러, 포섭, 납치, 살상을 비롯한 직접 또는 간접, 폭력 또는 비폭력 수단에 의한 모든 형태의 파괴·전복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제16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선동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제17조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과 상대측 지역 및 해외에서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단체나 조직을 결성 또는 지원·비호하지 아니한다.

제5장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 제18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준수한다.
- 제19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 제20조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6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상호 비방·중상을 하지 않으며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한다.
- 제22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협조조치를 강구한다.
- 제23조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 공관(대표부)이 함께 있는 지역에서 쌍방 공관(대표부)사이에 필요한 협의를 진행한다.

제24조 남과 북은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그들 사이의 화해와 단합이 이룩되도록 노력한다.

제7장 이행기구

제25조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화해공동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따로 작성한다.

제26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안에 법률실무협의회와 비방·중상증지실무협의회를 두며 그밖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에서 별도로 작성한다.

제8장 수정 및 발효

제27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8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 ; 북측이 제기한 「남과 북은 국제기구들에 하나의 명칭,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 국제회의를 비롯한 정치행사들에 전민족을 대표하여 유일대표단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 제3국이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체 행위에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다른 나라들과 맺은 조약과 협정들 가운데서 민족의 단합과 이익에 배치되는 것을 개정 또는 폐기하는 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 해결한다」는 조항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앞으로 계속 토의한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목

(10)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 9. 17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무력불사용

제1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일대를 포함하여 자기측 관할구역밖에 있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에 대하여 총격, 포격, 습격, 파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행위를 금지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일체 무력도발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조 남과 북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라도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구역에 정규무력이나 비정규무력을 침입시키지 않는다.

제3조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남북 사이에 오가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수송 수단들을 공격, 모의공격하거나 그 진로를 방해하는 일체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밖에 남과 북은 북측이 제기한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다.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의 영해·영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와 남측이 제기한 서울지역과 평양지역의 안전보장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한다.

제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계획적이라고 인정되는 무력침공 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상대측에 경고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것이 무력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전대책을 세운다.

남과 북은 쌍방의 오해나 오인,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우발적 무력충돌이나 우발적 침범 가능성을 발견하였을 경우 쌍방이 합의한 신호 규정에 따라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대책을 세운다.

제5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의 무력집단이나 개별적인 인원과 차량, 선박, 항공, 비행기 등이 자연재해나 항로미실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측 관할 구역을 침범하였을 경우 침범측은 상대측에 그 사유와 적대의사가 없음을 즉시 알리고 상대측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상대측은 그를 긴급 확인한 후 그의 대피를 보장하고 빠른 시일안에 돌려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 남과 북사이에 우발적인 침범이나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같은 분쟁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쌍방의 군사당국자는 즉각 자기측 무장집단의 적대행위를 중지시키고 군사직통전화 등을 비롯한 빠른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측 군사당국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군사분야의 모든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쌍방 군사당국자가 합의하는 기구를 통하여 협의해결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이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한다.

제3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 제9조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 제10조 남과 북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 제11조 남과 북의 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관한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제4장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 제12조 남과 북은 우발적 무력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군사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 제13조 군사직통전화의 운영은 쌍방이 합의하는 통신수단으로 문서통신을 하는 방법 또는 전화문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직접 통화할 수 있다.
- 제14조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기술실무적 문제들은 이 합의서가 발효된 후 빠른 시일안에 남북 각기 5명으로 구성되는 통신실무자접촉에서 협의 해결한다.
- 제15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50일 이내에 군사직통전화를 개통한다.

제5장 협의·이행기구

- 제16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합의서 제12조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에 따르는 임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 제17조 남북군사분과위원회는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더 필요하다고 서로 합의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구

체적인 대책을 세운다.

제6장 수정 및 발효

제18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 측 대표 단 수 석 대 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목

〔11〕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 9. 17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경제교류·협력

제1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

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

- ②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 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 ③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규모, 물자교류의 품목별 수량과 거래조건을 비롯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쌍방 교류·협력당사자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한다.
- ④ 남과 북사이의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
- ⑤ 남과 북은 교류·협력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제협력사업과 물자교류를 실시하도록 한다.
- ⑥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 ⑦ 남과 북사이의 물자교류는 상호성과 유무상봉의 원칙에서 실현한다.
- ⑧ 남과 북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
- ⑨ 남과 북은 청산결제는행 지정, 결제통화 선정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 ⑩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
- ⑪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⑫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 ⑬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

제2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 ①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해당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

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호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

- ②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 ① 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
- ②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교류·협력 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데 따라 해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한다.
- ③ 남과 북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왕래와 물자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 ④ 남과 북은 육로, 해로, 항로의 개설과 운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 ⑤ 남북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
-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교통수단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 ⑦ 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 ⑧ 남과 북은 남북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절차, 교통수단 운행방법, 통과지점 선정 등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 ① 남과 북은 빠른 시일안에 판문점을 통하여 우편과 전기통신을 교환, 연결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 ②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서 공적 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③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 ④ 남과 북은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 ⑤ 남과 북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 전달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남과 북은 국제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 ①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 ②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이 합의서 「제1장 경제교류·협력」 부분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제9조 남과 북은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 ①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보도자료와 목록 등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 ②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 ③ 남과 북은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등 여러 분야에서 국토 종단행진,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 기관과 단체, 인원들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 ④ 남과 북은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전시회를 진행한다.

- ⑤ 남과 북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 ① 남과 북은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
- ② 민족구성원들의 왕래는 남북사이에 개설된 육로, 해로, 항로를 편리한 대로 이용하여 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항로도 이용할수 있다.
- ③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방문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하며, 신변 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 ④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상대측의 법과 질서를 위반함이 없이 왕래하고 접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⑤ 남과 북을 왕래하는 인원들은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쌍방이 합의한 범위내에서 물품을 휴대할 수 있다.
-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인원에 대하여 왕래와 방문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 ⑦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왕래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 ⑧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 ①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 ②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 이 합의서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부분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

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제15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지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 ①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범위는 쌍방 적십자단체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②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지들의 자유왕래와 방문을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왕래절차에 따라 실현한다.
- ③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지들의 상봉면회소 설치문제를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협의·해결하도록 한다.
- ④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지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 ⑤ 남과 북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측 지역에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흩어진 가족·친지들 가운데 사망자의 유품처리, 유골이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이미 진행하여 오던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빠른 시일안에 다시 열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십자단체들의 합의를 존중하며 그것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지원·보장한다.

제18조 이 합의서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 부사항의 협의·실천은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한다.

제4장 수정·발효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0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 ; 쌍방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철폐문제를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토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목

2. 주요 주장

〔1〕 노동신문 사설 - 「평화와 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 놓은 획기적 사변」

(1991. 12. 15)

제5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합의서에는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한데 기초하여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방면적인 협력, 교류를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리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데 대한 북남쌍방의 확고한 의지가 표명되어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방도들이 지적되어 있다.

회담에서 북남쌍방은 또한 조선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대표접촉을 가지는데 합의하였다.

이번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북남쌍방이 합의서명한 4장 25조로 된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는 그 내용과 의의로 보아 70년대초에 발표된 7·4공동성명과 맞먹는 것으로서 그것이 채택된 것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 문제해결에 밝은 전망을 열어놓은 획기적 사변으로 된다.

근 20년전 북과 남이 7·4공동성명을 발표하였을 때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성명에 밝혀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서 통일의 서광을 바라보며 이를 열광적으로 환영하였고 기쁨과 환희로 들끓었었다. 이번에 북남고위급회담에서 북남사이에 중요한 합의문제가 채택되었다는 소식은 온 겨레를 다시 금 통일열망으로 들끓게 하고 있다.

북남쌍방이 채택발표한 새로운 합의서는 조선은 하나라고 웨치며 90년대 통일을 확고한 목표로 내세우고 통일운동에 한결같이 떨치나선 온 민족의 지향과 념원에 부합되며 자주와 완화와 평화에로 향한 세계적 추세에도 전적으로 맞는다.

우리는 북과 남이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열렬히 지지환영한다.

이번에 북남고위급회담에서 거래의 넘원과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획기적인 합의문건을 채택한 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조국통일방침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의 자랑찬 과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의 과업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세대에 조국을 통일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단행본, 2페이지)

민족분단의 첫날부터 분렬로 인한 거래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며 우리 민족을 거족적인 통일운동으로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 그를 구현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비롯한 가장 공명정대한 민족공동의 통일 원칙과 방안들을 제시하시여 우리 인민의 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모처럼 마련된 북남 고위급회담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며 회담이 거래의 념원에 부합되는 훌륭한 결실을 맺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세심한 지도밑에 우리측 대표단이 북남고위급회담 첫날부터 제기한 불가침문제, 조선반도비핵지대화 문제를 비롯한 평화발기들과 통일방안들은 그 정당성과 현실성으로 하여 내외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대결과 영구분렬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굽어들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북남사이에 합의문건이 채택될 수 있는 것은 또한 회담에서 기울인 우리측의 시종일관한 성의있는 노력과 폭넓은 아량과 때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우리측은 회담진과정에 내놓은 우리측 제안들이 더없이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이었지만 쌍방회담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리고 하루빨리 합의문건을 채택발표하여 거래에서 기쁨을 주려는 일념으로부터 여러차례 남측의 주장을 고려한 절충안을 내놓았으며 거듭 양보하는 아량을 보였다. 우리측은 특히 문제의 중요성으로 보아 웅당 단일한 합의서로 채택하여야 할 불가침문제를 화해, 협력, 교류문제와 통합하여 하나의 단일한 합의문건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문제토의를

빨리 진전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으며 그밖에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는 문제, 신뢰구축과 군축과의 관계문제, 연락사무소설치문제 등 많은 문제들에서 거듭 양보를 하였다.

우리측의 성실한 입장과 성의있는 노력은 어떻게 하나 문제토의에서 물러서려는 상대측을 회담탁에 비끄러매고 마침내는 합의문서를 탄생시키게 하였다.

회담기간 북과 남, 해외의 우리 민족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 공정한 내외여론은 회담에서 제기한 우리측의 정당한 제안과 성의있는 노력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 주고 남측의 반평화적, 반통일적 행동을 건건히 단죄규탄하였다. 특히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90년대 통일로 향한 거족적인 통일운동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유익한 훌륭한 합의문건을 채택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이번 회담이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제5차 북남고위급회담을 위한 대표접촉에서 남측이 취한 태도로 보나, 대화의 막뒤에서 남조선당국자들이 미국과 함께 벌린 전쟁책동으로 보나 이번 회담에서 합의문건이 채택되리라는 희망은 보이지 않았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측이 성의를 다하고 전체 인민들이 지지성원함으로써 훌륭한 합의문건을 채택발표하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북남공동의 합의문건인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는 조국통일 3대원칙을 더욱 구체화한 실천적의의를 가지는 문건이다.

특히 북남사이에 불가침을 확약한 것은 그 반세기동안이나 지속되어온 정치군사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적화해와 평화와 통일로 나가려는 북과 남의 의지를 선포한 것으로서 민족의 안전을 보장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귀중한 첫걸음으로 된다.

북남사이의 협력, 교류도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뉴대를 두터이하고 통일의 길을 넓혀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는 문제에서 합의타결은 보지 못하였지만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대표접촉을 가지기로 함으로써 북과 남이 다같이 핵전쟁을 반대하고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문제를 우리 민족주체의 힘으로 풀어나갈 데 대한 공동의 인식과 의지를 과시하였다.

실로 이번의 북남고위급회담과 그결과는 그 반세기동안 지속되어온 북과 남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북남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시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뿐 아니라 아세아와 세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큰 기여로 된다.

북남고위급회담에서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역사적인 합의서가 채택된 이 획기적인 사변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해오던 해내외의 우리 민족 모두를 커다란 환희의 격정에 휩싸이게 하고 있다.

문제는 온 겨레에서 기쁨을 준 이 합의서가 꽃을 피우고 열매는 맺게 하는 것이다.

북과 남사이에 합의서와 관련한 실천적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모든 합의사항들이 신의있게, 성실하게 리행되어야 한다.

지난 1970년대초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이 발표된 후 우리가 그것을 리행하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을 때 남측이 공동성명에 도장을 찍은 그 이튿날로 그것을 믿을수 없는 종이장이라고 하면서 공공연히 성명의 기본정신과 합의사항에 배치되는 언행을 일삼았던 전례를 우리 인민은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북남관계에서 있었던 이러한 불만스러운 전철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합의서에 지적되어 있는 제반 사항들을 리행하여 온 겨레의 념원과 기대에 맞게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 문제를 해결해 나갈 확고한 견의에 충만되어 있다.

남조선당국도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데 머물지 말고 평화와 통일로 정책전환을 하고 합의사항들을 성실히 리행하는 길로 나와야 할 것이다.

우리 인민은 북과 남이 제5차 북남고위급회담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따라 민족최대의 숙원인 나라의 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리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다.

[2] 김일성 신년사

(1992. 1. 1)

<전략>

지난해에 북과 남, 해외 동포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었습니다.

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 애국적인민들은 탄압과 박해가 계속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주, 민주, 조국통일의 구호를 높이 들고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굴함없이 투쟁하였으며 해외동포들도 조선민족으로서의 영예와 책임을 자각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범민족적운동으로 확대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였습니다. 나는 7천만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숭고한 애국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바쳐 투쟁하고 있는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때로부터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조국통일 3대원칙은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서 날이 갈수록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더욱 뚜렷이 실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된 것은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길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력사적사건으로 됩니다. 7·4남북공동성명과 더불어 이번에 채택된 북남합의서는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우리 민족의 일치한 요구와 자주, 평화에로 나아가는 현시대의 추세를 옹계 반영한 가장 정당한 조국통일강령입니다. 북남합의서는 조국통일을 갈망하는 온 겨레에서 통일의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고 있으며 세진보적인민들로부터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남은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여 온 민족의 념원과 세계인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북남합의서를 성실히 리행함으로써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북남합의서를 리행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확고히 견지할 것입니다.

제가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것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

민의 투쟁은 다름아닌 외세의 지배를 끝장내고 민족적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그러므로 자주적립장은 조국통일을 위한 그 어떤 문제도 우리 민족의 이익과 요구에 맞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북남합의서가 민족적요구에 맞게 채택될 수 있는 것은 민족자주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이며 그것이 앞으로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데서 얼마나 큰 생활력을 발휘하는가 하는 것도 역시 북과 남이 민족자주의 원칙을 어떻게 견지하는가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조국통일에 이바지하려는 사람들은 외세의존사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민족자주의 립장에 서야하며 민족분렬의 장본인인 외세에 의존하려 할 것이 아니라 민족자주력량에 의거하여야 합니다. 특히 외세의 간섭을 반대하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애국적인민들을 적극지지하고 고무하여야 하며 그들을 탄압하는 것과 같은 일을 더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는 평화통일의 전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조건에서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평화통일의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북과 남은 북남합의서의 정신에 맞게 군축을 실현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력사적으로 국제관계와 련관되어있는 것만큼 북남합의서를 리행하는데서 유관국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유관국들은 북과 남사이에 채택된 합의서의 정신을 존중하여야 하며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동서간의 대립관계가 허물어지고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기운이 전례없이 고조되고 있는 오늘에 와서 령전시대의 낡은 관점을 가지고 힘의 립장에 서서 조선문제를 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더우기 핵사찰문제를 들고나와 우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려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립장입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으며 공정성이 보장되

조건에서는 핵사찰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것을 한두번만 천명하지 않았습
니다. 우리는 한다면 하는 것이고 안한다면 안하는 것이지 결코 빈말을 하지 않았
습니다. 자주성은 인간의 생명이며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에 걸쳐 간난신고를 이겨내면서 투쟁하여온 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을 수호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누가 압력을 가한다고 하
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국제사회에서 그 누구도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모든 나라는 다 평등하며 큰 나라일수록 국제적 정의와 평등의
원칙에 충실하여야 할 더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초대국이라고 하여 자기의
부당한 요구를 합부로 남에게 강요한다면 그것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
에 대한 도전으로서 옹당한 반격에 부닥치게 될 것이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예측
할 수 없는 후과에 대해서는 그들 자신이 역사앞에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인것만큼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 것은 조국통
일의 근본담보로 됩니다.

조선민족은 누구나 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거기에 모든 것을 복
종시키며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
여 단결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 해외에 있는 각계각층 동포들은 조선민족의 한성
원으로서 자기가 처한 환경과 조건에 맞게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
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조국통일위업에 특색있는 기여를 하어야 합
니다.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데서 당국자들이 지니고 있는 책임이 큼니다. 당국자들은
마땅히 민족공동의 지향과 기대에 맞게 민족내부의 장벽을 허물고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며 폭넓은 대화와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노력
하여야 합니다. 당국자들은 이번에 채택된 남북합의서가 빈종이장으로 되지 않고
원만히 리행되도록 온갖 성의와 노력을 다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
지함으로써 민족앞에 지니고 있는 무거운 책임과 의미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올해에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양양된 조국통일 기운을 더욱 고조시켜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조국통일이 결성적 국면을 열어 놓아야 하겠습니까.

복잡한 현 국제정세에 대처하여 대외관계를 옹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력사의 전진운동을 역전시켜보려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에도 불구하고 력사는 의연히 자주의 길을 따라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사실을 놓고 그것이 마치도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승리>이고 <사회주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며 낡은 질서를 비호하는 립장으로부터 나온 꾀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고 있는 것은 인민들의 자주위업을 실현하는 데서 큰 손실로 되지만 그것이 결코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제국주의의 반동성을 부정하는 것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사회주의적원칙을 옹계 구현하지 못하면 좌절을 면치 못하게 되고 자본주의복귀의 길로 나아가면 인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들씌우게 된다는 것은 력사적현실이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며 이자체가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반증하여주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을 없애고 다같이 자주적으로 살려는 사회적인간의 본성을 구현한 리념이며 따라서 력사가 전진하고 사람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높아지는 데 따라 더욱 큰 견인력을 가지고 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돈이 인간을 지배하는 원리에 기초한 자본주의는 날이 갈수록 더욱 더 비인간적인 것으로 전환되어 마침내 자주적으로 각성된 인민들에 의하여 매장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정세의 변화과정을 비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략관적으로 보아야 하며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굳게 가지고 자주의 길을 따라 더욱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전략적목표는 사회주의를 완전히 말살하고 식민주의체계를 부환시켜 제국주의의 세계적 지배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군사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위협하며 경제적으로 매수하고 예속시키며 사상문화적으로 타락시키고 분렬와해시키는 수법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여 세계인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단결하여야 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주의화정책을 짓부시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기초하여 대외관계를 발전시켜나가며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인류공동위업에 적극 이바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성의 원칙과 동지적협조의 정신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단결과련대성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형제적 사회주의 나라 인민들과 어깨걸고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뽀력불가담운동은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운동으로서 의연히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는 뽀력불가담나라들과의 친선과 협조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며 오늘의 변화되는 정세에 대처하여 자주화된 새세계를 건설하려는 세계인민들의 지향에 맞게 뽀력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평화>의 가면을 쓰고 힘의 정책에 계속 매달리고 있는 조건에서 평화옹호운동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계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교란 책동을 지지파탄시키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를 폐기하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자각하고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일심단결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은 필승불패입니다. 모두다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3) 노태우 대통령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특별담화

(1992. 2. 19)

친애하는 7천만 내외 동포 여러분,

오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정식으로 발효됐습니다.

반세기동안 서로가 대결과 반목속에 살아야 했던 남과 북은 이제 불행했던 분단의 역사를 청산하고 공동번영과 통일의 길로 함께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이념과 체제의 벽을 넘어 남북이 하나의 민족공동체 속에서 함께 발전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우리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자주적인 노력으로 이처럼 소중한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온 겨레가 함께 나누는 보람입니다.

이제부터 남과 북은 함께 합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약속은 그 내용을 충실히 실천할 때 비로소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실천이 뒤따르지 않을 때 그 약속은 오히려 새로운 불화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과 북은 신뢰를 바탕으로 화해와 불가침, 교류와 협력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며, 나는 이것이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통일에 이르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 발효된 합의와 선언내용을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여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 국내외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나는 북한의 최고책임자도 「남북합의서」와 「비핵선언」의 내용을 성실하게 실천하겠다는 뜻을 국내외에 선언하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혹을 완전히 씻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대한 모든 의무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은 거래의 안전과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과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와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어려워짐은 물론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북한은 이 위험한 길림들을 하루빨리 제거함으로써 「남북합의서」에 따른 화해와 협력의 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7천만 동포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의 날입니다. 우리 민족은 모두 이 희망이 현실로 가지화될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힘을 합쳐 하루라도 빨리 통일을 달성함으로써 대망의 21세기에는 통일된 나라로 당당히 국제무대에 나서야 합니다.

그것은 7천만 우리 겨레의 간절한 소망이며 우리 후손들의 운명까지 좌우하는

역사적인 과업입니다 우리 세대는 역사와 민족앞에 책임을 지고 이 중대한 과업을 반드시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래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힘있는 나라, 전쟁의 두려움이 없고, 민주와 번영이 넘치는 통일된 나라를 우리 손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거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뜻깊은 날을 맞아 한민족 영광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 모두의 결의를 더욱 굳게 해야 하겠습니다.

(4) 북한 정무원 총리,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관련 남측의 정치모략극 시인·사죄 촉구 대남 편지

(1992. 10. 13)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힌 승 중 귀하

북남쌍방은 평양에서 있는 제8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분야의 부속합의서들을 채택발효시키고 각 공동위원회들이 가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북남합의서의 실질적인 리행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쌍방이 합의한대로 오는 11월부터 북남공동위원회들이 가동되고 성과적으로 운영되면 북남사이에는 오해와 불신, 대걸과 긴장대신에 화해와 완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 국면이 열리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지금 온 거래는 비록 곡절은 있지만 북남관계가 개선되어가고 있는데 대하여 환영하면서 좋은 분위기속에서 쌍방합의사항들이 어김없이 리행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애호인민들도 조선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사태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표시하면서 조선반도의 정세가 계속 완화방향으로 나가게 되기를 한결같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귀측이 대내외적으로 벌리고 있는 심상치 않은 행위들은 세상사람

들에게 금후 북남합의서 리행과 북남관계개선의 전도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귀측은 얼마전에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이라는 또 하나의 반북모략사건을 조작발표한데 이어 미국과 함께 《년례안보협의회》라는 것을 벌려놓고 대화일방인 우리를 걸고 들면서 《팀스피리트》 합동 군사연습을 재개하기로 하였을 뿐 아니라 남조선주둔 미국의 2단계 감축을 중지하고 남조선에 미국의 《신속전개억제전력》까지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더말할 필요도 없이 좋게 진전되고 있는 북남대화를 가로막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대결시대의 원점으로 되돌려 세우려는 극히 위험한 행위로서 화해와 완화,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거래와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북과 남의 2년여에 걸친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한 역사적인 합의문건들의 리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때에 귀측이 반대화적이고 반통일적이며 사대매국적인 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한데 대하여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측이 이미 명백히 한바와 같이 귀측이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는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이라는 것은 오는 12월의 《대통령선거》에 대비할 목적으로 《안전기획부》가 꾸며낸 상투적인 정치모략극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귀측 내부사정에 조금이라도 식견을 가진 사람들은 그 무슨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이라는 것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자당》이 각계각층 인민들로부터 배격당하고 있고 그 내부가 사분오열되어가는 딱한 처지에서 《충격요법》을 써서라도 민심을 돌려세우고 《민자당정권》을 또 만들어내기 위해 고안해낸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선거》를 하면 했지 우리를 걸고 그러한 불순한 정치모략극을 날조해내는 방법으로 이미 기울어진 대세를 역전시켜 보려는 것은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우기 나는 귀측이 북남공동위원회들의 운영을 앞두고 그 어느때보다 완화와 평화보장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 시기에 미국에까지 찾아가서 군사적모의를 벌리면서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기로 한 행위에 대하여 극히 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는 동적인 우리와 마주앉아 불가침에 관한 부속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오늘은 돌아앉아 외세와 야합하면서 동족을 공격하는 전쟁연습을 하기로 약속한다는 것은 누가보아도 리성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쟁연습과 북남대화는 량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시기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될때마다 북남대화들이 일시에 중단되거나 파탄되었던 사실을 귀측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북남기본합의서가 발효되기 이전에 벌써 중단하였던 군사연습을 부속합의서까지 채택발효되어 본격적인 실천단계에 들어선 오늘에와서 굳이 재개하겠다고 하는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재개가 쌍방이 민족앞에 그 리행을 엄숙히 선포한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한 완전한 유린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북과 남은 이미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에서 《정치적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조선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위험을 제거》하며 일체 핵무기를 《접수, 사용》하지 않기로 화약하였습니다.

북과 남은 또한 화해분야의 부속합의서 《제5장 정진상태의 평화상태에로의 전환》과 불가침분야의 부속합의서 《제1장 무력불사용》과 《제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방지》에 관한 합의사항들에서 반평화적이고 대결지향적인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명백히 기정사실화하였던 것입니다.

귀측의 이전 총리가 올해 2월중순에 진행된 제6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하여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동족을 겨누었던 무기들은 하나씩 받을 가는 쟁기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한것도 바로 그러한 취지에서한 발언이었다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귀측은 민족앞에 다진 약속도 자신이 어제 한 말도 다 뒤집어 엮고 외세와 함께 범죄적인 핵전쟁연습을 재개하려 하고 있으니 도대체 귀측에 민족적량심

이나 신의가 있는가고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측은 이번에 우리의 있지도 않는 《핵개발》 문제를 군사연습을 재개하는 구실로 삼았는데 그것 역시 누구의 공감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측이 떠드는 이른바 《핵개발》 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애초부터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이 자기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꾸며낸 허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핵정책이 순수 평화지건설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세차례에 걸친 국제원자력기구의 비정기사찰을 통하여 명백히 확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북남핵사찰이 아직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것도 그 책임이 전적으로 남조선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 핵기지에 대한 전면적인 사찰을 회피하고 있는 귀측에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이제와서 《핵문제》를 구실로 《팁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려는 것은 칠두칠미 북남대화에 대한 파괴행위이고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한 리행포기행위이며 우리에게 대한 전면대결선언이라고 밖에 우리는 달리 인정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귀측이 동족과 마주앉아 훌륭한 합의문건들을 만들어놓고도 그것을 리행할 생각을 하지 않고 외세를 찾아다니며 그들과 반민족적인 전쟁연습을 모의하여 대화마지 파탄시키려 하는데 대하여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동족과 한 약속보다 외세와의 야합을 더 귀중히 여기고 민족의 리익보다 외세의 리해관계를 더 앞세운다면 귀측은 사실상 자주적인 대화의 상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귀측은 그 어떤 구실로써도 자기의 반대화, 반평화, 반통일 행위를 합리화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북남관계의 진전과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리행여부는 전적으로 귀측의 앞으로의 태도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귀측이 이른바 《남한조선로동당사건》이라는 것이 《선거전략》을 위해 꾸며낸 모략극이라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사죄하며 우리를 반대하는 《팁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기로 하고 남조선에 있는 미군의 감축을 백지화하기로

한 부당한 결정을 무조건 철회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귀측이 내외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대로 리인모 로인을 즉시 송환하고 판문점리산가족면회소를 설치하여 북남관계를 진실로 개선하는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만일 귀측이 우리의 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 대결과 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 형 목

(5) 현승종 국무총리,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에 대한 북측의 시인·사과 및 재발방지조치 촉구 대북 서한

(1992. 10. 21)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목 귀하

나는 먼저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로서 남북고위급회담에 새롭게 참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정중한 인사를 보냅니다.

나도 귀하의 10월 13일자 편지를 받아 보고 놀라움과 함께 남북관계의 전도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귀하는 이 편지에서 최근 온 거래를 경악하게 한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을 비롯하여 팀스피리트훈련문제, 이인모 송환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지극히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특히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에 대해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채 우리측에 의하여 조작·발표된 「반북 모략사건」이라고 강변하는 등 책임회피에 급급하였습니다.

이미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반세기에 걸친 남북분단의 역사는 귀측에 의하여 자행된 수 없이 많은 폭력의 사례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해방이후 거듭 반복되었던 무장공비의 남파와 1950년의 6·25남침은 말할 것 없이 휴전이후에도 1968년 1월 21일의 청와대 기습사건, 1974년 8·15 광복절 경축식장에서의 대통령 저격사건, 1983년 10월 9일 아웅산 사건 그리고 1987년 11월 29일이 대한항공 여객기 공중폭파 사건과 계속되는 땅굴도발사건등이 그 대표적 사례들인 것입니다.

귀측은 이러한 엄청난 사건들이 지질러 질 때마다 귀측의 소행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없이 우리측에 의한 「자작극」이라는 억지주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번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에 대해서도 귀측은 각종 외곽단체를 동원하여 「허위난조된 모략」이니, 「자연 자작극」이니 선동하면서 적반하장격으로 우리 내부의 법질서를 간섭하는 상투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귀측에 의하여 지질러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의 실체성은 검거되어 수사중에 있는 범인들과 압수된 무기·무전기·독약앰플·난수표를 비롯한 1,500여점의 공작장비들에 의하여 이미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우리측에 의한 「자작극」이라는 귀하의 주장은 명백한 진실을 호도해 보려는 무모한 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귀측은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는 「자작극」이란 통용되지도 않고 통용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측의 「자작극」 주장의 부당성을 만천하에 명백히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 정부로서는 만약 귀측이 회망한다면 유엔산하의 관련기관이나 또는 「국제형사경찰기구」로 하여금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결과를 검증하도록 허용할 용의도 있음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우리는 특히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이후는 물론,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이에 따른 분야별 「부속합의서」들이 채택·발효됨으로써 남북관계가 기본합의서의 실천·이행단계로 진입하려 하고 있는지금에 이르기까지도 귀측의 불법적인 파괴·전복활동이 계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엄청난

충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북사이에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해 7천만 온겨레가 지혜를 모으고 있는 뒷전에서 우리 사회의 혼란을 조성하고 체제를 진복시킬 목적을 파괴·공작행위를 벌여온 귀측의 행위는 온겨레의 지탄을 받아야 할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이 남북기본합의서 제4조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행위 금지」 규정과, 화해분야 부속합의서 제15조 「테러, 포섭, 납치, 살상 등 모든 형태의 파괴와 전복행위 금지」와 제17조 「자기측 지역, 상대측 지역, 해외에서의 테러단체나 조직의 결성·지원·비호 금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을 엄중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귀측이 진정으로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준수해 나갈 의지가 있다면 귀측은이미 이번 사건에 대해 솔직히 사인·사과하고 여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유린한 이번 사건에 대해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귀측의 태도를 보면서 나는 남북쌍방이 그동안 마련해 놓은 각종 합의서들이 과연 성실히 이행·준수될 것인가 하는대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자는 우리측 제의를 귀측이 거부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귀측의 사인·사과와 남독할 만한 재발방지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기회와 경로를 통해 귀측에 대해 계속 그 책임을 엄중히 추궁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귀하는 또한 이번 편지에서 팀스피리트 훈련문제와 주한미군 감축문제 그리고 이인모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귀하도 이미 아다시피 팀스피리트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하나의 통상적인 방어 훈련입니다.

우리는 이 훈련이 오직 방어용임을 보여 주기 위하여 귀측 군장교들이 직접 참관할 것을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쌍방의 군사훈련 문제는 기본합의서 제12조에 따라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제와 통보」 문제를 협의·해결하도록 되어 있는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앞으로 다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측이 최단시일내에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안전조치협정을 서명·비준하고 국제핵사찰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데 따라 92년에 한하여 팀스피리트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시말해 팀스피리트훈련의 실시를 귀측의 핵문제 해결과 연동시키기로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팀스피리트훈련의 재개 여부는 귀측에 의한 핵무기개발 의혹이 해소되는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북간에는 아직 핵문제가 해결이 안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런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지 않는 한 팀스피리트훈련은 93년부터 재개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 앞서 남북간에 사찰규정에 합의가 이루어져 상호사찰이 실시된다면 팀스피리트훈련을 항구적으로 중지하는 문제가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측에서 이같은 핵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전쟁방지를 위한 방어용 군사훈련은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주한미군 감축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양국은 최근 귀측이 남북 상호 핵사찰을 받아들여 핵문제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이미 계획된 주한미군 2단계 감축조치의 이행을 유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 감축조치가 계획대로 실천에 옮겨질 것이냐의 여부 역시 전적으로 귀측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인모 문제는 지난 7월 7일 우리측이 귀하에게 보낸 서한에서 해결 방법을 분명히 밝힌 바 있으며, 이 문제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귀측이 지난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아무런 조건없이 실시하기로 합의했던 이산가족노부모방문단 교환을 새로이 날짜를 정하여 하루속히 실시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 순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 두고

자 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최근 남북관계에 짙은 암영을 드리우고 있는 비방·중상문제에 관하여 심심한 우려를 표명하러 합니다.

귀측은 화해분야 부속합의서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측 특징인과 정부에 대해 악의에 찬 비방·중상을 무제한 자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귀하가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장의 입장에서 직접 귀측 보도기관의 우리측에 대한 비방·중상실태를 조속히 파악하여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가 정면으로 난폭하게 파괴·유린되고 있는 사태를 확실하게 시정하는 데 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불신과 갈등과 대결로 얼룩진 분단 반세기를 청산하고,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고 통일된 민주복지국가의 건설에 매진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날의 남북관계 현실에서 대남적화 노선은 허구이며, 우리 체제에 대한 무모한 도발과 파괴공작은 결코 실현될 수 없는 망상일 뿐입니다.

귀측은 이번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을 뼈를 깎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 대남적화 노선을 즉각 포기하고, 우리와 함께 진정한 동반자 관계에 서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분단극복의 역사창조에 진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나는 귀측이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의 시인·사과 및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핵문제와 이산가족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한편 일체의 비방·중상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나는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하여 모든 남북간의 합의사항이 성실하게 이행·준수되고 11월부터 가동되는 공동위원회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귀하의 긍정적인 호응을 바랍니다.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현 승 종

[6] 북한 정무원 총리, 군사연습 중지 요구 대남 전통문

(1992. 10. 31)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현 승 중 귀하

나는 귀측이 북남대화 앞에 또다시 새로운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이 긴급통지문을 보냅니다.

귀하도 아는 바와 같이 제8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쌍방은 오는 11월 5일부터 판문점에서 부속합의서들을 이행하기 위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일주일 간격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온 거래와 세계 평화에 호인민들은 북남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들을 실천에 옮기게 될 북남공동위원회들이 순조롭게 진행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북남관계가 좋게 발전하여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측은 내외인민들의 이러한 기대와 염원을 외면하고 북남공동위원회들을 비롯한 전반적인 북남대화가 더욱 활기를 띠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대신 오히려 대화 부정적인 행위들을 거듭 자행해 나르고 있습니다.

얼마전부터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을 꾸며내어 남북대결을 극도로 고취해 오던 귀측은 10월초에 와서 미국과 함께 이미 중단했던 「팁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북남대화의 진도에 매우 위태로운 사태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지난 10월 14일 귀하에게 보낸 편지에서 「팁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재개가 초래할 후과에 대해 엄중히 지적하면서 군사연습재개 결정을 무조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 정부·정당·사회단체들도 지난 10월 27일 평양에서 연합회의를 소집하고 우리측의 거듭되는 충고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끝내 「팁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는 길로 나간다면 북남당국간의 모든 대화와 접촉들이 동결되

지 않을 수 없다는데 대해 명백히 밝혔습니다.

만일 귀측이 북남대화를 아끼고 귀중히 여기며 북남관계를 개선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측의 이러한 거듭되는 충고를 받아들이고 자기의 부당한 결정을 철회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측은 지금까지 어떠한 긍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도리어 북남대화의 앞길에 보다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는 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며칠전 귀측은 미국과 함께 오는 11월 2일부터 7일까지 「화랑」 훈련을, 11월 3일부터 9일까지는 「한미연합-92독수리」 군사훈련을 각각 벌일 것이라고 공포하였습니다.

귀측의 발표에 의하면 「한미연합-92독수리」 훈련에는 남조선군 75만명과 남조선에 있는 미군 3만 7천여명 그리고 해외로부터 1천 5백여명의 미군병력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귀측이 북남화해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는 시각과 때를 같이하여 군사분계선 일대를 포함한 남조선 전역에서 이러한 대규모 군사연습을 벌이려 하는데 대하여 우리는 놀라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귀측의 이러한 행동은 대화상대방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이며 북남대화에 대한 노골적인 파괴행위라고 밖에 달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귀측이 상대방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북남합의서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북남공동위원회들이 당장 열리게 되는 시점에 와서 또다시새로운 대규모 군사연습 소동을 벌이려 하고 있는데 대하여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귀측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에 의해 북남공동위원회들이 열리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귀측은 응당 다가오는 공동위원회 회의들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적인 전쟁연습계획을 무조건 빨리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귀측이 다음달 초부터 연이어 벌여기로 한 대규모 군사연습계획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늦어도 11월 2일까지 우리측에 알려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북남화해공동위원회를 비롯한 여러분야의 공동위원회 회의들이 예정대로

진행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진적으로 귀측의 태도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귀하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 형 목

[7] 현승중 국무총리, 4개 공동위원회 1차회의 개최 촉구 대북 전통문

(1992. 11. 2)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 형 목 귀하

나는 귀하의 10월 31일자 진화통지문에 대해 먼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하는 지난 10월 13일자 편지에서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이 우리측의 자작극이라고 강변하고 「팁스퍼리트」 훈련 문제를 거론하면서 「남북대화의 진도에 위태로운 사태」라고 운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나는 10월 21일 귀하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귀측이 시비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귀측의 부당한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남북간에 합의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준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에 대해서는 귀측이 시인·사과하고 여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팁스퍼리트」 군사훈련의 실시여부는 귀측의 핵무기 개발의혹의 해소여부에 달려 있으며, 귀측이 비핵화공동선언에서 합의한대로 상호사찰을 실시하여 핵무기 개발 의혹을 해소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군사훈련을 계속 할 수 밖에 없다

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이에 대한 긍정적 대답을 보내오기는 커녕 오히려 우리측의 연례적인 독수리훈련과 화랑훈련까지 트집잡아 이를 취소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해 왔습니다.

더구나 귀측은 쌍방이 민족앞에 엄숙히 약속한 각 분야별 공동위원회 회의의 개최 여부를 우리측의 군사훈련과 부당하게 연계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귀측이 시비하고 있는 군사훈련들도 말한다면 모든 나라의 군대가 하고 있는 훈련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실시되어온 후방지역 방어훈련입니다.

또한 과거 이러한 군사훈련 기간중에도 남북고위급회담을 비롯한 각종 회담이 진행되어 왔던 만큼 귀측이 새삼스럽게 이를 회담과 연계시키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7천만 온거레는 부속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실천사업들이 구체화됨으로써 남북관계가 하루속히 화해협력의 실천단계로 진입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측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또 이를 회담과 연계시키는 대결시대의 의식과 행태에서 벗어나 대화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준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귀측이 사리에 맞지 않는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쌍방이 합의한 대로 공동위원회 회의들이 예정된 일자에 무조건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현 승 중

(8) 남북화해, 군사, 경제, 사회문화공동위 북측위원장들의 연합성명

(1992. 11. 3)

지금 남조선전역에서는 대화상대방인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화랑》 훈련과 《92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전투준비상태를 검열》하고 《협동작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구실 밑에 11월 3일부터 9일까지 벌리는 《92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만도 남조선강점미군 3만7,000여명과 《남조선군》 75만여명 그리고 해외로부터 투입된 미군 1,50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남조선전역을 포함하여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부근에서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 연습들은 우리를 위협하고 불의에 복침전쟁을 도발할 것을 노린 극히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다.

우리는 북남공동위원회 첫 회의들을 앞에 두고 있는 때에 더우기 판문점에서 북남화해공동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는 바로 그 시각에 맞추어 남조선당국자들이 미군과 함께 우리측을 공격하기 위한 무모한 전쟁연습을 벌여놓고 있는 데 대하여 매우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알려진바와 같이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단장인 우리측 총리가 이미 남조선당국자들이 미국과 함께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을 때 남측 《총리》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 군사연습 재개조치를 무조건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북남공동위원회사업을 맡고 있는 우리 자신들도 담화를 발표하여 남조선당국이 사태를 똑바로 보고 북남대화를 파탄의 위기에 몰아넣게 될 엄중한 행위들을 무조건 그만둘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우리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지난 10월 27일 긴급연합회의를 소집하고 북남합의서를 성실히 리행해 나가려는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남측이 우리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길로 나간다면 부득불 북남당국선에서 진행되는 모든 대화와 접촉들을 동결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의 이러한 충고를 받아들이고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재개조치를 철회할 대신 한걸음 더 나아가서 《화랑》과 《92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것으로 대답해 나섰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31일 우리측 총리는 남측 《총리》에게 대규모적인 군사연습들이 당면한 북남공동위원회회의와 북남관계전반에 미치게 될 후과에 대해

여 우려를 표시하면서 11월 2일까지 군사연습계획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우리측에 알려줄 것을 요구하는 긴급전화통지문을 보내었다.

우리측의 이러한 조치는 어떻게 하나 11월 5일부터 1주일 간격으로 열리게 될 북남공동위원회 회의들이 류산되는 것을 막고 우리 나라의 정세가 대결의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념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인내성 있는 노력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올 대신 11월 2일 우리측에 보내온 전화통지문에서 우리를 부당하게 끌고 들었는가 하면 《방어훈련》이니 《년례훈련》이니 하는 구실밑에 대규모전쟁연습을 계획대로 강행할 것이라고 도전하여 나섰다.

남측의 이러한 행동은 저들의 반대화, 반평화적인 범죄행위를 가리우고 내외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구차스러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공격과 방어를 구분할 수 없는 건지에서 보나 남조선에 있는 미군과 피로군, 해외에 있는 미군까지 끌어들이고 각종 현대적인 무기와 장비들이 다 동원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보면 이번 《독수리》 군사훈련이나 《화랑》 군사훈련이 결코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며, 우리 나라의 정세를 고의적으로 격화시키며 임의의 시각에 우리측을 치기 위한 공격연습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그들의 말대로 이 군사훈련이 진짜 《년례훈련》이라고 한다면 북남사이에 서로 무력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침략하지 않을데 대한 불가침을 화약함으로써 정세가 근본적으로 변화된 오늘에 와서는 그것을 응당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옳을 것이다. 더욱기 화해와 불가침, 협력과 교류를 내용으로 하는 북남합의서가 발효되기 전에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취소했던 미국과 남조선당국으로서 이제 《독수리》나 《화랑》과 같은 대규모군사연습을 벌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북남공동위원회 회의들에 대한 파괴행위이고 북남합의문건들의 리행포기선언이며 우리에게 대한 전면대결선언외의 다른 것으로 될 수 없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북남공동위원회 첫 회의들이 예정대로 개최될 수 없게 하는 이 대화부정적인 배신행위를 온 민족의 이름으로 준련히 규탄한다.

지금 7천만 온 겨레는 북과 남의 책임있는 당국자들이 나라와 민족 앞에 다진 서약을 그대로 실천에 옮김으로써 이 땅에서 반목과 대결의 시대가 영원히 사라

지고 민족화해의 새로운 터전과 불가침의 믿음직한 담보가 마련되어 오랫동안 끊어졌던 민족의 혈맥이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있게 되기를 절실히 고대하고 있다. 민족사에 진정 화해와 단합, 완화와 평화의 전기가 마련되고 통일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래의 이 뜨거운 념원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해야 할 책임이 바로 북남쌍방 공동위원회들에 지워져 있다.

그런데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이 서로 화해하고 침략하지 않으며 협력하고 교류를 실현하여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 국면을 마련하여야 할 중대한 시기에 민족의 기대와 념원을 외면하고 대화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모한 대규모군사연습을 강행하여나서는 것은 그들 자신이 화해도 바라지 않고 불가침도 하지 않으며 협력도 원하지 않고 교류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남측이 화해와 불가침을 바라지 않으니 구태여 화해공동위원회나 군사공동위원회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협력도 교류도 바라지 않으니 그를 위한 공동위원회들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남대화는 신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신의를 지버리고 대화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제 북남합의서들을 이행하기 위한 상방공동위원회 제1차회의들은 사실상 휴산되고 무의미하게 되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측은 오는 11월 5일부터 관문점에서 1주일간격으로 진행하게 되어있는 북남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들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명백히 천명한다.

전쟁연습과 대화는 결코 량립될 수 없다.

우리는 대화가 아무리 소중하여도 현시점에서 외세와 함께 대화상대방을 반대하여 총포탄을 쏘아대는 도발자들과 마주앉아 민족의 중대사를 론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북남공동위원회 제1차회의들이 예정대로 열리지 못하게 만든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 민족앞에 응당 자기들의 반대화, 반평화, 반통일 행위에 대하여 사죄하여야 한다.

이제 북남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들이 언제 열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자들의 태도여하에 달려 있다.

북남공동위원회들을 하루 속히 개최하고 이미 발효된 부속합의서들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려는 우리의 립장은 확고하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범죄적인 《화랑》과 《독수리》 군사연습들을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특히 오는 11월말까지 어떤 형태로든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고 그것을 내외에 공포하여야 한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북남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들이 늦어도 12월에는 열릴 수 있도록 반드시 책임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우리측은 온 거래와 함께 남조선당국자들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다.

(9)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변인, T/S 훈련 재개결정 철회요구 대남 전통문

(1992. 12. 4)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대변인 공 로 명 귀하

나는 다가오는 제9차 북남고위급회담을 앞두고 본회담이 제날자에 개최되며 아울러 각 공동위원회들도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해당한 대책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귀하에게 이 전화통지문을 보냅니다.

귀하도 아는 바와 같이 북과 남은 지난 9일 평양에서 있는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화해·군사·경제·사회문화 등 각 공동위원회들을 11월초부터 가동시킨 제9차 북남고위급회담을 오는 12월 21일에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것은 쌍방의 합의로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우리 북남 쌍방은 옹당 합의사항이 철저히 그리고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하는데 다같이 최대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부터 우리측은 수차에 걸쳐 대화와 평화, 무엇보다도 북남합의 정신과는 양립될 수 없는 대규모적인 「화랑」과 「'92독수리」 군사훈련을 중지하며 어떤 형태로든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재개합의를 11월말까지 철회하고 그것을 내외

에 공포함으로써 12월에는 모든 공동위원회들이 가동될 수 있도록 책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귀측에 거듭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측이 기울인 모든 노력은 어떻게 하나 귀측에 의하여 회담앞에 가로놓인 난관과 장애를 제거하고 거래의 기대에 맞게 올해안으로 북남합의서의 이행기구들을 가동시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넓은 길을 터놓으며 비핵화공동선언을 실천에 옮겨 평화와 안전의 믿음직한 담보를 이룩하려는 진지하고도 성의 있는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귀측이 대화 일방으로서 북남대화가 중단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할 의사가 있다면 우리의 이 정당한 요구와 성의있는 노력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서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귀측은 우리측의 거듭되는 경고와 내외의 한결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공동위원회들을 개최하기로 한 시기에 맞추어 미국과 함께 「화랑」과 「92독수리」 군사훈련을 강행하였으며 또다시 미국과 함께 핵전쟁연습인 「팁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할 것이라고 공언해 나셨습니다.

결국 귀측에 의하여 각 공동위원회들의 첫 회의는 파탄되었으며 전반 대화는 중단상태에 들어가고 북남관계는 또다시 대결의 원점으로 되돌아 가는 심히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귀측은 대화 일방으로서 자행한 이 반대화, 반평화적인 범죄행위에 대하여 민족과 역사앞에 응당한 책임을 느끼고 사죄하여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귀측은 구태의연하게 외세에 추종하여 「팁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는 방법으로 대결을 격화시키고 북과 남 사이의 대화의 문을 더 굳게 닫아매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귀측이 지금 생트집을 부리고 있는 우리의 그 무슨 「핵개발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있지도 않은 거짓이라는 것이 이미 완전히 드러났으며 귀측이 그것을 남조선의 미군을 붙잡아 두고 그의 핵무기와 핵기지에 대한 전면사찰을 회피하며 「팁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재개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패로 써먹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뚜렷이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귀측이 민족내부 문제를 쌍방의 노력으로 풀어나갈 생각이 있고 모처럼 발효시

킨 모든 북남합의서들을 이행할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제라도 외세와 야합하여 그 어떤 불순한 목적을 달성해 보려는 반민족적이고 반대화적인 행위를 견어치우고 「팀스피리트」 핵전쟁 연습재개 합의를 철회하는 결단성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협에 처한 북남대화는 구원되고 그 사이에 잃어버린 소중한 시간도 봉창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연내에 북남합의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모든 공동위원회들도 가동되고 제9차 북남고위급회담도 좋은 분위기속에서 열리어 온겨레에게 화해와 완화, 협력의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염원으로부터 귀측이 한번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제9차 북남고위급회담이 제날짜에 열릴 수 있도록 첫 북남합의서가 채택된지 한달이 되어 있는 뜻깊은 시기인 오는 12월 15일까지 귀측에서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재개결정을 철회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대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대변인 안 병 수

〔10〕 남북고위급회담 공노명 대변인,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촉구 대북 전통문
(1992. 12. 10)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대변인 안 병 수 귀하

나는 귀하가 보낸 12월 4일자 전화통지문을 받았습니다.

먼저 나는 귀측이 팀스피리트 훈련 문제를 남북쌍방이 합의한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의 개최와 연계시키면서 이의 철회를 요구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측은 남북간의 합의사항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이행·준수 되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그것은 합의사항의 이행을 통한 상호 신뢰구축이야말로 반세기에 걸쳐 누적되어 온 불신과 대립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가장 초보적이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측이 우리의 연례적인 후방지역 방어훈련을 트집잡아 11월부터 연립 예정이었던 분야별 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행위는 온 겨레의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측은 오는 12월 21일로 예정된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합의된 일정대로 아무런 조건없이 열려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나는 귀측이 팀스피리트 훈련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 마저 무산시키려는 태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팀스피리트 훈련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우리측이 누누이 강조해 온 바와 같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한반도 전쟁재발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76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방어적 성격의 훈련입니다.

우리측이 동 훈련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보장하기 위해 귀측은 물론 중립국 감독위원회 국가들의 직접 참관을 초청해 오고 있음은 귀측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측이 92년에 한하여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지를 결정한 것은 귀측이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약속하는 한편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귀측이 아직도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서 합의한 핵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태세 유지에 긴요한 팀스피리트 훈련을 계속 중단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측은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 전에 남북상호사찰규정을 채택하고 효과적인 상호사찰을 실시하게 된다면 '93년도 팀스피리트 훈련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명백히 한 바 있습니다.

결국 '93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의 실시여부는 전적으로 귀측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측은 쌍방이 제 9차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이미 합의한 12월 21일 이전에 남북상호사찰 규정이 채택되고 상호사찰이 실시되는 길이 열리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귀측이 남북상호사찰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와 같은 부당한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핵문제 해결에 의미있는 진전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측은 '93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을 실시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귀측은 지금이라도 우리측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철회하고 예정된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에 무조건 응해 나와야만 할 것입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1992년 12월 10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대변인 공 로 명

[11] 남북화해, 군사, 경제, 사회문화공동위 북측위원장들 공동명의 대남 전통문
(1992. 12. 12)

귀측도 아는바와 같이 지난 4일 북남 고위급회담 우리측 대표단 대변인은 귀측에 모든 공동위원회들을 빨리 가동시키며 아울러 제9차 북남 고위급회담이 예정된 날자에 열릴 수 있게 첫 북남 합의서가 채택된지 한달이 되는 뜻깊은 시기인 오는 12월 15일까지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재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낸바 있다.

이것은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 공동위원회들을 12월중에는 어떻게 하나 가동시키며 제9차 북남 고위급회담을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북남 관계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 놓고 새해를 맞는 온거레에 있는 기쁨을 주려는 일념에서 출발한 매우 정당한 조치이다. 우리측의 이 조치는 우리나라에서 북남 관계가 계속 진전되어 화해와 협력의 새시대가 하루빨리 도래하기를 바

라는 내외 인민들의 염원과 지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귀측으로서는 우리의 이 정당한 요구와 거래의 염원에 맞게 응당 공동위원회들이 가동되고 제9차 북남고위급회담도 예정된 날짜에 열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귀측은 12월 10일부 전화통지문에서 자기의 부당한 행위를 합리화하고 종래의 그릇된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틱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는 도전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것은 귀측이 북남공동위원회들의 가동은 물론 쌍방 당국사이의 모든 대화를 더 이상 바라지 않으며 북남관계를 대결의 원점으로 돌려 세우려는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놓은 것이다.

대규모 군사훈련인 화랑과 '92독수리를 강행하여 공동위원회들의 칠회의를 고의적으로 무산시킨 귀측이 이번에 우리의 아량과 성의를 외면하고 끝내 대화부정적인 입장을 고집해 나선 것은 쌍방 합의사항에 대한 난폭한 유린으로 거래의 염원에 대한 배신으로 된다.

귀측은 지금 도발적인 틱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이 연례적인 방어훈련이기 때문에 대화와 관계가 없다고 하며 핵사찰이 실현되지 못한 상황에서 군사연습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구차스러운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미국 본토와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부터 투입되는 수만명의 미군을 포함하여 20여만의 대병력과 최신예공격작전 장비 심지어는 핵무기까지 동원하여 3개월동안이나 하늘과 땅 마당에서 벌이는 틱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이 결코 방어훈련으로 될 수 없으며 그것이 바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북침 전쟁연습이며 핵시험전쟁이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이 기회에 미국과 귀측의 고위 당국자들 자신이 이미 오래전에 틱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이 우리를 일격에 공격하기 위한 핵전쟁 연습이라는 것을 공언한 바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 두는 바이다.

귀측이 틱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과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문제를 연결시키면서 제9차 북남 고위급회담 전에 핵사찰이 진행되지 않으면 군사연습을 재개할 수밖에

에 없다고 한 것 역시 생억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31일 북남 고위급 회담 쌍방대표들이 합의하고 서명한 문건에는 북측은 핵담보 협정에 서명하고 국제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받으며 남측은 팀스피리트 합동 군사연습을 중지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사실을 왜곡하여 합의 문건에도 없는 남북 핵사찰 문제를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재개 구실로 들고 나오는 것은 누구도 납득시킬 수 없는 궤변으로 밖에 달리는 인정할 수 없다.

사실상 귀측은 팀스피리트 합동 군사연습을 감행함으로써 북남 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고 미국의 핵무기와 핵기지에 대한 사찰을 회피하며 지금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 핵무기 개발을 어떻게 하나 은폐해 보려는 기도를 스스로 드러내 놓고 있을 뿐이다.

다음에 귀측이 제9차 북남고위급 회담 개최 날짜를 불과 열흘 남겨 놓고 있는 오늘에 와서 남북상호핵사찰이 진행되지 않으면 팀스피리트 합동 군사연습을 재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현실성도 없는 공담이며 그것조차 자기측의 부당한 사찰규정을 가지고 상호 사찰을 해야 한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핵사찰 문제를 무한정 끌고 고위급 회담 자체를 핵사찰 문제에 걸어 유산시키려는 계획적인 술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외세와 함께 대화와 완화와 평화에 역행하여 침략적인 팀스피리트 합동군사 연습을 강행하려는 귀측의 범죄행위는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북남 공동위원회들의 가동은 물론 제9차 북남고위급회담 마저도 그 전도가 매우 위태롭게 되어 있는 현실은 귀측이 이제라도 자기의 그릇된 태도를 버리고 팀스피리트 합동군사 연습의 재개 조치를 무조건 철회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귀측이 우리측의 인내성 있는 노력과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계속 강행하는 길로 나간다면은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진적인 책임을 지게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해 두는 바이다.

[12] 기본합의서 채택1돛 즈음 노동신문 논평 - 「역사적인 북남합의서는 존중이
행되어야 한다」

(1992. 12. 15)

력사적인 북남합의서가 채택발표된 때로부터 한해가 지났다.

은 거래와 세계의 커단란 관심속에 진행된 제5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북남사
이의 화해와 불가치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된 것은 조국통일 3대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투쟁과정에서 이룩된 커다란 승리이며 조국통
일을 실현하는 길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력사적사변이었다.

자주리념, 민족대단결리념, 평화리념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북남합의서의 채택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우리 민족의 일치한 요구와 자주, 평
화에로 나가는 현시대의 추세를 반영한 가장 정당한 조국통일촉진강령이다.

북남합의서가 채택됨으로써 북과 남은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전쟁의 위험을
가시며 화해와 단합, 완화와 통일의 새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밝은 전망을 내다볼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또한 북과 남이 서로 싸
우지 않고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통일을 향해 나간다면 어떤 외세도, 사상과
제도의 그 어떤 차이도 한피줄을 이은 우리 민족을 갈라놓을수 없다는 것을 뚜렷
이 확증하였다.

참으로 북남합의서의 채택은 조국통일을 갈망하는 온 거래에게 통일의 희망과
신심을 안겨준 민족공동의 경사로서 민족 자주로선,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의
승리였다.

그후 북과 남은 제 6 차 고위급회담에서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정식
발효시켰고 제 8차 고위급회담에서 그 리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들을 채택발효시킴
과 함께 부문별 공동위원회들도 발족시켰다.

이것은 북과 남이 북남합의서의 리행을 위한 실천적 단계에로 넘어가게 되었다
는 것을 의미하는것이였다. 은 거래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민족의 념원과 시대
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북남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해, 력사적인 북남합의서채택
이라는 민족적경사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것을 다해온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원
칙적립장과 성의있는 노력에 대해 열렬한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민은 북남합의서채택으로 북남관계발전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한 기쁨보다도 북남대회와 합의서의 운명에 대해 우려감을 안고 북남합의서채택 1뼘을 맞고 있다. 그것은 남조선당국자들이 동족과의 합의보다 외세와의 야합을 중시하면서 합의정신을 위반하고 미국과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기로 결정하는 등 부당한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은 대화대방인 우리를 힘으로 위협하며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핵시험전쟁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이 도발적인 전쟁연습을 래년부터 재기하기로 한 것은 정세를 긴장시켜 북남대회를 파탄시키고 합의서리행을 정지시키며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전반을 대결의 원점으로 돌려세우기 위한 용납할 수 없는 반민족적범죄행위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의 반대화책동, 합의서위반책동은 이번에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다.

남조선통치배들이 합의서채택직후 미국상진들이 북의 《핵문제》를 걸고 《성급한 처사》라고 하며 합의서를 《류보》하라고 강박하자 항변 한마디없이 그것을 받아물었던 사실을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다. 그들은 부당한 구실밑에 합의서리행을 위한 부문별 부속합의서들의 채택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으며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들에서는 사관규정 하나 내놓을수 없게 하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특히 우리를 반대하는 《독수리》, 《화랑》 등의 전쟁연습을 벌려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킴으로써 11월 5일부터 일주일간격으로 가지기로 되었던 여러 분야의 북남공동위원회 1차 회의들이 열릴수 없게 만들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미국과 함께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래년부터 끝글내 재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대화포기 선언이고 합의서리행정지선언이며 우리에게 대한 전면대결선언이라고밖에 달리볼수 없다.

남조선당국자들의 이러한 반민족적범죄행위는 온 겨레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북남합의서는 북과 남의 책임있는 당국이 온 겨레와 세계 앞에 한 서약이며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백지화하거나 리행을 회피할수 없다.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념원에 맞게 그것은 반드시 철저히 리행되어야 한다.

합의서채택후 지난 1년간은 북남합의서가 성과있게 리행되자면 남조선집권자들

이 외세 의존사상을 버리고 자주적립장에 돌아서야 한다는것을 다시금 확인해 주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지금과 같이 미국의 지휘봉에 따라 동족과는 등을 돌려대고 외세와의 야합을 중시한대로 나간다면 북남합의서는 언제 가도 리행될수 없고 민족이 바라는 평화와 통일도 이룩될수 없다. 우리는 온 민족이 지지환영하며 그 조속한 리행을 바라는 북남합의서가 은을내도록 하기 위해 외세의존사상을 버리고 자주적립장에 돌아설것을 다시 한번 남조선당국자들에게 촉구한다.

북남대화를 발전시키고 합의서가 성실히 리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남 화해와 단결의 립장에 서야 하며 대결전쟁소동으로 북남관계를 약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대화와 전쟁불장난은 량립될수 없다. 우리는 위협에 처한 북남대화를 살리고 합의서의 철저한 리행을보장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남조선당국자들에게 북침전쟁연습을 감행하지 말데 대하여 한두번만 요구하지 않았다. 우리는 특히 남조선당국자들이 미국과 함께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매년 부터 재개하기로한 사실을 업증시하면서 처음 그것을 11월말까지 중지하는 조치를 취할데 대해 요구하였으며 그들이 우리의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것과 관련하여 12월 15일까지는 이 전쟁연습의 재개결정을 무조건 철회해야 한다는데 대해 다시금 요구하였다. 그런데도 남조선당국자들은 오늘까지 아무런 긍정적조치도 취하지 않고있으며 오히려 저들의 부당한 결정을 합리화하는데만 급급하고 있다.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은 북의 《핵개발의혹》에 대해 떠들며 그것 때문에 전쟁연습을 재개하는것처럼 말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현실기만이고 생억지이다.

우리가 거듭 천명한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핵무기가 없으며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 우리는 자기 핵정책이 결백하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거듭 받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이 채택되기전에 그리고 우리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받기전에 중지하였던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이 채택발효되고 우리의 핵정책의 결백성이 명백해진 오늘에 와서 《핵개발의혹》을 구실로 재개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조선반도에 존재하는 핵위협은 북이 아니라 남에서 오는 것이다. 남조선이

1,000여개의 미국핵무기가 배비된 극동 최대의 핵기지라는것은 세계가 공인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자가 《핵부재선언》이라는 것을 하였지만 그후 남조선에 있는 비밀저장고들에 미국핵무기가 감추어져있으며 전체항에 미국핵잠수함이 드나들고 있다는것이 거듭 폭로되었다.

최근에는 《한민전》이 발표한 남조선의 핵무기 개발진상공개장을 통해 남조선 집권자들이 《승공통일》을 노리고 1960년대말에 벌써 핵무기개발을 정책화하였으며 오늘 그것이 엄중한 단계에 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조선반도에서 핵위험을 조성하는 것은 남조선당국자들과 미제침략자들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를 길고 벌리는 핵소동은 저들의 핵무기개발과 핵전쟁도발책동을 가리우며 그것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기만적책동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당국자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북침핵전쟁연습을 재개하기로 한 부당한 결정을 합리화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자들에게 북남대화와 북남합의서를 존중한 생각이 조금이나마 있다면 우리의 정당한 요구대로 이제라도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재개결정을 철회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력사적인 북남합의서를 성실히 리행하여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할 것이다.

북남합의서, 북남대화의 운명은 전적으로 남측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외세와 야합하여 북남대화를 파괴하고 북남합의서를 유린하는대로 나간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될 것이다.

**[13] 현승중 국무총리,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 및 각 공동위 정상화 촉구 대북
전통문**

(1992. 12. 21)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강 성 산 귀하

나는 먼저 제9차 고위급회담이 귀측의 부당한 자세로 말미암아 남북 쌍방이 합의한 개최 날짜인 오늘 예정대로 열리지 못하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남북 쌍방은 금년 2월 19일 쌍방 최고당국자의 재가를 거쳐 남북 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이라는 역사적인 문건을 채택·발효시킴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남북관계를 화해·협력관계로 이끌어 나갈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이것은 남과 북이 그동안 누적되어온 상호불신과 대결적 자세를 털어버리고 상호 신뢰와 민족적 유대를 회복하여 온 겨레가 염원하는 평화와 통일의 대도로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또한 남북 쌍방은 지난 9월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 분야별 부속합의서를 채택·발효시키고 각 공동위원회들을 본격 가동하여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의 실천단계로 진입시켜 나간다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쌍방은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을 상호 교환함은 물론 남북적십자회담을 빠른 시일안에 재개하고 군사직통전화를 11월 6일까지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7천만 온겨레의 기대와는 달리 최근 귀측이 보여준 일련의 태도는 실로 실망스러운 것으로서 과연 귀측이 남북간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준수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귀측은 지난 11월 3일 남북공동위원회 귀측 위원장 연합성명을 통해 우리측의 연례적인 후방지역 방어훈련인 「화랑」·「독수리」 훈련을 트집잡으면서 11월 5일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개최키로 했던 분야별 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귀측은 부당한 조건을 내세워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교환 합의를 이행치 않았을 뿐 아니라 우리측의 남북적십자회담 재개 제의를 거부하고 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을 위한 통신실무자 접촉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귀측은 설상가상으로 우리측의 거듭된 충고를 외면하고 「팀 스피리트」 훈련을 트집잡아 마침내 제9차 고위급회담까지 무산시키는 자의적 행동을 서슴치 않았습

니다.

남북 쌍방이 대결과 불신을 청산하고 상호신뢰를 회복함으로써 화해」 협력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쌍방간의 약속을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제9차 고위급회담의 개최는 남북 쌍방 당국간의 합의일뿐 아니라 7천만 온거레에 대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이 합의한 회담일자마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귀측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또한 온거레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측은 팀 스피리트훈련을 내세워 회담무산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시키는데 급급하고 있으나,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에서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추진토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팀 스피리트훈련이 남북대화를 거부하는 구실로는 될 수 없습니다.

남북 쌍방은 남북간의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하며, 그것이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정신인 것입니다.

귀측도 알다시피 남북 쌍방은 비핵화공동선언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호사찰을 실시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비핵화공동선언이 채택된지 1년이 되어가고 있으며, 지난 3월 14일 쌍방 대표가 공동발표문을 통해 상호사찰을 실시키로 한 시한인 6월말이 지난지 6개월이 경과된 지금까지도 귀측의 불성실한 자세로 말미암아 사찰규정에 대한 토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측은 비핵지대화 논리를 담은 「이행합의서」의 우선토의를 주장하였는가 하면, 사찰규정 토의에 있어서도 상식에 어긋나는 일방적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남북 상호사찰을 회피하려는 의도까지 노골화함으로써 귀측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혹은 날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는 귀측의 핵무기개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또한 귀측의 합의사항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상황하에서 우리측은 우리의 안보태세 유지에 긴요한 팀 스피리트

혼란을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측은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비핵화공동선언에 명기된대로 신뢰성있고 효과적인 사찰규정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남북 상호사찰을 반드시 실시해야만 한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한편 귀측은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시대를 열어 나가기로 세계와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발효된 이후에도 대결적 사고와 자세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은 귀측이 우리사회에 혼란을 조성하고 체제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자생한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남으로써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앞에서 화해와 협력을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대화상대방을 파괴·전복시키려고 한 이같은 이중적 태도는 상대방의 신뢰를 지버린 것으로서 7천만 온겨레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귀측은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에 대해 온겨레 앞에 솔직히 시인·사과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파괴·전복행위를 다시는 지지르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귀측은 우리측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비방·중상을 멈추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측이 제14대 대통령선거 실시를 기화로 모든 선진매체를 동원하여 우리측은 정국혼란과 내부분열을 노린 선전·선동공작을 가열화하였습니다.

귀측은 어느 후보에 대해서는 악의에 찬 비방·중상을 일삼는가 하면 어느 후보에 대해서는 지지를 선동하는 내정간섭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한바 있습니다.

이는 남북간의 합의사항을 근본적으로 파괴·유린하는 처사일뿐 아니라 시대의 큰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화해·협력시대의 개막을 기대하고 있는 겨레의 여망에 찬물을 끼얹는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모한 파괴·공작과 상투적인 선전·선동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사회를 흔들어 보겠다는 것은 결코 통하지도 않고 통할 수도 없는 구시대적 망상임을 귀측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 모든 나라들은 과거 냉전시대의 대결과 불신, 단절의 두꺼운 벽을 무너뜨리고 화해·협력을 통해 자국의 번영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앞에는 거래의 염원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인 민주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우리는 고위급회담과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협의·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등 모든 남북간의 합의를 성실히 실천하려는 노력이 줄기차게 계속될 때만이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속에서 우리 민족의 자존을 구가하고 희망찬 내일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비롯한 모든 남북간의 합의사항은 무조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제는 백마디 말보다는 한가지라도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나는 귀측이 대결시대의 구태와 편협한 사고의 틀속에서 부당한 억지주장만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민족의 여망과 세계사의 흐름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남북대화에 임해 나올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귀측은 귀측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각 분야별 공동위원회와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귀측은 쌍방이 합의한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교환은 물론 남북적십자회담 재개문제와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 등에 있어서도 실천적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귀측이 민족사의 장래를 내다보는 보다 긴 안목에서 하루속히 우리의 정당한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옴으로써 통일을 갈망하는 온겨레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나는 귀하가 새로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으로 참여한 것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보다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 | | | |
|------|---|---|---|
| 대 | 한 | 민 | 국 |
| 국무총리 | 현 | 승 | 종 |

[14] 노동신문 논평 - 「대화 동결의 책임은 남측에 있다」

(1992. 12.22)

12월 21일부터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되어있던 제9차 북남 고위급 회담이 끝내 열리지 못하고 동결되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는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재개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긴장을 격화시키면서 대화분위기를 파괴해 나서므로써 초래되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남조선 당국자들이 미국과 함께 벌리려는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은 우리를 힘으로 위협하고 공화국 북반부를 침공하기 위한 예비전쟁이며 핵시험 전쟁이다.

남조선 집권자들이 우리와 마주앉아 화해와 불가침을 확약한 합의서를 채택 발표 시키고 돌아앉아 외세와 함께 대화 상대방이며 동족인 우리를 해치기 위한 불장난을 벌이기로 한 것은 우리에게 대한 배신이며 북남 합의서에 대한 노골적인 유린이다.

대화일방이 신의를 저버리고 외세와 야합하여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까지 벌리며 정세를 격화시키는 조건에서는 쌍방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마주 앉는 대야 성과를 기대할 수도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이 미국과 함께 래년부터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할데 대하여 결정하자마자 이러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부당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시한부까지 정해지면서 거듭요구했으며 남측이 끝내 팀스피리트 합동군사 연습을 강행하는 경우 북남 당국 사이에 진행되던 모든 대화와 접촉이 동결될 것이라는데 대해 경고하였다.

이러한 주장에는 어떻게 하나 위협에 처한 대화를 살리는 합의서의 순조로운 리행을 보장하며 거래를 핵참화의 위협에서 구원하려는 우리의 애국 애족적 입장이 반영되어 있었다.

그런데 남조선 당국자들은 우리가 처음 정해주었던 11월 말까지 핵전쟁연습 재개결정을 철회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두 번째로 정해준 12월 15일까지에도 그와 관련한 아무런 긍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부당한 구실밑에 핵

전쟁연습 준비를 서두르는데로 나갔다.

이것은 사실상 북남 대화를 파괴하고 합의서 리행을 정지시킬 것이라는 의사표시이며 우리에게 대한 전면 대결선언이다. 남조선 통치배들의 이러한 행동은 온 민족의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제9차 북남 고위급회담을 동결시키고 북남 합의서의 리행을 가로막은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있다. 가소로운 것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틱스피리트가 방어훈련이기 때문에 대화와 련관이 없다느니 무슨 핵사찰 지연이니 하면서 회담 동결의 책임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있는 사실이다. 틱스피리트 합동 군사연습이 방어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허튼소리이다.

알려진 것처럼 틱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은 미국의 침략적인 대아시아 전략의 산물로서 미국 본토와 아시아 태평양 기지에서 기어드는 미군, 남조선 강점 미군, 남조선 괴뢰군 등 도합 20여만의 정규무력이 투입되는 그 규모로 보나 핵무기를 비롯한 최신예무기와 군사장비들을 투입한 가운데 벌리는 북의 중심타격연습, 군사분계선 돌파작전, 상륙작전 등 작전연습의 내용으로보나 북침을 노린 공격연습이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과 남조선의 군부 우두머리들도 누차인정하였다.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은 올해에 틱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공동으로 발표하면서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북남대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그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그들자신도 틱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이 조선반도 정세와 북남 대화에 엄중한 후과를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것을 재개하겠다고 하면서 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다니 도대체 그것이 말이 되는가. 남조선 당국자들이 핵개발 의혹이니, 핵사찰 지연이니 하고 떠드는데 대해 말한다면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말이다. 우리가 거듭 명백히 한바와 같이 우리 공화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

우리는 우리의 핵전쟁이 걸백하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의 비정기사찰을 거듭 받았다. 핵문제를 실제로 안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남조선이다. 남조선에는 1천여개의 미국 핵무기가 배비되어 있으며 남조선 당국자가 핵부재선언이라는 것을

한후에도 비밀 핵무기 저장고들에 미국 핵무기가 숨겨져 있고 해군기지들에 미국 핵잠수함들이 드나들고 있다는 사실이 거듭 드러났다.

최근에는 남조선 당국이 미국의 부추김밑에 1960년대 말에 핵무기 개발을 정책화하고 그것을 강력히 추진시켰으며 오늘 그것이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드러났다.

핵무기는 저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있지도 않는 북의 핵의혹에 대해 떠드는 남조선 통치배들의 행동이야 말로 도적이 매를드는 격의 철면피한 행동이다. 남조선 집권자들이 핵사찰의 지연책임을 우리에게 넘겨 씌우려는 것도 언어도단이다.

원래 북남 합의문건에는 우리는 핵담보협정에 서명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받으며 남측은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한다고 밝혀져 있다.

우리는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다.

남측이 합의사항에 지적된 자기 의무는 하지 않고 똥단지 같이 핵사찰 문제를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재개결정 철회의 전제조건으로 들고 나온 자체가 합의사항에도 없는 생억지이다. 또한 북남 핵사찰이 지연되고 있는 책임도 남측에 있다.

남측이 남조선에 있는 미국 핵무기와 핵기지에 대한 전면 사찰을 한사코 반대하므로써 사찰규정 토의에 장애를 조성하다가 오늘에 와서는 다음번 북남 핵통제 공동위원회 날짜를 정하는 것마저 회피하여 나선 것이 엄연한 현실이 아닌가?

남측은 그 무엇으로서도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재개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므로써 북남 고위급 회담을 동결시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남조선 통치배들은 팀스피리트 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하기로 하고 독수리, 화랑 등 대규모 북침전쟁연습을 벌리므로써 11월에 예견되었던 여러 분야의 북남 공동위원회 1차 회의들이 열릴 수 없게 하였고 이번에는 또 북남 고위급 회담을 걸림시켰다.

그들의 이러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인 북남 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은 리행의 문귀에서 커다란 장애에 부딪쳤으며 그것이 백지화 될 위험도 없지 않다. 남조선 당국자들이 동족과의 합의보다 외세와의 결탁을 중시하며 사태를 여기까지 몰고온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대화, 반평화, 반통일적 범죄행위이다. 이것은 집권말기에 치한 남조선 6공 정권이 저지른 죄행들 가운데서 가장 엄중한 최악의

하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두고 두고 민족의 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남조선 당국자들은 외세에 추종하는 반역적 자세에서 벗어나 이제라도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재개결정을 철회하는 등 북남대화를 가로막는 장애들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지난 19일 북남 고위급 회담 북측 대표단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그동안 우리측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미국과 함께 대화 상대방인 우리를 반대하여 도발적인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기로 함으로써 제9차 북남고위급회담이 제날자에 개최될 수 없게 하고 전반적 북남 대화를 파탄의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데 대하여 응당 책임을 지고 민족앞에 사죄하며 침략적인 핵전쟁연습재개조치를 철회하고 북남 사이의 대화와 접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을 촉구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번에 성명이 현시기 북남 대화를 구원하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계속 완화의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일련에서 출발한 매우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하면서 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측 대표단의 성명이 발표된후 온 거래와 세계 양심은 그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하면서 남조선 당국자들이 이제라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립장으로 돌아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남조선 당국자들은 늦게나마 민족앞에 지지를 죄를 뉘우치고 대화를 구원하려는 진지한 자세로 나올 대신 오히려 저들의 대화 부정행위를 합리화하고 제9차 남북 고위급회담이 예정된 날짜에 열릴 수 없게 된 책임을 회피해 보려고 온갖 꾀변을 늘어놓고 있다.

죄를 지은자는 변명하게 마련이다. 21일부 남측의 전화통지문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남측은 전화통지문에서 구차스럽게 이러저러한 변명을 하던 나머지 팀스피리트 훈련이 남북대화를 그만둘 리유로 될 수 없다고 하고 남북 쌍방이 남북간의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도 엮어댔다.

전쟁연습과 대화가 량립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만일 남측의 말대로 한다면 그들은 응당히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재개문제에

대해 미국과 합의하기에 앞서 대화 상대방인 우리측과 협의했어야 할 것이 아닌가.

남북간의 모든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도 잘 알고 있는 남측이 협상 당사자이고 동족인 우리측과는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외세인 미국에 찾아가 그들과 군사연습 재개문제를 협의하고서도 과연 우리보고 대화니 협상이니 하고 히튼 소리를 할 체면이 있는가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우기 회담장에서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재개 문제를 논한것조차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핵통제 공동위원회 제14차 회의 날짜를 정하는 것마저 회피하고 있는 남측이 과연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할 명분이 있는가하는데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들에게는 말문이 막히고 할말도 없을 것이다.

이 한가지 사실만 놓고도 제9차 남북 고위급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수 없게 된 책임을 모면해 보려는 남측의 태도가 철면피한 것이라는데 대해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남측은 누구에게도 통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 놓았댔자 절대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또한 민족앞에 지은 엄청난 죄과가 떨어질 수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북남고위급회담 우리측 대표단이 상명에서 정당하게 지적한 것처럼 온겨레가 하루빨리 이땅에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핵 위협이 없는 밝은 앞날이 열리게 될 것을 바라고 있는때에 남측이 화해가 아니라 대건, 평화가 아니라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 오려는 반평화 반민족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동족과 한 약속보다 외세와의 합의를 더 귀중히 여기며 동족의 리익보다 외세의 리익을 앞세우고 있는 고질적인 사대근성과 대화부정 평화부정적인 악습을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해줄 따름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제9차 북남 고위급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될 수 없게 하였을뿐 아니라 신성한 조국강토에 또다시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고 있는 남조선당국자들의 반대화 반평화적인 범죄행위에 대하여 온민족의 이름으로 준열히 규탄한다.

외세와 한쪽이 되어 평화적인 대화를 동결시키고 동족을 반대하여 대결과 전쟁의 길로 나가고 있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무모한 행위는 도끼로 제발등을 찍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로 될뿐이다.

우리민족과 세계의 양심은 반드시 당국자들의 이 어리석은 행위가 빚어내게 될 후과에 대하여 계산하고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15] 김일성 신년사

(1993. 1.1)

<전략>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시종일관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습니다.

우리 당이 민족자주의 통일사상을 구현하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제시한 다음 지난 20년동안 조국통일운동은 전민족적 범위에서 끊임없이 확대발전되어왔으며 그 과정에 북남대화가 높은 단계으로 발전하여 마침내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발효시키는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수 있었습니다. 온 민족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통일을 가까이 내다볼수 있게 된 오늘에 와서 남조선당국자들이 부당한 구실을 붙여 북남합의서의 리행을 방해하고 도발적인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는데로 나아가고있는것은 민족자주의 통일원칙을 부정하고 외세의 힘에 의거하여 불손한 목적을 실현해보려고 하는 반민족적행위입니다.

우리 민족이 바라는 통일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이지 남에게 예속되어 살기 위한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에서 예속되어 살려 하였다면 구태여 장기간에 걸쳐 어려운 민족해방투쟁을 벌릴 필요가 없었을것이며 해방후 오늘까지 온갖 희생을 무릅쓰면서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여 투쟁할 필요가 없었을것입니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양보할수 없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부정하면서 대화요, 통일이요 하는것은 민족에 대한 우롱이며 용납될수

없는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든지 민족자주의 립장에서 진정으로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실한 태도로 나온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마주앉아 허심탄회하게 민족의 통일문제를 협의할것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것입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 해결하여야 할 민족적문제인 동시에 유관국들도 책임을 느끼고 적극 협력하여야 할 국제적 문제입니다. 령전의 산물인 조선문제를 해결하려면 유관국들이 령전시대의 낡은 정책을 대담하게 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대하여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경제적으로 압력을 가하면서 령전시대의 일변도 정책을 계속 매달리는것은 령전의 후과를 가시려는 태도가 아니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것입니다. 유관국들이 시대적요구와 국제적 정의의 원칙에 맞게 조선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려는 립장 설 때 조선문제에서 지니고있는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리행할수 있게 될것이며 이것은 우리나라와 이 나라들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데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될것입니다.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아직도 장애와 난관이 있으나 민족자주의 원칙에 따라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것입니다.

〈후략〉

[16] 북한 정부 비망록 - 「민족자주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공화국 정부의 노력」

(1993. 1. 28)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발효된지 1년이 지나갔다.

이 력사적문건들은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게 조선의 통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북남합의문건들이 발효된 이후 지난 1년동안의 사태발전은 북남사이에 아무리 좋은 합의를 이룩한다 하여도 대화자가 주체성을 잃고 외세에 추종하여 동족과 대결하는 길로 나간다면 그것이 제대로 리행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우기 오늘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르 반대하는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고 우리에게 대한 부당한 핵사찰압력을 강화해나옴으로써 좋게 진전되던 대화는 전면동결되고 합의문건들의 리행이 차단되었으며 조선반도정세는 극도로 침체화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통일과정을 리해하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이 시작된 1970년대로부터 민족자주의 통일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화국정부가 기울인 진지하고 성의있는 노력에 대하여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1) 민족자주의 통일원칙구현

1970년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민족자주의 통일사상을 구현하시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제시하시고 이에 기초하여 북과 남이 7.4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민족공동의 주체적통일강령이 마련되었으며 조국통일5대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이며 공명정대한 조국통일 방안들이 제시되고 통일운동이 적극화된 력사적인 년대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문제를 둘러싼 내외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게 조성되었다.

당시 미국대통령 닉슨은 1969년 8월 <팜선언>을 발표한데 이어 1970년 2월 국회에 보낸 <서신>을 통하여 이른바 <닉슨주의>를 내놓았다. 미국은 <닉슨주의>에 의한 자기의 <평화전략>에 따라 조선반도에서 <승공통일정책>을 가리우고 조선의 분렬을 고착화, 합법화하는 정책전환을 하였다.

조성된 정세는 조선통일문제를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조선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결정적대책을 강구할것을 요구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주석께서는 1971년 8월 6일 통일의 돌파구를 열기위한 대책으로서 남조선의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인사들과 정치협상을 진행할데 대한 새로운 폭넓은 북남협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북남협상방침은 북과 남의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

북남협상방침을 지지하는 내외의 여론이 높아지자 그 어떤 집착도 거부해오던 남조선당국은 북남적십자단체들의 접촉에 대한 제의의 형태로 이에 부응해나왔다.

그리하여 1971년 9월부터 북남적십자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공화국정부는 적십자회담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는 한편 회담통로를 통하여 두 당국사이의 고위급회담을 성사시켜 대화의 급을 높이기 위하여 인내성있게 노력하였다.

그 결과로 1972년 5월과 6월 평양과 서울에서 북과 남사이의 고위급정치회담이 진행되게 되었다.

분단사상 처음으로 마련된 북남 두당국자들사이의 직접적인 회담은 통일과정을 가속화할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되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1972년 5월 3일 북과 남사이의 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남측대표를 접견하시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천명하시였다.

조국통일 3대원칙은 너무나도 공명정대하였기 때문에 남조선당국자들도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1972년 7월 4일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초로 하여 역사적인 공동성명이 발표되게 되었다.

북과 남은 이 공동성명을 통하여 조국통일 3대원칙을 통일의 기초로 확인하고 내외에 선포하였다.

7.4공동성명의 발표로 하여 우리 민족은 국토분단후 처음으로 하나의 통일강령을 가지게 되었다.

7.4공동성명의 합의사항에 따라 1972년 11월에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설기구로서 북남조절위원회가 발족운영되게 되었다. 우리는 3차례에 걸쳐 진행된 북남조절위원회 회의들에서 상설적인 합작기구로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외교의 5개 분과위원회들을 조직할데 대한 문제, 무력증강을 중지하고 군축을 실현하며 미군을 철거시키고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문제, 조절위원회사업과 별도로 각 정당, 사회단체와 개별적인사들의 폭넓은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문제 등 다방면적인 합작과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안들을 내놓았다.

그러나 남측은 북과 남사이에 <신뢰>가 조성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우리측의 제안들을 모두 거부하고 <단계적통일론>을 고집하였다.

사실상 <단계적통일론>은 실력을 배양하기 위한 간판으로서 <승공통일론>의 변종이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대화마당에서는 지연전술을 썼으며 대화장밖에서는 민족앞에 서약한 조국통일 3대원칙과 배치되게 외세의존정책에 매달렸다.

더우기 그들은 분렬체제인 <유신체제>를 만들어내고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까지 취하였다.

당시 남조선당국자는 1973년 6월 23일 이른바 <특별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여 민족의 분렬을 고착시키고 영구화하기 위한 <두개 조선>로선을 정책으로 발표하였다.

이리하여 조국통일의 앞길에 엄청난 장애가 조성되었으며 우리 민족은 영원히 분렬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조성된 정세는 나라와 민족을 영구분렬의 위기에서 구원하며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북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 소집,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 5대방침을 천명하시였다.

이 방침은 완화단계에 들어섰던 국제정세발전의 흐름에 맞게 조선사람자신의 힘

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획기적인 통일방안이다.

조국통일 5대방침은 발표되자마자 우리 민족뿐아니라 세계평화애호인민들로부터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

공화국정부가 제기한 조국통일방침과 방안들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유엔총회들에서 뚜렷이 화중되었다.

1973년에 진행된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 역사상 처음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이 아무 조건 없이 초청되어 조선문제토의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총회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이 제기한 <두개 조선> 유엔동시가입안을 배격하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문제에 대한 간섭도구로 리용되어오던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할데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기로 함으로써 그가 감행하여오던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행위에 종지부가 찍히게 되었으며 조선인민의 민족적 존엄과 권리를 모독하며 침해하던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년례보고> 늑음도 끝장나게 되었다.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는 공화국정부의 통일방안을 수용하여 정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으로부터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43개국공동결의안이 압도적다수로 채택되었다.

사실상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43개국공동결의안의 통과는 지난날 유엔에서 미국의 강요에 의하여 채택되었던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한 모든 비법적 <결의>들의 무효화를 선포한 것이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미국과 남조선당국들이 <두개 조선>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있던 정세에 대처하여 197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돛기념 중앙경축대회보고에서 미국과 대화를 하며 남조선의 당국자들, 각 정당들과도 대화를 진행할데 대한 폭넓은 대화방안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이 협상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제의에 의하여 1979년 2월부터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내오기 위한 북남연락대표접촉이 진행되었다.

북남련락대표접촉에서 남측은 처음부터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제4차접촉에 이르러서는 회담장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이 회담은 파탄되고말았다.

비록 1970년대 북남대화가 자기의 목적을 이룩하지는 못하였지만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북과 남이 공동의 통일원칙으로 확정함으로써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수 있는 확고한 전제가 마련되었다.

(2) 통일방도의 마련

1980년대는 조국통일 3대원칙을 구현한 통일대강으로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이 제시되고 그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평화보장과 군축방안이 제시되었으며 북남고위급회담의 전환적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 년대이다.

미국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조선에 새로운 군사 <정권>을 조작하고 1970년대 실현하지 못한 <두개 조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시켰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민족이 <이질화>되어 통일의 <당위성>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이른바 <통일불가능론>과 <2000년대통일론>까지 공공연히 들고나왔다.

이리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분렬주의자들이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결정적으로 막고 통일위업수행에서 새로운 활로를 열어놓아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1980년대 10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방법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새로운 통일대강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것을 주장합니다.»

련방체통일방안의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대표들로 최고

민족련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련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는 방법으로 구성하며 그의 기능은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이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도록 하며 국호는 우리 나라에 존재하였던 통일국가의 이름과 북과 남의 공통한 정치리념을 살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하며 련방국가의 성격은 평화애호적이고 뽀력불가담적이며 중립적인 국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련방국가가 실시할 대내외정책방향은 10대시정방침을 통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참으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공정하게 그리고 가장 빠르고 순조롭게 통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밝힌 조국통일대강이다.

북과 남에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여왔고 서로 다른 사상이 지배하고있는 조건에서 제각기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거나 그것을 상대방에 강요하려 하는 것은 힘에 의한 <휴수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강압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은 새로운 대결과 충돌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북과 남은 사상과 정치리념을 달리하는 민족성원모두가 받아들일수 있고 그리고 주변나라들이 다같이 공감할 수 있는 방도를 선택하여야 한다.

그 방도가 바로 현재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어느 군사뽀력에도 가담하지 않고 어느 나라의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는 자주적이고 중립적이며 민주주의적이고 평화애호적인 련방국가를 세우는 것이다.

공화국정부는 련방제에 의한 통일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책들을 거듭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인내성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공화국정부는 1980년 11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으로 창립준비위원회를 내오기 위한 예비회의를 가진 것을 제기하였다.

공화국정부는 1981년 8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비롯하여 기타 제기되는 통일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민족통일촉진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으며 1982년 2월에는 100인정치인련합회의를 소집할것을 받기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회담제의에 응해나오지 않았다.

남조선측은 우리의 제안을 외면하기 위하여 1982년 1월 22일에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라는 것을 들고나왔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내놓은 이른바 《방안》은 여전히 분렬을 합법화하고 고정화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확증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1983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5돐 경축연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련방제통일방안을 다시 천명하시면서 련방국가의 통일정부인 최고민족련방회의와 련방상설위원회가 북과 남의 공동의장과 공동위원장을 각각 선출하여 그들이 료변제로 운영해나갈데 대한 련방방정부운영방식을 제시하시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 상반되는 제도가 존재하고있고 서로 다른 사상이 지배하고있는 구체적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가장 현실적이며 그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공명정대한 통일대강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이 방안은 세상에 발표되자마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으며 그것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지지하여 1981년 3월 알제리에서는 80개 나라와 14개 국제기구대표단들의 참가밑에 세계대회가, 1982년 7월 또고에서는 25개 나라 대표단들과 대표들의 참가밑에 아프리카지역정부회의가 진행되었으며 1982년 4월말까지 세계 100여개 나라에서 16억에 달하는 각계각층 인사들이 서명운동에 참가하였다.

1980년대 중반기에 들어오면서 미국은 군축의 막뒤에서 자주의 길로 나가는 작은 나라들을 각개격파하기 위한 전술에 매달렸다. 미행정부는 아세아중시전략에 따라 핵무기를 비롯한 최신형 살육 무기들과 군사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남조선에 끌어들이어 남조선을 극동최대의 핵무기고로, 핵전쟁진초기지로 진변시켰으며 남조선당국은 핵무기개발을 더욱 다그쳤다.

더우기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1976년부터 매해 벌려온 《팁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현대적인 진면전쟁과 핵전쟁을 가상한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으로 전환시켰다.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협을 막고 군축을 실현하여 평화를 수호하며 평화통일의 진제를 마련해나가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현실적문제로 제기

되었다.

1984년 1월 10일에 소집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에서 조선의 북과 남, 미국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열고 여기에서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북과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이 제안은 해당한 경로를 통하여 미국정부와 서울당국에 편지로 전달되었다.

물론 미국당국자들도 여러차례 3자협상안을 제기한바 있다.

1983년 11월에 당시 미국대통령 레간은 남조선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는 조건에서 3차회담을 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대치상태를 실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3자회담제안을 내놓게 되자 미국당국자들은 <우선 남북회담이 선행되어야 한다>느니, <4자회담이 바람직하다>는 등의 구실로 3자회담제안을 반대해나섰다.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계속 인내성있게 노력하였다.

우선 공화국정부는 긴장한 북남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1984년 9월 폭우로 재난을 입은 남조선수재민들에게 쌀 5만석, 세멘트 10만톤, 천 50만메터, 다량의 의약품을 보내주는 인도주의적이며 동포애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이를 계기로 북과 남사이에 경제, 적십자, 체육 등의 분야에서 회담이 재개되었으며 1985년 9월에는 분단이래 처음으로 예술단과 고향방문단의 교환방문이 실현되었다.

런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는데서 기본요소로 되는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공화국정부는 우선 핵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1986년 6월 23일 성명을 발표하여 조선반도를 비핵, 평화 지대로 만들데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이 제안은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저장과 반입을 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기지를 포함한 모든 군사기지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무기들이 자기의 령

토, 령공, 령해를 통과하는것을 허용하지 말 것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 제안은 미국으로 하여금 핵무기반입을 중지하며 이미 반입된 핵무기들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철수하며 조선반도에서 핵무기사용과 관련한 모든 작전계획들을 취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였다.

공화국정부는 1987년 7월 23일 성명을 통하여 5개 항목의 새로운 대규모적인 단계적무력축감제안을 제기하였다. 이 군축제안은 북과 남이 3단계에 걸쳐 무력을 축소하되 1992년부터 각각 10만이하의 병력을 유지하며 남조선에 있는 미군도 단계적으로 철수하며 북과 남의 무력이 10만이하로 축소되면 남조선에 있는 미군도 완전히 철수하며 무력축소정형을 검증하며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 중립국감시군을 주둔시키며 이상의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하여 북과 남, 미국사이의 회담에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대표들을 방청으로 참가시키는 다국적군축협상을 진행할데 대한 내용을 담고있다. 공화국정부는 단계적인 무력축감제안을 내놓은 데 뒤이어 1987년 7월 30일 10만의 군인들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군축방안은 1988년 11월 7일 평화보장 4원칙과 포괄적인 평화방안, 1990년 5월 31일 대폭적인 군축방안을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체계화되었다.

1980년대 조국통일의 환로를 열어놓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노력은 전체 조선인민에게 1990년대에 나라의 통일을 반드시 이룩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었다.

(3) 통일의 년대

1940년대에 시작된 민족의 분렬이 1990년대에 들어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민족자주성의 견지에서 보나 세계정세발전추이의 견지에서 보나 도저히 허용될수 없는 현실이다.

북과 남의 다른 서로 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만드는 문제는 앞으로 천천히 순탄하게 풀어나가도록 후대들에게 맡겨도 되지만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의 통일국가를 세우는 일은 이제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견지로부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방식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을 제시하시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는 연방공화국의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더 높여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할데 대하여 천명하시었다.

이것은 통일문제와 관련한 각이한 견해들을 충분히 고려한 신축성있는 제안이며 북과 남이 통일방도를 빨리 확정하여 1990년대에 나라의 통일을 반드시 이룩하려는 진지한 념원에서 출발한 것이다. 공화국정부는 통일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미 1986년 12월에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받기하였다.

우리의 회담받기는 1989년 2월에야 실현되어 8차례의 예비회담을 거쳐 1990년 9월에 첫 북남고위급회담 본회담이 개최되게 되었다.

제6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조국통일 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투쟁과정에 이룩된 커다란 승리이며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해온 민족자주원칙과 민족대단결로선의 위대한 결실이다.

북남합의서는 7.4공동성명과 더불어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의 요구와 자주, 평화에로 나가는 현시대의 추세를 반영한 조국통일강령이다.

역사적인 합의문건들의 발표를 계기로 북과 남사이에는 대화들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을 통하여 화해, 군사, 경제, 사회 분야의 부속합의서들이 채택발효되고 공동위원회들이 발족되었으며 북과 남사이에 합의된 문제를 실제로 리행하기 위한 협상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온 민족이 커다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통일을 가까이 내다볼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미국과 남조선은 이미 중지하였던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재기하기로 결정하고 조선반도에 무력을 대대적으로 집중시키고있다.

결과 높은 단계에로 발전했던 북남대화는 전면적으로 중단되고 북남관계는 대결

의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북남대화와 통일과정은 대화일방이 민족자주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아무리 훌륭한 방안을 내놓고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도 상대방이 외세에 의존하여 사대매국행위를 하는 조건에서는 그 어떤 문제도 원만히 풀어나갈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통일과정을 계속추진시켜나가려면 현조건에서 우선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로,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범죄적인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견어치워야 한다.

둘째로, 남조선당국은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의 길에 나서야 한다.

조선인민이 바라는 통일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위한 통일이지 외세에 예속되어 살기 위한 통일이 아니다.

셋째로, 미국이 령전시대의 낡은 대조선정책을 버려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하여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경제적으로 압력을 가하면서 일변도정책에 매달리는것은 령전의 후과를 가시려는 태도가 아니다.

특히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까지 리용하여 우리의 군사대상들에 대한부당한 <특별사찰>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며 우리의 제도를 압살해보려는 책동의 일환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그 어떤 형태의 압력에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아직도 장애와 난관이 있으나 민족자주의 원칙에 따라 전진하는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대단결로 1990년대 반드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아세아와 세계 평화위업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평화와 진보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 정부들과 인민들이 조선반도에 조성된 침예한 정세에 깊은 주의를 돌리고 평화와 통일 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17〕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T/S 재개결정 관련 성명

(1993. 1. 30)

1월 26일 남조선당국자는 미국과 함께 끝내 침략적인 핵전쟁연습인 <팀 스피리트 93> 합동군사연습계획을 공식발표하였다.

서울과 워싱턴에서의 이 합동군사연습계획의 발표는 북남대화파탄선언이며 북남 합의문진들의 리행차단선언이다.

아울러 이것은 대화일방인 우리측에 대한 무모한 도발이며 완화와 통일을 바라는 7천만 겨레와 세계량심에 대한 용납못한 도전이다.

<팀 스피리트 93> 합동군사연습계획이 공포됨으로써 오늘 북남관계는 또다시 대화없는 대결의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조선반도에는 언제 터질지 모를 핵전쟁의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사태가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는 이미 지난해 10월초에 남조선당국자들이 미국과 함께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재개에 합의하였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00여일동안 이 전쟁연습 조치를 철회할데 대하여 인내성있게 충고도 하고 경고도 하여왔다.

우리측은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재개조치가 취해진 이 후 즉시 정부, 정당, 단체들의 긴급련합회의를 열고 남조선당국이 중지하였던 이 전쟁연습을 다시 벌리려고 하는데 대해 엄중시하고 그를 무조건 철회할것을 요구하였으며 린이 어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인 우리측 총리의 이름으로 남측에 편지를 보내어 북남대화의 진전과 북남합의서의 리행을 가로막는 도발적인 군사연습재개합의를 당장 취소할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북남 각 공동위원회 우리측 위원장들도, 린합성명을 발표하여 남측에 지난해 12월안으로 모든 공동위원회들이 가동될 수 있도록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재개 합의를 취소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더우기 우리측은 남조선당국자들의 이 범죄적인 핵전쟁연습을 공식발표하기 바로 전날인 1월 25일에도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 위원장접촉에 나가 비핵화공동선언에 배치되며 모든 북남대화들을 파탄의 길로 끌어가게 될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재개조치를 철회할것을 다시 금 강력히 요구하였다.

우리측의 이러한 진지한 노력은 어떻게 하나 좋게 진행되어온 북남대화가 걸림되는것을 막고 모처럼 채택, 발효된 북남합의문건들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세를 계속 완화와 평화의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일념으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세계각국의 정계, 사회계 인사들과 광범한 평화애호인민들도 그동안 조선반도의 평화와 나아가서 아세아의 안전과 세계평화에 엄중한 후과를 가져다주게될 <팀 스피리트> 핵전쟁연습재개조치를 철회한데 대한 목소리를 높이면서 남조선당국자들의 태조를주시하여왔다.

그러나 내외의 이러한 거듭되는 요구와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은 끝내 이 침략적인 핵전쟁연습계획을 공포하는것으로써 인류량심에 도전해나섰다.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은 동족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과 지향에 도전하여 끝끝내 미국과 함께 <팀 스피리트 93>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선 남조선당국자들의 범죄적 책동을 온 민족과 함께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은 력사와 민족앞에 지지르고있는 저들의 죄행을 가리워보려고 있지도 않는 우리의 <핵개발의혹>이라는 허구를 내들고 그것을 구실로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합리화하며 군사훈련과 대화는 <별개의 문제>라는 소리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흑백을 전도하는자들의 강도적론리이며 죄의식에 싸인자들의 칠면피한 궤변이다.

누구에게나 명백한것처럼 우리 나라에서 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있는 것은 두 말할 것 없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

북남핵사찰이 빨리 실시되어 조선반도가 비핵화되는데 실지로 관심을 가지고있는 것은 우리측이며 35년동안이나 남조선에 배비된 미국의 핵무기와 그리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의 핵전쟁연습으로 하여 핵위협을 받고있는것도 우리측이다.

우리측이 이미 지난해초에 핵담보협정에 서명하고 그후 국제원자력기구의 비정기사찰을 성실하게 받아왔으며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안들을 내놓

고 거듭 양보도 하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공동선언을 리행하기에 모든 성의를 다 해왔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반해서 말로는 <남북핵사찰>에 대하여 떠들면서도 실지로 나라의 비핵화 실현을 각방으로 반대하여온 것은 바로 남측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남조선에 배비되어있는 미국의 핵무기와 핵기지에 대한 사찰을 극력 반대하고 그 무슨 <동수사찰원칙> 이라는것을 들고나와 우리의 <일반 군사기지>까지 <사찰>해야 한다고 주장해 나섰으며 조선반도의 비핵화공동선언에도 없는 이른바 <특별 사찰>까지 떠들어댐으로써 핵통제공동위원회사업의 진전을 가로막고 회의개최를 회피하여온것은 그를 응변적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사실이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핵 문제>를 구실로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할수밖에 없다고 하는것은 가해자가 도리어 피해자에게 죄를 묻는것과 같은 강도적인 주장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팀 스피리트> 전쟁연습이 <남북대화>와 <별개의 문제>이며 지난 시기 남조선에서 대규모군사연습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남북대화>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 역시 범죄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구차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시기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기간에 진행된 판문점회담들은 레외없이 남조선당국자들의 전쟁연습소동을 중지시키기 위한 회담이였고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연습을 벌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을 단죄하고 심판하기 위한 대화였다.

또한 가소로운것은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침략적인 이 전쟁연습의 참관에 우리측을 <초청>한다는 말까지 걸어온것이다.

이것 역시 저들의 죄행을 조금이라고 약화시키고 내외의 항의와 규탄을 무마시켜 보려는 서툰 연극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남조선당국자들은 범죄적인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합리화 해보려고 황당한 구실들을 들고나옴으로써 화해와 평화가 아니라 대결과 전쟁의 길로 나가려는 저들의 흥심을 더욱더 드러내놓았을뿐이다.

모든 북남대화들이 일조에 동걸되고 력사적인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의 리행이 무기한 차단될것을 뻔히 알면서도 <팀 스피리트 93> 합동군사연습을 강

행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남조선당국자들의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외세와 함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대화의 진진을 가로막고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의 리행을 차단함으로써 남조선에 있는 미국해무기와 핵기지에 대한 전면사찰을 회피하고 미군철거를 막으며 저들의 핵무기개발책동을 은폐해보려는데 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이와 같은 목적에서 올해에 <팀 스피리트 93>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함으로써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이 아직 나오지 못하였던 이전 시기에 비할바없는 가장 엄중한 범죄를 민족앞에 지지르고있다.

남조선 당국자들은 <팀 스피리트 93> 합동군사연습의 강행으로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를 비롯한 모든 북남대화를 파탄상태에 몰아넣은 책임을져야 한다.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은 남조선당국자들이 외세와 야합하여 계획적으로 대화를 파탄에로 몰아가고있는 조건에서는 구태여 그들에게 대화를 구걸할 생각이 없으며 동결상태에 빠진 모든 북남당국자사이의 대화를 굳이 재개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천명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해진쟁소동으로 북남대화를 중단시키고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리행을 지연시킨 자기의 엄중한 죄과에 대하여 솔직히 시인하고 민족앞에 사죄하여야 한다.

<팀 스피리트 93> 합동군사연습의 강행은 남조선에서 한탄후에 발족하게 된 <정권>과도 결코 무관하다고 볼수 없다.

군사<정권>인 <6공>이 추진해온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이른바 <문민정치>를 표방하고있는 <정권>이 그대로 재연하는 것은 그들스스로가 말하는 <문민정권> 자체를 의심하게 할뿐이다.

남조선통치배들은 화해와 대화를 바라며 90년대 통일에로 나아가는 7천만 거리의 의지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미국도 조선문제의 주인은 조선사람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남조선에 대한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야 하며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살인무기들을 지체없이 철수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우리는 대결과 전쟁이 아니라 대화와 평화를 바라는 온 민족과 함께 미국과 남

조선당국자들의 무분별한 핵전쟁연습책동을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주시할 것이다.

〔18〕 기본합의서 발효 1주년 국무총리 담화

(1993. 2. 19)

7천만 내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효된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전 우리 민족은 모두가 통일에 대한 커다란 기대와 희망으로 남북간 합의사항의 발효를 진심으로 환영하였으며,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분단 47년만에 불신과 대결의 평행선을 이어왔던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일대 전기가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남북간에 지속되어온 적대관계와 소모적 대결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이와같은 관계발전의 기본틀이 마련된 것은 실로 값진 성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남과 북은 이제 쌍방간의 견해차이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우리 민족의 장래를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자긍심, 그리고 급변하는 세계질서에 뒤지지 않고 이에 동참하여 민족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은 평화적이고 자주적으로 반목과 대결을 해소하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굳은 약속을 내외에 천명함으로써 국제정세의 변화에 피동적으로 휘말려 민족적 고난을 겪어야 했던 수난의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영광의 시대로 개척하고자 하는 민족적 결의를 과시하였습니다.

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지난 1년사이에 남과 북은 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발효시키고 화해·군사·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판문점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실천기구들을 마련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을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이와같이 남과 북은 쌍방간의 모든 문제를 대화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관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통일로 나아갈 기본체제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화해·협력의 실천단계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남북사이에 가로놓인 긴급한 현안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들의 순수한 바람을 실현시켜 분단으로 인해 비롯된 이산의 아픔을 치유하는 실마리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더 이상 파괴·전복의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장 기초적인 신뢰를 가질 수 없게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더우기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이 해소되지 못함으로써 민족 전체의 사환에 대한 의구심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으로 인하여 야기되고 있는 긴장은 민족문제를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서 남북관계를 벗어나게 할 위기마저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남북간의 현안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는 남북관계 발전방향, 나아가 민족의 장래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남북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발전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남북대화마저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일인어삼추로 갈망하는 우리 민족을 실망시키고 있음은 물론 한반도문제 해결의 향방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신망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남과 북은 상호 합의한 약속들을 성실히 실천해 나감으로써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 민족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와 확신을 세계에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지역, 또는 모든 민족의 문제는 그 지역, 그 민족의 문제로만 남아 있지 않고 곧바로 국제적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감안해 볼때 남북간의 현안문제를 우리 민족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 민족의 자존을 지켜 나갈 수 없으며, 망국과 분단의 지난 1세기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바와같이 또다시 민족의 장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게 된 우려마저 없지 않습니다.

남과 북은 남북간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긴급한 현안문제, 특히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지속적인 관계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어렵게 마련한 민족문제 해결의 자주적 장을 잘 활용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급변하는 세계속에서 우리와 자손만대에 걸쳐 항구적인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고 번영을 이룩하는 통일국가 건설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자주적이고 민주적이며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여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염원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남북간의 교착상태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며 하루빨리 기본합의서를 비롯한 쌍방간에 합의한 사항들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통일국가를 이룩하겠다는 결의와 확신으로 일시적인 난관과 장애가 있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통일을 앞당겨 나가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경주해 나아가야 합니다.

남북관계의 발전은 신뢰가 그 토대가 되어야 하며, 우리 민족전체가 잘사는 방향으로 개혁·개방과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 당국도 세계사 변화의 흐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새로운 통일민족사를 창조해 나가는 우리의 노력에 적극 호응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금년부터는 현안문제 해결을 비롯하여 남북간의 합의사항을 하나씩 실천함으로써 통일로 향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해 나아가십시오.

[19] 기본합의서 발효 1주년 관련 노동신문 논평 - 「남북합의문건 발효후 사태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1993. 2. 23)

력사적인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이 발표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나갔다.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발효는 민족주체의 힘으로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실현해나가는데서 하나의 획기적인 사변이었다. 북남 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이 발효됨으로써 북과 남사이에는 불신과 대결의 장벽을 허물고 화해의 새 전기를 마련해나갈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밝은 전망을 내다볼수 있게 되었다.

하기에 온 겨레는 북남 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의 발효를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의 승리로 인정하면서 이를 열렬히 지지환영하였으며 그것이 하루빨리 리행되기를 한결같이 바랐다.

우리는 북남 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민족공동의 귀중한 성과로 존엄있게 대하며 겨레의 기대와 요구에 맞게 성실히 리행하기 위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해왔다. 우리가 합의문건들의 발효이후 소집된 북남대화에서 민족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면서도 거듭되는 양보와 아량으로 문제토의를 진전시켜나감으로써 부속합의서들과 그 리행기구인 공동위원회들을 탄생시킬수 있게 하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있다.

그러나 우리의 시종일관한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남 대화는 동결상태에 빠지고 합의문건들의 리행이 정지되고말았으며 정세는 합의문건발효이전의 참예한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자들이 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유린하고 우리와의 대결을 고취하고 긴장을 격화시키며 특히 미국과 함께 있지도 않는 우리의 《핵의혹》을 걸고 도발적인 《팀 스피리트》 북침핵전쟁연습을 재개함으로써 초래된 결과이다.

둘이켜보면 남조선당국자들의 대화파탄책동은 《팀 스피리트》 핵전쟁연습의 재개에서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이러한 기도는 합의문건들의 발효직

후 소집된 북남대화들에서 합의사항리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들의 채택을 반대하고 분렬지향적인 <실체인정>론을 다시 들고나와 고집할 때 벌써 드러났었다.

북남합의서의 정신에 맞게 북과 남이 화해하고 단합하자면 남조선에서 우리를 적대시하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반통일파쇼악법들을 철폐하여야 한다. 그런데 남조선집권자들은 오히려 그것을 없앨수 없다고 공공연히 떠벌이면서 그대로 유지하는대로 나갔으며 이 악법을 휘둘러 통일에국세력을 탄압하였다. 저어 그들은 <남한조선로동당사건>이라는 모략사건까지 조작하여 우리를 걸고 대결을 고취하며 인민탐압에 광분하였다. 그들은 합의문건들의 리행을 위한 대화가 한창 진행되고있는 때에 미국과 야합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포커스 렌즈>요, <독수리>요, <화랑>이요 하는 북침핵전쟁연습과 각종 전쟁불장난을 감행하여 긴장을 격화시킴으로써 대화와 순조롭게 진행될수 없게 하였다. 우리의 주동적인 발기에 의하여 모처럼 마련되었던 로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사업이 파탄된것도, 북남합의서를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기게 될 각 분야의 제1차 공동위원회들이 약속된 날자에 열리지 못하게 된것도 남조선통치배들의 불성실한 대화자세와 범죄적인 북침전쟁연습책동때문이었다.

사실들은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내외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우리와 함께 합의문건을 채택, 발효시키는데까지 나오기는 했으나 처음부터 그것을 달가와 하지 않았으며 그 실천단계에서 합의서리행을 지연, 파탄시키는데로 줄달음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의 이러한 책동은 우리의 거듭되는 항의규탄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함께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해나심으로써 절정에 이르렀다. 그들이 <팀 스피리트> 핵전쟁불장난을 재개한 것은 민족자주의 통일원칙을 부정하고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을 해치겠다는것으로서 사실상 대화파탄선언이며 합의서리행포기선언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또한 아무런 문제로도 되지 않는 우리의 <핵문제>를 걸고 우리를 반대하는 모략적인 <핵소동>을 벌리면서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여러차례에 걸치는 사찰을 통하여 우리의 핵정책의 결백성이 확증된 오늘날에 와서도 비핵화공동선언리행에 성실한 자세로 나올 대신 비핵화검증을 위한 북남사찰을 회피하고 미국과 야합하여 그 무슨 <미신고시설

》에 대한 <특별사찰>이니 뭐니 하면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있다. 이것이 아무런 문제로도 되지 않는 우리의 <핵문제>를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북남합의사항들의 리행을 전면차단하는 주패장으로, 외세와 함께 우리의 사회주의 체도를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리용하려는 계획적인 책동이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사실들은 남조선당국자들이 북남합의서의 정신에 따라 민족자주의 립장에 서서 우리와 화해하고 힘을 합쳐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룩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힙>으로 누르고 <송공통일>야망을 실현할 것을 추구하고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민족주체적힘으로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동족과의 합의를 헌신짝처럼 켜버리고 외세와 걸탁하여 동족을 해치려 함으로써 북남 대화를 동결시키고 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리행을 정지시켰으며 정세를 북남합의문건채택이전의 침예한 국면으로 되돌아간 것은 천추에 용납할수 없는 반민족적, 반평화적 범죄행위이다. 남조선통치배들은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리행을 위한 북남공동기구들의 사업을 파탄시키고 평화와 통일에로 좋게 흐르던 조선반도정세를 위협천만한 핵전쟁접경에로 몰아간데 대해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

북남합의문건발효 이후의 1년간의 사태는 남조선통치배들과 같이 동족을 적대시하고 외세에 의존하여 불손한 목적을 이루어보려는 반역집단이 민족안에 있는 한 북남사이에 아무리 좋은 합의문건이 나왔다 해도 그것은 민족자주통일메로 이어갈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고 있다. 또한 온 민족에게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종식시키고 외세와 함께 동족을 해치려 드는 반역의 무리들을 청산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리고 있다.

민족주체의 힘과 노력으로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것은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우리 겨레는 민족자주의 통일원칙을 부정하고 외세의 힘을 빌어 <송공통일> 야망을 이루어보려 하는 남조선당국자들을 절대로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사태를 똑바로 보고 우리를 반대하는 <핵> 소동과 <팀 스피리트> 핵시험전쟁을 중지하고 북남 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성실히 리행하

는대로 나와야 한다. 그러지 않을 때 그들은 평화와 통일의 원수로서 인민들의 더 큰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20] 부속합의서 발효 1주년 관련 남북고위급회담 대변인 성명

(1993. 9. 17)

오늘은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과 북이 화해와 군사와 교류·협력 등 분야별 부속합의서를 발효시킨지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남과 북은 지난해 민족화해를 이룩하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같은 민족사의 기념비적인 두 문건의 채택으로 남북관계는 회해·협력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7천만 온 겨레에게 평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었습니다.

남북간의 약속은 민족사에 대한 엄숙한 다짐인 동시에 7천만 온 겨레에 대한 약속인 만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합의서의 준수와 이행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담은 부속합의서를 채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공동위원회의 가동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측은 돌연 남북대화를 단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남북간에는 화해·협력을 위한 아무런 실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장애는 북한의 핵문제입니다.

우리 7천만 겨레는 민족전체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는 핵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 남북간에 신뢰가 회복되고 이땅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같은 여망에 기초해서 우리는 핵문제 해결과 남북간의 주요현안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회담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대승적 입장에서 특사교환을 위한 실

무접촉을 제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자기들이 요구했던 특사교환마저 새로운 요구조건을 내걸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남북간의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가야 하며, 대화 그 자체에 전제조건을 붙이는 것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남과 북은 기본합의서 제10조에서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기에 합의해 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군사훈련 중지문제는 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하는데 북한이 성실한 자세를 보일 경우 신축성을 갖고 협의할 용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시비하고 있는 핵문제와 관련한 국제공조체제 문제도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할 당시 북한 스스로가 국제핵사찰과 관련한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준수를 위해 북한에게 국제적 차원에서 핵의혹 해소를 촉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북한은 어떠한 구실로도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거부하거나 기피해서는 안된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특사교환에 따른 실무절차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실무대표접촉에 아무런 조건없이 하루빨리 호응해 나올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남북간에 특사교환이 이루어지고 핵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이 이루어진 바탕위에서 남북이 합의·구성한 분야별 공동위원회들을 조속히 가동시키고 부속 합의서에서 약속한대로 화해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 사항들을 실천에 옮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는 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이 인류에게는 희망을, 민족에게는 긍지를 심어준 소중한 문건임을 다시한번 확인하면서 이것이 남북대화를 위한 살아있는 규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21] 통일원 대변인 브리핑 - 「남북기본합의서 등의 이행에 대한 정부입장」

(1996. 7. 24)

국민회의 김대중총재가 “정부가 남북합의서를 무시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연합통신 7.24일자 보도)는 지적은 정부정책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정부는 남북사이의 모든 약속과 합의가 당연히 지켜져야 하며,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틀로서 반드시 이행·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입장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 연설을 비롯, 통일부총리 성명 등을 통해 기회있을 때마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분야별 부속합의서(화해, 군사(불가침), 교류협력)의 이행과 그 실천기구인 4개 공동위원회(화해, 군사,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협력) 개최를 북한측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당초 남북기본합의서 등의 이행과 이를 위한 분야별 공동위원회 개최는 '92년 11월 5일부터 1주일 간격으로 공동위원회를 열기로 남북사이에 약속된 것이었다. 또한 상호 공동위 대표 명단도 통보함으로써 공동위원회의 본격 가동과 남북기본합의서 및 분야별 부속합의서의 이행·실천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무리한 상태였다. 그런데 북한측이 11월 3일 분야별 공동위원장 「연합성명」을 통해 T/S 혼란 실시를 구실로 공동위 회의 불참을 선언함으로써 현재까지 제1차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남북 기본합의서 등을 실천하는 길을 막은 것은 다름아닌 북한측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사이에 이룬 모든 약속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북한측이 이에 호응해나오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다.

[22] 제51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

(1996. 8. 15)

<진략>

내외 동포 여러분!

이제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는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참다운 광복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평화통일의 첫걸음은 무엇보다 7천만 동포가 하나라는 인식을 함께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한반도의 남쪽만이 아니라 지 북녘, 나아가 세계 곳곳 온 겨레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해 1천9백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쌀을 아무조건없이 북한에 지원한 것도 북한 동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선의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이것은 민족사의 긴 안목으로 보면 획기적인 의의를 갖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요체는 바로 「평화와 협력」입니다.

「평화와 협력」만이 분단의 고통과 비극을 극복하고 통일과 번영의 큰 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저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협력」을 위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첫째, 우리는 북한의 안정을 원합니다.

지금 북한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북한의 안정에 영향을 줄 사태로 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는 북한의 고립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온전한 성원이 되어 우리와 함께 민족의 역량을 키우고, 세계에 공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일방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는 남과 북 상호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평화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남북한은 이미 기본합의서를 통해, 남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서로 교류·협력해 나가기로 세계와 민족 앞에 약속한 바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약속의 이행이 지연되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기본정신에 바탕을 두고 남북관계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7천만 동포 여러분!

지난 4월 저와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함께 북한에 4자회담을 제의한 것도 『평화와 협력』의 정신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자회담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광범한 문제가 토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 평화체제의 구축문제가 논의될 것입니다.

군사적 신뢰문제도 협의될 것입니다.

그리고 긴장완화 조치의 차원에서 남북 경제협력 문제도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3] 판문점 연락사무소 철수 관련 조선중앙통신 보도

(1996. 11. 19)

조선중앙통신사는 위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반세기 이상이나 지속되는 민족분열의 비극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어온 우리 겨레는 오늘 그 어느때보다 조선반도의 정세가 완화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길이 하루빨리 열리기를 절절히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의 헌집권자들의 민족분열정책과 반공화국 대결전쟁책동에 의하여 민족의 절박한 평화통일 염원과 지향은 새로운 엄중한 도전에 부닥치고 있다.

얼마전 남북폐쇄정책을 방침으로 확정하고 해·내외에서 북과 남사이의 접촉과 연계를 전면 차단해온 남조선 당국자는 지난 11월 9일 워싱턴포스트지와 특별 회견이라는 데서 우리와 그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였다.

이것은 남북폐쇄정책을 책임있는 당국자의 이름으로 재확인한 것으로써 지들이 북남관계를 대화에 가능성마저 없는 암담한 국면에 몰아넣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 사태를 엄중시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화는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남조선 당국자가 대화를 전면

부정해 나가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화의 분위기는 고사하고 대화라는 말까지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위한 기관연락과 실무적협의를 맡아보는 판문점 연락사무소도 그 존재 의미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판문점 북측연락사무소를 더 이상 유지할 명분이 없게되었다고 인정하면서 1996년 11월 20일부터 잠정적으로 판문점 우리측 연락사무소 대표들을 철수하고 그 업무를 중지할 것이다.

남조선 당국은 쌍방의 합의밑에 설치 운영되어 오던 판문점 북남연락사무소의 업무가 중단되게 된데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야 할 것이다.

[24] 북한의 판문점 연락사무소 철수 관련 통일원 대변인 성명

(1996. 11. 19)

북한은 11.19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11.20일부로 판문점 북측 연락사무소 대표들을 철수하고 그 업무를 중지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남북연락사무소는 「남북기본합의서」 제7조에 따라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조치는 남북대화의 중단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고, 남북당국이 함께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정면으로 유린하려는 행위로서, 정부는 북한이 이같은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북측 연락사무소를 원상 회복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이 자신들이 지지른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야기된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이성적 행위를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무력도발행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시인·사과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25] 기본합의서 채택 5주년 즈음 통일원 대변인 대북 성명

(1996. 12. 13)

5년전 남과 북은 대결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협력의 길을 열어 나아가기 위해 '남과 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야말로 우리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건설하여 세계에 우뚝 서고자 했던 열망이 걸집된 장전이다.

진정으로 민족을 위하고 통일을 원한다면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회피하는 일은 어떤 구실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남북기본합의서가 이행된다면 남북간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기본합의서 실천기구인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키므로써 남북간 합의사상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한데 이어, 핵위협과 정전협정무실화 책동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였다.

최근에는 잠수함을 이용, 무장공비를 남파하여 양민을 학살하고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등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 가고 있다.

북한은 소모적 대결을 지양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므로써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는데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이야말로 북한이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잠수함 침투사건과 관련하여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 우리측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루속히 취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화해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6] 기본합의서 채택 5주년 즈음 노동신문 논평 - 「북남합의서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1996. 12. 13)

역사적인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된 때

로부터 5돌이 된다.

북남합의서의 채택은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온 민족에게 크나큰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지난 1970년대 초에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북과 남사이에 처음으로 이룩된 귀중한 성과로써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길에서 획기적 계기를 마련한 하나의 사변이었다.

북남합의서가 채택된 것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우리의 시종일관한 투쟁과 성의있는 노력의 결실이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북과 남사이에 침예한 정치군사적 대결과 격폐상태를 바수고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이룩하며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 수 있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 기울여 왔다.

우리의 이 줄기찬 투쟁과 꾸준한 노력에 남조선 당국자들은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으며 마침내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과 교류를 화약하는 문건에 도장을 찍게 되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거레는 민족의 일치한 요구와 현 시대의 추세를 옹게 반영한 북남합의서가 성실히 이행되어 평화와 통일의 앞길에 결정적 국면이 열리기를 기대해마지 않았다.

민족의 염원대로 합의서가 이행되었더라면 의심할바 없이 화해와 평화가 실현되었을 것이고 조국통일의 앞길에 획기적인 국면이 열렸을 것이다.

그러나 온 민족의 질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북남합의서는 남조선당국자들의 배신적인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남조선 당국자들은 우리의 완강한 투쟁과 인민들의 압력에 못이겨 북남합의서에 도장은 찍었지만 처음부터 그것을 이행할 의사는 털끝만큼도 없었다.

괴뢰들은 북남합의서 이행을 고의적으로 외면한채 반공화국 대결전쟁책동을 광란적으로 벌여 그 이행의 앞 길을 차단하였다.

북남합의서의 이행을 가로막기 위한 남조선 통치배들의 책동은 문민의 탄을 쓴 김○○정권에 이르러 더 한층 악랄해졌다.

괴뢰들은 있지도 않은 북의 핵위협을 구실로 국제공조체제니, 제재니 뉘니하머

외세에 동족을 모해 압살한데 대해 간청해 나섰다. 한편으로 그들은 조·미사이의 문제 해결에 제동을 걸어보려고 동분서주 하면서 각방으로 책동하였다.

선행 군부독재시기에도 이루어져 오던 북남 대화를 모두 차단동결하고 이미 중단되었던 팀스피리트 북침핵전쟁연습을 재개하여 최악의 대결과 초긴장상태를 몰아온 것이 바로 김○○일당이다. 그들이 동족의 유고시에 감행한 죄악은 얼마나 반민족적이고 반인륜적인 것이었는가.

김○○일당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위업에 끼친 죄악은 실로 천추에 씻을 수 없는 것이다. 김○○일당은 북남합의서 정신을 난폭하게 짓밟고 반민족, 반평화, 반통일 대결전쟁책동에 갈수록 더 미쳐 날뛰고 있다.

최근 괴뢰들이 그 무슨 간첩사건이라는 터무니 없는 반공화국 모략사건을 조작하고 전례없는 반공화국 대결전쟁 광기를 부리고 있는 것은 그 한 실례이다.

괴뢰도당은 북남 관계를 전면폐쇄한다는 것을 이른바 정책으로까지 공식선포하고 북남사이의 접촉과 대화를 더욱 발악적으로 가로막고 있으며 광란적인 대결전쟁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남조선통치배들이 북남합의서의 이행을 한사코 가로막으며 북과 남사이의 폐쇄와 단절이라는 사상유례없는 정치적 장벽까지 쌓은 것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 평화와 평화통일을 전면 부정하고 우리의 진지한 평화애호적 통일노력에 정면으로 도전해 나서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족 반통일 범죄행위이다.

적대국가들 사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폐쇄정책을 들고나와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유린 말살하는 김○○일당이야말로 역대의 모든 반통일 사대매국노들을 능가하는 회세의 반역집단이다.

이런 반역집단이 민족의 통일업원을 반영한 북남합의서를 이행하리라고 기대한다면 그야말로 시궁창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만치나 어리석은 일이다.

김○○일당을 타도함이 없이는 북남합의서의 이행도 민족의 화해 단합, 통일도 이룩할 수 없을뿐더러 거래가 외세의 핵전쟁 참화를 들쓰는 것도 피할 수 없다.

현실은 남조선 괴뢰들이 반공화국 대결전쟁책동이 중지되고 조·미사이의 새로운 평화보장체계가 수립되어야 북남합의서 이행을 위한 분위기도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을 웅변으로 실증해 준다.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안팎의 분열주의 세력의 방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성취하려는 우리민족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은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한사람 같이 떨쳐나섬으로써 반봉인 분열주의 세력을 징벌하고 민족의 최대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 이 앞당겨 이룩해야 할 것이다.

[27] 노동신문, 김일성 주석의 남북고위급회담 쌍방대표들에 대한 담화발표 5돐 기념 논설

(1997. 2. 20)

민족의 태양이시며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북남고위급회담 쌍방 대표단 성원들과 하신 담화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가 발표된 때로부터 다섯돌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역사적인 담화에서 북과 남이 북남 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여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 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 과업들을 제시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제6차 북남 고위급 회담에서 북남 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의 발효를 온세상에 선포한 것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데서 하나의 이정표로 되는 획기적인 사변이라고 하시면서 북과 남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향하여 내디딘 귀중한 첫걸음을 멈추지 말고 내일의 통일에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 데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아가야 할 원칙적 문제들로서 자주적인 입장을 철저히 견지하고 평화문제 해결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할데 대하여 천명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담화는 북과 남이 북남 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이 발효된 새로운 현실에 맞게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의 3대 원칙을 철저히 관철해 나가는 데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아가야 할 강령적 지침으로 됩니다.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는 것은 북남 합의서의 기본 정신입니다. 북과 남이 화해하고 통일하자면 어차

피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어버이 수령님께서 담화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들을 높이 받들고 지난 5년동안 북남 합의문건들을 성실히 이행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지한 노력은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전 군부독재자들 보다도 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이며 호전적인 김○○일당의 집권으로 북남 관계는 북남 합의서 채택 이전의 침예한 대결국면으로 되돌아 가고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앞길에는 더 큰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이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사태발전은 북남 사이에 아무리 훌륭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통일에 대한 의지가 없이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 반통일 대결전쟁의 길로만 줄달음치는 분열주의 세력을 그대로 두고서는 결코 그것의 성과적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민족 앞에는 날로 더욱 악랄해지고 있는 남조선 괴뢰들의 사대매국 반통일 전쟁대결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며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김○○일당은 저들이 직면한 심각한 통치위기로 부터의 동족을 반대하는 무모한 대결전쟁 책동에서 찾으려 하면서 그에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괴뢰 호전집단은 올해 남조선의 군사비와 해외로 부터의 군사장비 구입비를 지난해에 비해 훨씬 늘이고 북침전쟁 도발책동을 노골화 하고 있습니다. 호전광들은 올해 정초부터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공중정탐 행위와 공중 기동전개, 먼거리 폭격, 공중공격작전연습 등 도발적인 전쟁연습들을 발광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김○○일당은 반공화국 모략소동을 끊임없이 벌여 남조선 인민들 속에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더욱 악랄하게 고취하고 있습니다. 괴뢰들은 한총련, 범민련 남측본부와 같은 애국단체들의 통일운동을 친북 이적행위로 몰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으며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마저 우리와 연결시켜 칼부림하고 있습니다. 김○○일당은 유지비의 명목으로 해마다 30억달러가 넘는 방대한 돈을 상전에서 십겨바치면서까지 미군의 남조선 영구강점을 애걸하며 세계화의 간판밑에 남조선의 모든 것을 외세에 팔아 넘기고 있습니다. 괴뢰들

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식민지 노예의 처참한 운명을 강요하다 못해 그것을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에게까지 확대해 보려고 미치날뛰고 있습니다. 모든 사실은 최악의 통치위기에 직면한 김○○일당이 민족의 머리위에 외세의 핵참화를 들썩우는 위협천만한 모험도 서슴없이 감행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습니다. 온 민족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걸고 남조선 통치배들의 사대매국 행위와 전쟁대걸 책동을 저지 파탄시키며 민족자주와 평화수호, 조국통일의 새국면을 열기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서 올해를 민족자주, 평화수호를 위한 북남 해외연대 해로 정하고 조국통일 3대 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역사적은 7.4공동성명 발표 25돌이 되는 올해에 북과 남, 해외의 정당 단체 대표들의 연대회의를 가질데 대한 우리 공화국 정당 단체 연합회의의 발기는 매우 시기적절한 조치입니다. 연합회의의 제안대로 북남 해외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지침으로 민족자주와 평화수호를 위한 범민족적인 연대투쟁을 힘있게 벌인다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면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자주 평화수호의 기치밑에 남조선 괴뢰들의 사대매국 반민족 반통일 행위를 단호히 짓부셔 버려야 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생명으로 지켜 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북침을 노린 남조선 통치배들의 무력증강 책동과 새전쟁 도발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족을 적대시하고 통일을 가로막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이며 통일운동에서 북과 남, 해외의 3자 연대를 적극 도모해 나가야 합니다. 김○○일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자주와 평화도 나라의 평화통일도 이룩할 수 없고 거래가 외세의 핵전쟁 재물로 되는 것도 피할수 없습니다. 온거레는 민족자주와 평화, 평화통일에 백해무익한 김○○일당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북남 고위급 회담 쌍방 대표단 성원들과 하신 담화는 우리 민족의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데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 입장과 원칙적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힌 강령적 지침으로써 온민족을 거족적인 통일대진군 운동으로 힘있게 부르고 있습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은 민족자주 평화수호 조국통일의 기

치를 더욱 높이 들고 아버지 수령님의 통일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통일대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치 할 것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문제 관련 자료집

인 쇄 1997년 5월 일

발 행 1997년 5월 일

발행처 남북회담사무국

운 영 1 과

(전화 735-1261)

작성자 행정사무관 박형일

인쇄처 문 성 인 쇄 (주)

[2] 김일성 신년사

(1992. 1. 1)

<전략>

지난해에 북과 남, 해외 동포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었습니다.

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 애국적인민들은 탄압과 박해가 계속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주, 민주, 조국통일의 구호를 높이 들고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굴함없이 투쟁하였으며 해외동포들도 조선민족으로서의 영예와 책임을 자각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범민족적운동으로 확대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였습니다. 나는 7천만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숭고한 애국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바쳐 투쟁하고 있는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때로부터 20돛이 되는 해입니다. 조국통일 3대원칙은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서 날이 갈수록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더욱 뚜렷이 실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된 것은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길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역사적사건으로 됩니다. 7·4남북공동성명과 더불어 이번에 채택된 북남합의서는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우리 민족의 일치한 요구와 자주, 평화에로 나아가는 현시대의 추세를 옳게 반영한 가장 정당한 조국통일강령입니다. 북남합의서는 조국통일을 갈망하는 온 겨레에서 통일의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고 있으며 세계 진보적인민들로부터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북과 남은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여 온 민족의 념원과 세계인민들의 기대에 맞게 북남합의서를 성실히 리행함으로써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자주적립장은 북남합의서를 리행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 립장입니다.

우리나라의 분렬자체가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것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

민의 투쟁은 다름아닌 외세의 지배를 끝장내고 민족적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그러므로 자주적립장은 조국통일을 위한 그 어떤 문제도 우리 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북남합의서가 민족적요구에 맞게 채택될 수 있는 것은 민족자주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이며 그것이 앞으로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데서 얼마나 큰 생활력을 발휘하는가 하는것도 역시 북과 남이 민족자주의 원칙을 어떻게 견지하는가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조국통일에 이바지하려는 사람들은 외세의존사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민족자주의 립장에 서야하며 민족분렬의 장본인인 외세에 의존하려 할 것이 아니라 민족자주력량에 의거하여야 합니다. 특히 외세의 간섭을 반대하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애국적인민들을 적극지지하고 고무하여야 하며 그들을 탄압하는 것과 같은 일을 더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는 평화통일의 전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조건에서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평화통일의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북과 남은 북남합의서의 정신에 맞게 군축을 실현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력사적으로 국제관계와 련관되어있는 것만큼 북남합의서를 리행하는데서 유관국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유관국들은 북과 남사이에 채택된 합의서의 정신을 존중하여야 하며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동서간의 대립관계가 허물어지고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기운이 전례없이 고조되고 있는 오늘에 와서 랭전시대의 낡은 관점을 가지고 힘의 립장에 서서 조선문제를 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더우기 핵사찰문제를 들고나와 우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려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립장입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으며 공정성이 보장되는